

2017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 목차

I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이해의 관점	11
제2절	체제의 특징	14
제3절	북한의 딜레마	21

II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제1절	정치체제의 형성	27
	1. 정권의 수립	27
	2. 정치체제의 형성과 특성	29
제2절	통치이념의 형성과 변천	34
	1. 주체사상	35
	2. 선군사상	39
	3. '김일성-김정일주의'	41
제3절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43
	1. 권력 구조	43
	2. 노동당	47
	3. 중앙기관	60
제4절	권력 세습과 김정은 체제	66
	1. 권력 세습 과정	66
	2. 김정은 체제의 형성	69

III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제1절	대외정책 목표	75
	1. 이념과 목표	75
	2. 방향	75
	3. 대외정책 결정구조	77
제2절	대외정책의 변천 과정	79
	1. 냉전 시기 대외정책	79
	2. 탈냉전 시기 대외정책	82

제3절	주요국들과의 관계	87
	1. 미국과의 관계	87
	2. 중국과의 관계	89
	3. 일본과의 관계	92
	4. 러시아와의 관계	94
	5.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와의 관계	96

IV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제도	103
	1. 성격	103
	2. 기능과 특징	104
	3. 조직과 제도	107
제2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114
	1. 정책 기초	114
	2. 군사전략	116
제3절	북한의 군사력	120
	1. 상비전력 및 장비	120
	2. 예비전력	125
	3. 전략무기 개발	126
제4절	대외 군사관계	132
	1. 대외 군사관계	132
	2. 대남도발과 군사회담	134

V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

제1절	경제체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초	141
	1. 경제체제의 특징	141
	2. 경제정책 기초	143
제2절	부문별 현황	146
	1. 거시적 현황	146
	2. 주요 경제부문별 현황	152
제3절	경제정책의 변화	163
	1. 시장화 현상	163
	2. 대외 개방 정책	171
	3.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176

VI

북한의 교육과 문화

제1절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181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181
	2. 교육과정과 방법	192
	3. 학교생활	201
제2절	문예정책과 문학예술	205
	1. 문예정책의 목표와 창작원리	205
	2. 문학예술의 실제	208
제3절	언론	220
	1. 신문·잡지	221
	2. 방송	226

VII

북한사회와 주민생활

제1절	사회계층 구조	231
	1. 사회계층 형성과정	231
	2. 사회계층 구조의 특징	234
제2절	사회통제 방식	236
	1. 사상이념적 통제	236
	2. 정치조직적 통제	238
	3. 경제사회적 통제	240
	4. 법적 통제	243
제3절	주민생활 변화와 일탈	246
	1. 주민생활 변화의 3단계	247
	2. 사회적 일탈	249
제4절	주민 인권침해	253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253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259
	3. 북한체제의 인권문제 대응	262

표 Tables

[표 2-1]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36
[표 2-2] 당대회 개최 현황	52
[표 2-3] 당대표자회 개최 현황	54
[표 3-1] 6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85
[표 3-2] 김정은 체제의 북·중 인사 교류 현황	91
[표 3-3] 남북 수교 현황 (2015년 12월 기준)	99
[표 4-1] 4대 군사노선	105
[표 4-2] 북한군 주요 양성 과정	112
[표 4-3] 북한 군사 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	115
[표 4-4] 북한 특수부대의 임무	118
[표 4-5] 남북 군사력 비교	121
[표 4-6] 북한의 예비전력	126
[표 4-7]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128
[표 4-8] 북한의 미사일 제원	130
[표 5-1]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148
[표 5-2]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149
[표 5-3] 북한의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 추이	150
[표 5-4]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152
[표 5-5]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157
[표 5-6]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의 비중	160
[표 5-7] 2000년~2015년 간 북한의 10대 수·출입품목 추이	161
[표 6-1]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185
[표 6-2] 북한의 소학교 교육 과정	193

[표 6-3]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195
[표 6-4]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196
[표 7-1] 북한의 주민 출신성분 조사와 계층구분 과정	232
[표 7-2] 북한의 정치조직	239
[표 7-3]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241
[표 7-4] 북한의 종교 현황	259
[표 7-5]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주요 활동	263

그림 Figures

[그림 2-1] 노동당 기구	57
[그림 2-2] 정권기관	65
[그림 5-1] 북한 대외무역과 북중교역 규모의 추이(남북교역 제외)	159
[그림 5-2]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165
[그림 5-3]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174
[그림 5-4]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175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183
[그림 6-2] 북한의 학제	187
[그림 7-1]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황	256

I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이해의 관점

제2절 체제의 특징

제3절 북한의 딜레마



Key

Point

01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공존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02

북한체제의 특징은 첫째, 수령이 당과 국가 위에 있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하에 통치되는 수령독재체제이다. 둘째,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 집중도가 높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도를 채택하고 자력강생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로서 수령을 아버지로 여기고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다.

03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시대 북한도 체제 생존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지만 개혁·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혁·개방보다는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1절 이해의 관점

이중적 존재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적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은 군사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하에 있는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등 ‘통일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은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존재의 이중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북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

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념과 세대와 집단에 따라 북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 인식, 편견, 감정적 판단에서 벗어나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해의 시각

첫째, 북한체제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 냉전 시대에는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적대 혹은 대결 상대라고만 인식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공존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공동 번영의 토대와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아직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점차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제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혜적·협력적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를 왜곡하여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을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이해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일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신문이나 TV 방송 등은 북한체제의 선전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무조건 부정적으

로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감상적 시각으로 북한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을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핵개발,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 나타난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된 체제이다. 북한체제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 북한 사회의 본질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체제의 특징

1945년 일제의 항복으로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고, 소련군의 점령정책은 북한체제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소련의 지도 아래 1945년 당을 창당한데 이어 1948년에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형성된 북한의 사회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언급했던 사회주의가 아니라 소련에서 형성된 ‘전체주의’ 체제를 모방한 것이다. 북한은 소련의 제도들을 이식하여 일당지배체제, 국가소유 제도, 계획경제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북한의 역사발전 과정 속에서 북한만의 특수한 요소들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자신의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20세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보편성과 북한만이 갖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주었던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운영 방식, 당 우위 체제 등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수령 중심 체제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 방식은 북한체제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체제전환과 개혁 이전의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령독재체제

북한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독재체제이며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독재체제이다. 물론 1970년 이전에는 북한의 통치이념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었다. 1972년 12월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북한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주체사상은 북한식 수령독재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고, 2009년 4월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주체사상 이외에 선군사상이 추가되었다.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과 2016년 5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당의 최종 목표를 “온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것으로 노동당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 중심의 체제 논리는 1974년 발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1982년 김정일이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 수령·당·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공고한 혁명의 주체가 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腦髓)’로 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

로 되기 위해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라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體現者)’이며 ‘당의 최고영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북한이 1986년 제시한 것으로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한 통치논리이다.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확립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한정된 호칭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하고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이라고 불렀으며,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된 이후에는 김일성·김정일을 수령이라고 함께 불렀다. 여전히 수령의 지위를 누렸다. 2016년 개정 헌법(김일성·김정일 헌법)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표기하였다.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 호칭 사용 등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20세기 존재했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독점하는 계획경제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¹⁾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제한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²⁾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주장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생활비)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생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제이다. 따라서 경제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20세기 존재했던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경제의 중앙집권도가 월등하게 높았으며 모든 세부 지침들이 중앙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었다.

북한에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

1) 『백과전서』(제3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530.

2) 『경제사전』(제2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0, p.118.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 전 분야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하고 각 부서에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그 집행을 감독한다. 북한은 1964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을 강조한 이후 지구 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계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켜 왔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세부적인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중앙으로부터 말단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조직체계에 의해 계획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북한 계획경제체제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방침이며, 북한은 1964년에 계획의 일원화를, 1965년에 계획의 세부화를 도입하였다.³⁾

북한에서는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국가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다. 계획 작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 경제난과 대기근을 거치면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공장·기업소 단위로 독립채산제에 의한 경영방식을 도입하였고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등장한 시장(장마당과 암시장 등)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⁴⁾ 이후 북한식 계획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배급제’를 축소하고,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제도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

3)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42.

4) ‘평균주의 타파’와 ‘반돈에 의한 평가’라는 원칙 하에서 시행된 조치로서,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가격을 인상하여 농민시장 수준으로 현실화시켰으며 이를 위해 쌀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시켰으며 그 중에서 군인과 중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셋째,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시켰다. 넷째, 경제계획의 기능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일정 부분 이관하였다.

년 3월 전국 시·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종합시장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사실상 가족단위의 영농이 가능한 ‘포전담당제’(圃田擔當制)⁵⁾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 전매제(專賣制)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발표, 화폐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귀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이후에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도 시장 활동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단행된 극단적인 조치였다. 2010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계획경제 강화에 주력했지만, 이러한 통제 조치들은 오히려 주민들의 빈곤을 확대시켰고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2010년 2월경부터 다시 시장을 묵인하면서 통제를 완화해 왔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 장례기간 직후부터 다시 외환 사용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2013년 이후부터는 유통되고 있는 외화를 국가로 흡수하기 위해 외환 사용을 묵인하고 있다.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서 수령 숭배와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북한에서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이상적 인간형은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적 목표 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5) 협동농장의 말단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3~5명 규모로 축소하여 포전(일정 규모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사회주의 대가정론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⁶⁾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 주민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아버지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인민대중을 하나로 묶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수령·당·인민대중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 간부와 하급 간부 사이에 사회적 대우, 배급량과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과 대기근 이후 기존의 출신성분과 계급적 토대에 기초해서 작동하던 사회구조가 돈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이 시장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들이 일상화되는 추세이다.

6)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390.

제3절 북한의 딜레마

지금까지 북한체제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들은 북한을 20세기 중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만들었고, 경제위기를 포함한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와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고립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최악의 경제난과 대기근을 겪게 되었다.

북한체제가 대내외적으로 경험해 왔던 경제난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체제 변화와 전환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해체 및 체제전환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태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 오히려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위기 극복과 체제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자립경제 노선으로는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노선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2012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고, 2014년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재차 강조하면

서 “혁명의 정치사상 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자.”면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강조하였다. 2016년 신년사에서 ‘우리식 경제관리’와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강조하였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여전히 개혁·개방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한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는 첩경은 북한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는 한편으로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 등 변화를 추진할 경우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길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정세 변화 및 대내외적 압박 요인에 대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버티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경제난 극복 및 체제 생존은 한계가 있다.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과 유화적 입장을 반복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양면전술을 통해 경제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북한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거나 나아가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만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 위협 요소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개방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개혁 바람에 기웃거리서는 안된다.”,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개혁·개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개혁·개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정은도 김정일 사후 갑작스럽게 최고지도자 자리를 승계하여 권력의 공고화와 체제 유지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개혁·개방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 공고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이 군사적 도발 및 긴장 조성을 통해 주변국들과 협상에 나섬으로써 원유와 식량 등을 지원받아 개혁·개방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다섯 차례 핵실험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결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하고,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핵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탈냉전 이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이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통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강성대국 진입의 대문을 활짝 열 것”이라 공언했던 2012년에서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체제 생존과 개혁·개방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II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제1절 정치체제의 형성

제2절 통치이념의 형성과 변천

제3절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제4절 권력 세습과 김정은 체제



01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는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을 벌였으나 소련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 세력이 북한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김일성은 1950~60년대에 걸친 숙청 작업과 당 권력 구조의 변화를 통해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를 공고화하였고,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 김정일 권력승계를 공식화하였다. 김정일은 1998년 개정헌법을 통해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군정치를 제도화하였으며, 2010년 3대 세습을 공식화하였다. 김정은은 2011년 최고 영도자로 추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권력을 공고화하였으며, 2016년 국무위원장에 취임하는 등 유일지배체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02

주체사상은 그동안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권력 독점을 통한 1인 지배체제의 강화와 우상화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주체사상에 부리를 둔 선군사상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제4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03

북한은 당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체계로 운영된다. 헌법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행정의 집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내각 총리 등이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당과 국무위원회를 장악한 김정은에게 집중되어 있다.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문화하였으며,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김정은을 최고수위인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04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해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은 1970년대부터 당·정·군의 주요직위에 임명되면서 권력 세습을 진행시켰으며, 김정은도 2010년부터 당과 군의 핵심직위를 차지하면서 3대 세습을 추진하였다. 김정은의 3대 세습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제1절 정치체제의 형성

1. 정권의 수립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이후 북한체제가 38도선 이북 지역에 등장하게 된 원천은 소련군의 점령이었다. 일제 패망으로부터 소련군이 주둔하기까지 북한의 정치 상황은 8월 1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와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일 승전국의 자격으로 북한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킨 소련의 통제와 관리 하에서 이루어졌다.

초기 북한체제는 김일성을 비롯하여 '88특별여단'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우선 소련 군정은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령(1945.9.20.)에 따라 1945년 10월 북한 지역을 관할할 중앙행정기구와 당 차원 지원 조직의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소련 점령군의 최대 관심사는 “소련에 충성하는 단독 정권의 수립을 추진할 정당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연설하는 김일성(1945.10.14.)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이미 조직(1945.9.11.)되어 있었고, 각 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소련 군정은 '조선공산당 서

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⁷⁾를 개최하여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10.13.)을 만들었다. 이는 38도선 이북 지역에 서울과는 별개의 공산당을 조직하여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 지도권을 장악하게 하려는 소련 군정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3차 중앙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공산당을 창당한 소련 군정은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연합회’의 결과로 1945년 10월 28일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및 북조선 행정국’을 창설하였다. 그것은 소련 군정 하에 각급 인민위원회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구였다. 이처럼 소련 군정은 한반도 분할 점령 3개월 만에 스탈린의 지령대로 북한만의 통치 조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구조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일찍이 단독 정권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듬해인 1946년 2월 소련 군정은 중앙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 지역의 최고집행기관이었지만 소련군 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공산당의 지도 하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대중 정당이 필요하다는 스탈린의 판단 아래 북조선공산당은 김두봉의 조선신민당과 합당(1946.8.)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출범하였다. 이들은 공산당 통치를 위한 내적 기반을 점차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통치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공산당 단독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로 돌입한 소련 군정은 1947년 2월에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창립하고 북조선 인민위원회 설치, 헌법 초안 작성, 조선인민군 창설 등을 포함하여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1947년 11월 개최된 제3차 회의를 통해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12월 20일에는 헌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듬해

7) 북한은 ‘당력사연구소’가 1991년에 발간한 『조선로동당력사』에서 동 회의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로 기술하고 있다.

인 1948년 2월 소련의 도움으로 김일성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제2차 당대회(1948.3.)를 통해 국내파가 약화되면서 김일성의 권력 장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회의는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승인하였다. 8월 25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360명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보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평양에서는 9월 2일~10일까지 572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최종 채택(9.8.)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9.9.)했다.

2. 정치체제의 형성과 특성

(1) 정치체제의 형성

해방 직후 북한 지역의 정치 지형은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하는 구도로 형성되었다. 국내파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진영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진영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해외파로는 허가이 등의 소련파와 김두봉, 무정 등의 친 중국 연안파 등이 정치의 중심 파벌들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김일성 등의 항일 빨치산 세력이 경쟁에 가담하였다. 38도선 이북지역에서의 정권 수립을 위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 아래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6.25전쟁 이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북한의 재건과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정파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소위 종파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관철시키는 한편 자신과 대립하던 정파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흐루쇼프(옛 표기는 흐루시췌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시작된 중·소 간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내세우며 소련파 및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인 정파로 지목하여 이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권력 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종파사건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연안파 윤공흠 등이 주동이 되어 당중앙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1인 독재자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1인 독재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1950년대 중후반은 파괴된 전후 경제 복구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집중했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25전쟁 이후 완전히 와해된 경제 및 사회 환경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는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 체제 구축 작업 진행을 위한 우호적 조건으로 기능하였다. 먼저 농업 협동화와 상공업과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생산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6.25전쟁 이후 전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중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군중동원 노선을 강조한 것은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인민대중들의 노동을 촉진시킬 수 없었던 북한의 전후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적 사례로는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과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이 있다.

청산리정신과 방법⁸⁾

1950년대 후반에 제시된 북한의 경제분야의 기본적 지도방법이다.

대안의 사업체계⁹⁾

경제관리운영에 당적지도도를 도입한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을 말한다. 즉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생산·기술을 통일적·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생산지도체계를 뜻한다.

8)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652.

9)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223.

1960년대 김일성은 1967년 5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북한에서 수령 중심의 독재체제가 구축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추대되었다. 이후 북한은 절대자로서의 ‘수령’을 정점으로 하여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 단결된 형태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오늘날 북한의 세습정권과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 형성의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공식화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었다.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통해 김일성 유일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은 당의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병렬하여 주체사상을 명시하였으며, 1948년 헌법에서 채택한 ‘내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이로써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하고 군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가주석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수반(首班)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지만 소환되지 않는 절대 권력자로 규정된 것이다.

한편 유일체제를 구축한 이후 김일성은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와 1970년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권력 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령제를 확립하였다. 그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열린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후계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후계구도 속에서 1969년부터 선전선동부 및 조직지도부 부부장 업무를 맡고 있던 김정일을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조직 및 사상 담당 비서’로 선출한 데 이어 1974년 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마침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물론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된 것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로서 후계체제 공고화 및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의 영속화를

위해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는 ‘수령론’ 또는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했던 것처럼 김정일도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고 위기관리 체제로서 김정일 시대의 정치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유훈통치, 군사력 증강, 체제단속을 통해 구축된 김정일 체제는 1998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중심체제였다. 군사중심체제는 선군정치를 기본노선으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정한 정치체제로서, 2009년 헌법 개정 시 선군정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하였다.

김정은은 2009년 1월 당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신설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한 북한 정권은 김정일 유훈, 체제정통성, 군부통제, 일심단결 및 결속유도 등의 권력 강화 과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권력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김정일 사망 추도대회(2011.12.29.)에서 김정은은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그리고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12.30.)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이어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를 선언하고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3대 권력세습을 완료하였다.

(2) 정치체제의 특성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군·국가 위에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군림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일당 지배체제’를 갖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성격에 더하여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수령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권력 구조의 차원에서 본다면, 주체의 핵인 수령이 당·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령은 제도화된 직위로서의 국가주석이나 노동당 총비서(현 위원장)를 능가하는 권력의 총체적 정점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이 수령독재를 뒷받침하는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로부터 현대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당의 지도성과 무오류성이 북한 정치체제에서는 수령의 영도,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의 무오류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당 독재체제’라기 보다는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즉 ‘수령 독재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제2절 통치이념의 형성과 변천

북한 정권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통치하였던 김일성이 스탈린 사망 이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제시했던 주체사상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당의 지도사상’으로 천명된 이래 김일성 유일체제확립 및 1인 절대지배체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천되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은 이후 김정일에 의해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수령론, 혁명적 수령관 등으로 해석되었다. 이미 김정일은 1974년 이래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고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함으로써 권력승계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북한 정권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종식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 주체사상을 체제 생존을 위한 방어적 논리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였다. 김일성 사후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를 강조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선군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공식화하게 된다.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주체사상

(1) 성립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여 왔다.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였고,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였다. 1967년경 ‘주체사상’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 논리로서 대외적 주체의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소련에서 흐루쇼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노동당 내 1인 독재 지배체제 비판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1인 독재 지배체제를 옹호하는데 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소 간 교조주의자 대 수정주의자의 이념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 중·소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외교 전략적 대응이 주체사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표 2-1]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내용	제기 시기	배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 선전선동원대회(1955.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탈린 사망 • 당내 남로당파 숙청
경제에서의 자립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56.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원조 감소 (5개년 경제계획 수립 차질) • 당내 반 김일성 움직임 고조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당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1957.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권내 개인숭배 반대 운동 • 당내 연안파, 소련파 숙청
국방에서의 자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1962.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분쟁 심화 • 미·소 공존 모색 • 한국의 5·16 군사쿠데타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제2차 당대표자회(1966.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분쟁 확대 • 비동맹 운동의 발전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1967.5.28.)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1974.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 • 김일성 개인숭배 운동 전개 •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 출범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제6차 당대회(198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 공고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유일지배이념화	제3차 당대표자회(2010.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 공식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유일지배이념화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체제 출범

(2) 내용적 변화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수령제 확립을 위해 유일사상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 유일사상체계란 주체사상 이외에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인민대중이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서 수령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천명하고, '유일영도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에 결합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담론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후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였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을 통한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론'이다.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없고 노동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혁명적 수령관'이다. 이처럼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우상화를 위한 논리로 활용했다.

주체사상은 1970년대부터 들어서 김정일의 해석권 독점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해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축재제로 하여 이론적 체계화를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의 중심적 이론으로 형성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최고 뇌수로서의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만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논리를 기본원리로 확장되었다.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은혜, 의리, 충효의 교환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도덕과 사상적 세뇌를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논리를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는 등 정권 수립 이후 심각한 체제위기를 겪었다. 1990년대의 이러한 위기는 그동안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워 왔던 자주적·자립적인 정치·경제체제의 수립과는 정반대되는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은 주체사상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군을 전면에 내세운 위기관리체제를 뒷받침하는 선군정치가

통치논리로 부상하였으나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전면에 등장한 이후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과 2016년 5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는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3) 한계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현실적인 사고에 기반한 정책에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이념적 구호에 치중한 주체사상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 시기에 실제로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빈도도 낮아졌다.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위기로 전환되는 국면 속에서 주체사상은 지도사상으로 위치를 점한 채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의 구호들을 내세워 체제 안정화 및 생존 논리로 활용하였다.

주체사상이 표방했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치·경제체제가 북한에서 수립되기는커녕 오히려 주체사상을 통해 내세운 구호들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이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위기극복 및 체제 생존을 위한 논리로 여러 가지 통치이념을 내세웠으나, 결국 이것들은 1인 지배체제를 강화시켜준 이념적 기반으로 작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 하에서 인민대중은 진정한 주체가 되기는커녕 수령의 지도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2. 선군사상

(1) 선군정치

북한은 2010년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고 언급되었듯이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군을 전면에서 내세워 혁명과 건설의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 초 내부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북한의 핵심적 통치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체제위기 극복 및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군정치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지도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위한 중심기구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선군정치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김일성 사망 후 유신통치 시기에 지속된 '고난의 행군'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당과 군에 의존하게 된 대내적 환경이다. 선군정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하된 당의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당의 기능 약화에 직면하여 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위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개인을 신격화한 정치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정일은 그 체제수호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군에 의지하면서 사상사업을 강조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가 원자탄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의 토대로서 군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 이완을 막고 체제를 수호할 목적으로 선군정치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선군정치의 또 다른 배경은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초래되는 북한의 불안이다.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되어 왔고, 부시 행정부 이래 첨예화된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적 구도 속에서 북한은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여 왔다. 오랜 기간 축적된 거대한 군 조직의 존재는 선군정치 논리를 강화하는 내적 요인들이다. 남북한 체제대결에서 이미 주도권을 상실한 북한이 군사 부문을 내세워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북한이 선군정치를 지향하게 된 배경 요인이다.

(2) 선군사상

주체사상이 김일성 시대 통치이념이라면 선군사상은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과 함께 노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2009년 개정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김일성의 빈자리를 채우고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대안적 논리가 필요했다. 이에 김정일은 체제고수와 함께 주체사상의 수령유일체제 정당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선군사상은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선군혁명 원리의 구현을 강조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선군혁명 원리는 총대에 의해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원리로서 ‘총대 철학’에 기초한 혁명원리를 의미한다. 특히 선군사상은 군사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군사선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군사선행의 원칙이란 당과 국가의 노선 및 정책을 세우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다. 또한 선군사상은 국방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혁명적 영도방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영도체계를 심화시킨 규범적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선군사상이 대두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기존 중앙인민위원회는 폐지되고 전시기구였던 국방위원회가 행정기관화 되면서 국방위원회는 행정분야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나라의 전

반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선군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의 위상과 혁명성, 조직성, 전투력 등을 고려하여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북한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2009년 헌법 개정 및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시 ‘공산주의’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바 있다. 반면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명문화하고,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으로 ‘선군사상’을 명문화함으로써 군사국가화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 삭제와 ‘주체사상-선군사상’의 유일지배 이념화는 결국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 지배를 위한 이론적 정당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온사회의 선군사상화’(노동신문, 2003.12.22.)를 주장한 이래 선군정치의 목적인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수령·사상·군대·제도 등 4대 제일주의를 통해 당·군대·인민의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동시에 4대 제일주의 중 하나인 ‘우리사상 제일주의’를 ‘김정일사상 제일주의’로 규정함으로써 내부결속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해 왔다. 또한 북한 정권 지도부의 불안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민적 의무에 기초한 애국심과 ‘애국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1년 9월 이후 일심단결의 정신, 불굴의 강행군 정신, 계속혁명의 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9.28당대표자회 정신’의 관철을 통해 당 영도체계 강화와 김정은 3대 세습 공고화 및 체제 안정화에 주력하였다.

3. ‘김일성-김정일주의’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라고 헌법 서문에 명문화하였으며, 2012년 4월과 2016년 5월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웠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한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에 앞서 발표한 ‘4.6담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통치이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이다.”라는 노동신문 보도(2014.4.24.)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서, 사회변혁을 위한 구성 체계와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변혁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이익 옹호를 높이기 위한 지도방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총대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만능의 보검으로 내세우는 선군혁명사상을 밝혀주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이론을 독창적으로 제시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했던 북한 정권으로서는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사상적·혁명적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북한이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통치논리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김정일 애국주의’였다. 김정은은 이른바 김정일 애국주의의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노동신문, 2012.8.3.) 당중앙위원회 담화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2012.7.26.)를 통해 처음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공식화하였다. 여기서 김정은이 강조한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해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등을 핵심으로 한 김정일 애국주의의 실천이었다. 김정은은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 개정과 함께 체제결속과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당 조직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2012년 10월 22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김정일 애국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2015년 신년사에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를 ‘5대 교양’¹⁰⁾의 하나로 강조하였으며 2016년에 김정일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0) 5대 교양은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에서 강조되고 있는 김일성 가계의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일컫는다.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466.

제3절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1. 권력 구조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은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당 주도의 국가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는 첫째, 실질적 권력을 장악한 1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 둘째, 오직 한 가지 가치체계만을 주입함으로써 사회교육과 통합을 위한 맹목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 셋째, 모든 정치과정과 언론매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자율적인 정치·사회 하부체계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넷째,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를 조직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은 공산당의 정책결정과정 및 조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임을 분명하게 표방한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노동당은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닌 권력의 원천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의 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무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제정과 집행 및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권력 구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권력분립이나 견제와 균형은 찾아볼 수 없다.

(1) 김일성 정권의 권력 구조

사회주의 헌법(1972년) 이전의 권력 구조

일반적으로 정권의 획득과 유지, 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현실 정치에서 권력 구조를 공고화하는 것은 권력투쟁을 통해 획득한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북한 정권에 있어서 권력 구조를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세에 바탕을 둔 정치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에 정치권력 구조를 규정한 것은 김일성의 ‘민주기지 노선’이었으며, 6.25전쟁 이후에도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을 테제(1955년)로 재확인하면서 지속적 혁명을 강조하였다. 애당초 북한 정권의 헌법은 1948년 수립 당시 분단된 한반도의 38도선 이북 지역의 정부를 정당화하는 내각제 성격의 헌법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를 분단된 미완성 국가로 규정하고 법치국가의 형성보다도 혁명정당이 정치과정을 전면 주도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노동당 유일지배’라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금까지도 북한 정치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 중심의 독재체제가 1956년 이래 형성되기 시작하여 1967년 5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자주노선’에 기초한 수령 절대주의의 권력 구조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영도하기 위해 수령은 당을 조직하고, 그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 위상이 정해짐으로써 당이 완전히 수령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제2차 당대표자회(1966.10.)와 노동당 제5차 대회(1970.11.)를 계기로 당 권력 구조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수령제가 국가제도로써 확립된 것은 “조선노동당은 국가의 혁명수행 및 당 건설에 있어서 유일사상체계를 당내에 확립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1970년 노동당 규약 채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의 권력 구조

북한은 1972년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채택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권력 구조는 소련을 모방하여 노동당 총비서가 내각수상을 겸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명목상 국가원수를 맡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2년 헌법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주석이 국가원수였다. 즉, 헌법 제정 및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국가주석은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는 원칙 아래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설치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그리고 재판소와 검찰을 직접 지도할 뿐만 아니라 ‘전무력(全武力)의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1972년 헌법의 핵심은 ‘주석의 지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노동당 총비서 겸 국가주석인 김일성은 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수령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는 수령의 의도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제도적 장치로 규정될 수 있다.

노동당 제6차(1980년)대회 후의 권력 구조

북한 정권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권력 구조의 기본골격을 구성하게 된 것은 1980년 10월 개최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였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는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제6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248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제6기 제1차 전원회의의 지도부 선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만 당내 3대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에 모두 선출됨으로써 김정일이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2) 김정일 정권의 권력 구조

1998년 헌법의 권력 구조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일성 유훈통치를 해오던 북한은 199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규정하는 권력 구조의 개편을 단

행했다.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를 국가주석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종전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여 내각으로 개편하는 권력 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개편된 권력 구조의 특징은 첫째,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이전의 권력 구조로 복원시키면서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권력의 정점으로 격상시킨 점, 둘째, 혁명영로 세대를 권력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세대교체를 통해 신·구세대 간 조화를 꾀한 점, 셋째, 기능분립을 통한 형식상의 집단지도체제와 달리 내용상으로는 국방위원장 1인 독재체제라는 점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009년 개정 헌법의 권력 구조

선군정치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어 온 북한 정권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이상을 계기로 김정은의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그리고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라는 조항들을 신설하였다. 이는 김일성 독재체제 공고화와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전념하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당시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대 세습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은 2010년의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서였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1980년 김정일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처럼 김정은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마침내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하였던 것이다.

(3) 김정은 정권의 권력 구조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중심의 권력 구조 개편과 김정은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또한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에서의 김정은 중심의 국가체제와 김정일 위상설정을 위한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및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 및 ‘국가의 최고수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2016년 들어 김정은 체제는 권력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꾀하였다. 헌법 개정(6.29.)을 통해서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여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하였다. 기존 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기존의 노동당 제1비서에서 당의 최고영도자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체제는 노동당과 군대의 두 기둥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등 3개의 거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을 지탱시켜 온 핵심 권력 구조는 역시 ‘당’이라는 독재 조직이다. 이것은 북한의 원천적 기반인 북한군의 성격을 당 규약에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노동당

(1) 노동당의 형성 과정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과 북조선공산당

해방 직후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조직(1945.9.11.)되어 있었으며, 각 도에는 조선공산당 도당지부가 조직되고 있었다. 소련 군정은 ‘조선공

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1945.10.10.)에서 채택한 '정치노선과 조직 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창설하고, 10월 20일에 38도선 이북의 조선공산당 5도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중앙'을 결성하였고, 같은 해 12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시 북한에서 통일전선, 대군중관계 등을 주도할 만큼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던 북조선 분국은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1945.12.17.~18.)에서 공산당 세포조직, 군중노선, 통일전선 노선 등을 강조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였다.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남조선노동당 창당

1946년 7월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에게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양당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북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양당 연석중앙확대위원회'에서 통합에 합의한 후,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창립 대회를 통해 '북조선노동당'을 출범시키고 당 강령과 당 규약 채택, 당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그 당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과 상임위원 구성은 연안파, 빨치산파, 소련파, 국내파 등 계파별로 안배되었다. 그러나 외전상의 정치연합적 권력 구조와는 달리 내용상으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일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북조선노동당 창립 때처럼 소련 군정은 이 시기에 전개된 남한의 좌익운동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미군정이 추진한 좌우합작 운동 및 남조선 과도입법의 원 설립에 제동을 걸면서 좌익 3당의 합당을 통한 '남조선노동당'의 창당을 유도하였다. 당시 소련 군정사령관이었던 스티코프는 10월 22일 평양에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남조선노동당을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소련 점령군과 북조선 당국의 설득과 위협을 토대로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을 창당하였다.

노동당 창당

소련 군정은 공산당 단독 정권 수립을 향해 나아가면서 1947년 2월 입법기관 창립을 시작으로 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거쳐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정부 수립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소련의 지시 아래 개최된 노동당 제2차 대회(1948.3.27.~30.)를 통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위상은 약화된 반면, 김일성의 당내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제2차 당대회는 앞으로 다가올 정권 수립과 합당을 위해 거쳐야만 할 정치적 정치작업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기에 당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도 국내파의 약화와 김일성계의 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후 북조선노동당은 정권 수립을 위해 1948년 8월 박헌영의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성하고 이어서 정권 수립 이후 1949년 6월 24일에 당대회 없이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 제1차 전원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함으로써 노동당이 창당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일성, 부위원장에는 박헌영과 허가이가 선출되었다.

(2) 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노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노동자, 농민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혁명의 전위조직”이며,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수령의 사당(私黨)으로 되어 있다. 김정일은 이렇게 사당화한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역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영도권을 노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독재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대중에 대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위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 따르면 노동당의 목적을 북한 내부 현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최종 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는 ‘사상·영도의 유일성 및 계승성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당 차원에서 권력세습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형성을 위해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에서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는 노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주체사상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김정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의 위업을 달성할 것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 구조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며, 기타 각종 정치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제7차 당대회(2016.5.6.~9.)에서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최고수위의 명칭을 ‘제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편하는 변화가 있었으며, 당 규약에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명시하고 당원·당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구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어버이와 같은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수령의 지도력이 이처럼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당의 자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 독재의 원칙은 수령의 1인 독재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볼 때, 노동당의 위상은 북한 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요컨대, 노동당은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고 국가제도를 통해 실천하는 역할을 주로 관장하는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3) 당 조직 체계와 기능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 체계는 사회주의적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요구”라고 표현되어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지극히 위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당내에 확보하여 당의 일사불란한 획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령의 1인 지배를 존속시키는 제도적 틀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노동당의 조직 운영에서 상의하달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은 당 생활 지도와 당 정책 지도로 구분되고, 당 생활 지도는 다시 조직생활 지도와 사상생활 지도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조직생활 지도는 정무국(前 비서국) 산하의 전문부서 중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고 사상생활 지도는 '선전선동부'에서 담당한다. 그에 따라 당의 핵심기능인 '당 생활지도권'을 장악한 김정일로서는 '생활총화'와 당 세포비서의 세포 조직활동을 통해 간부 동향을 파악·통제함으로써 수령 절대주의 체제 및 김정일 지도체제 확립에 필수적인 당·군·정권기관을 장악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 규약에서의 유일지배 이념 강조, 당 위원장(前 총비서 및 제1비서)의 우월한 지위, 조직지도부를 통한 당무 지배 등을 감안할 때, 노동당은 최고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당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당대회와 당대표자회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대회이다. 당 규약은 당대회가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 내리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2-2] 당대회 개최 현황

차 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1차	1945.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창건 선포¹¹⁾ • 당 정치노선 및 조직노선 채택
제2차	1948.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 당 규약 개정
제3차	1956.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채택) • 당 규약 개정 • 당중앙지도기관 선거
제4차	196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967)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5차	197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6)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6차	198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제7차	2016.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 사업 총화 • 김정은을 '당위원장'으로 추대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중앙검사위 위원 선거

11) 북한은 2015년 9월에 노동당 창건을 기념하여 발간한 『조선을 이끌어 70년』과 2016.1.23. 노동신문 등을 통해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 1945.10.10.~13.)를 자신들의 제1차 당대회로 밝히고 있다.

제3차 당대표자회(2010.9.28.)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6년 제1차 당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의 당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이후 35년간 당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정권은 44년 만에 개최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를 소집하며 소집 날짜는 여섯 달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로 규정되어 있다.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서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 신설 및 김정은 부위원장 임명,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당대표자회 개최 결과로서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를 비롯해 당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비서국·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 지도체제 재편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대표자회에도 당 최고 지도기관 선거 및 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2016년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당총비서 대신에 노동당 위원장의 지위를 명기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했으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2016.5.6-9.)

[표 2-3] 당대표자회 개최 현황

차 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1차	1958.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1957~1961) •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 당조직 문제
제2차	1966.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세와 당의 과업(국방·경제 병진정책)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 과업(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 월남문제에 관한 당대표자회 성명 채택 • 당 조직 문제(당중앙위원장제 폐지 및 총비서 직제로 개편, 선거)
제3차	2010.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 당 규약을 개정(당대표자회에도 당 규약 개정권한을 부여) • 당 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 선거
제4차	2012.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명문화 • 제1비서직을 신설 • 김정은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당중앙위원회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중앙위원회는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한다.

또한 전원회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및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거하며,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전원회의도 1993년 제6기 제2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전원회의의 개최 전까지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정은 3대 세습의 공식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제3차 당대표자회 및 당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당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30년이 지나는 동안 당중앙위원회 위원은 60여 명만 남아 있었으나,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총 124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공식이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구성원을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現 정무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한편, 2013년 3월 31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제7차 당대회 기간 중인 2016년 5월 9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 부위원장 선거 및 정무국 조직,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직 등을 시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하에서 정치국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었다. 정치국의 위상 변화는 후계구도와 맞물려 나타났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제3차 당대표자회(2010.9.28.) 소집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영호·장성택 숙청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당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그 위상이 복원되었다. 또한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등 5명으로 새롭게 조직된 바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무국(前 비서국)

현재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모든 당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이다. 과거 당 내 모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권력기구는 당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오진우가 사망한 이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 단일 상무위원 체제로 전락하여 그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비서국이 당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당 비서국은 수령제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 및 제4기 제14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10.12.)에서 신설되었으며,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서 비서국은 정무국으로 개편되었다.

당 정무국은 당 내부 사업과 그 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내 핵심 부서로서, 2016년 10월 현재 김정은 당 위원장 외에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등 9명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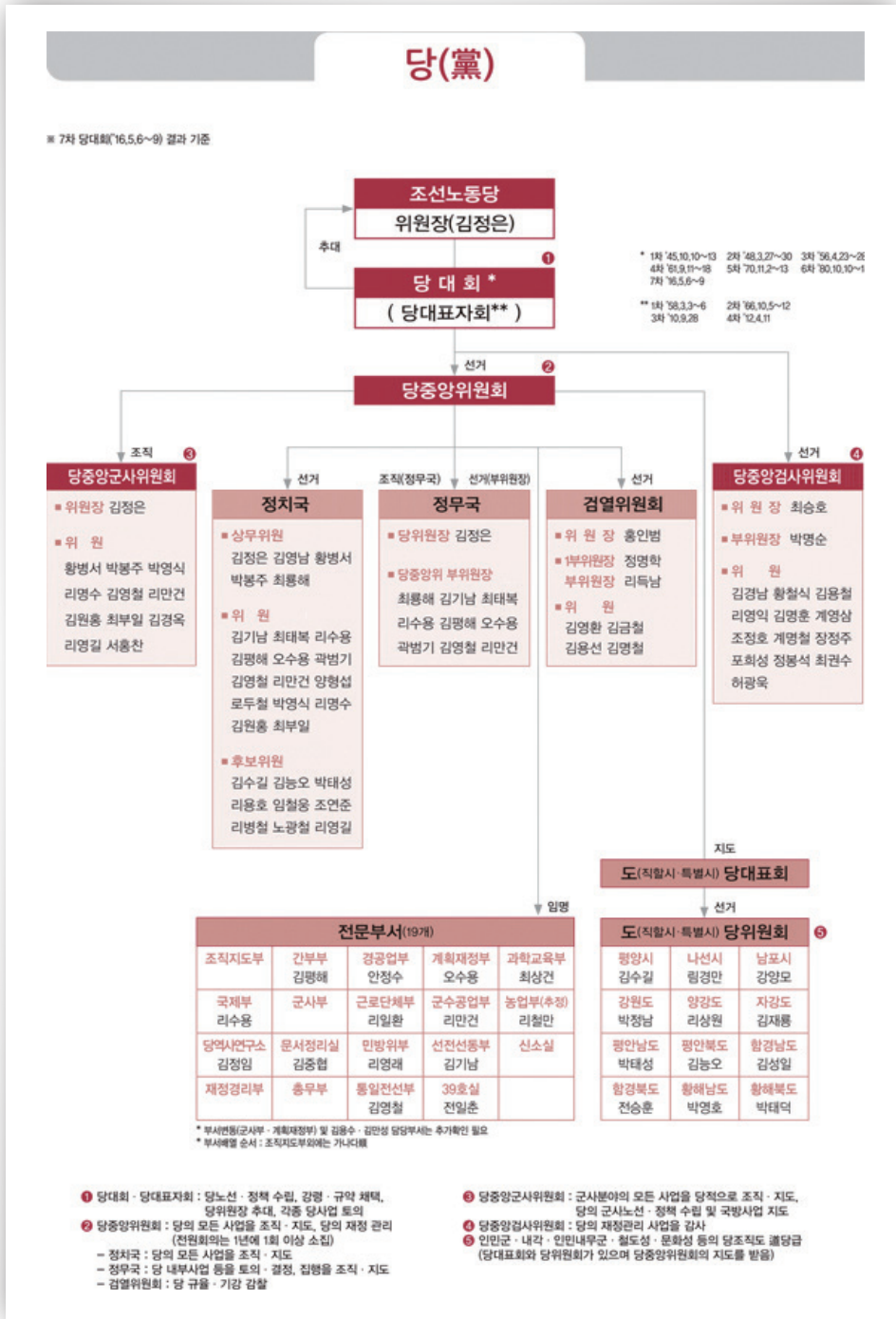
2010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 김정일 시대에도 군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함께 군대의 지휘 및 군사정책과 관련된 단독 지시, 명령, 결정 등을 행사해 왔다.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부터는 상설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안보 및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2010년 당 규약 개정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는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8.20., 8.28.)에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북한 정치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뒤였다. 당중앙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군사위원회는 1982년 승격되어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 전역을 병영체제화하는 ‘4대 군사노선’ 수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국적으로 도, 시, 군 단위에 각급 군사위원회를 두었다.¹²⁾

12)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p.196.

[그림 2-1] 노동당 기구



* 「북한권력기구조」, 통일부, 2016.10.

당 지방조직

노동당의 지방 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 집권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각급 당 위원회는 상하의 당 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동급의 여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 같은 중첩적 위계구조는 당의 조직력 강화에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에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약점도 동시에 지닌다.

당중앙위원회 밑에는 도, 시 및 군 당 위원회를 거쳐 초급당 위원회, 분초급당 위원회, 부문당 위원회, 그리고 당원 5~30명으로 구성된 최하 기층조직인 당세포가 존재한다. 각 단위별 당 위원회는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중앙당의 축소판인 자체 조직 구조들을 운용하며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각 단위지역 내 권력은 해당 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행정, 군, 여타 단체와의 관계

당-정 관계

북한의 권력 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 대한 당의 통제는 통상 당관료가 행정관료 등을 겸하는 겸직장치와 더불어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기구의 당내 설치를 통한 견제와 사찰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정부의 행정 영역에 대해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 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책을 추진하며 추진된 정책은 당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당-군 관계

군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군부를 통제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2010년 9월에 개정된 당 규약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군사사업을 당 차원에서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군부 통제를 위해 당은 군대 내 각급 단위에 당 조직들을 설치하고 정치위원을 파견한다. 인민군 내에는 당의 정치사업을 주도·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의 각급 당 위원회 및 조직을 총괄한다. 이 점에서, 총정치국의 위상은 총참모부와 인민무력성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는 일반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총정치국 지도과, 행정과, 간부과를 통해 북한군을 지도·통제한다. 즉,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총정치국 지도과는 총정치국 조직부를 통해 북한군 지휘관과 정치간부들의 당 생활을 지도·통제한다. 한편,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前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은 총정치국 예하로 당의 군부 통제기능을 보강한다. 그리고 군정을 담당하는 인민무력성과 군령을 담당하는 총참모부 관련 업무는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에서 담당한다.

물론 이러한 당-군 관계가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 이후 변화된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1998년과 2009년의 개정 헌법에 의해 김정일이 직접 주도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계속 강화되었고,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표방함에 따라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민무력부(現 인민무력성)가 국방위원회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면서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북한군 총정치국의 조직이 총참모부와 인민무력성에서 중대까지 군 지휘체계의 구조와 1:1로 대응하도록 전 군대에 조직되어 북한군 전체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에 의한 군 통제구조’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국방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외교·통일·경제 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군 중심의 과도기적 국가체제에서 ‘당-국가체제’로서의 ‘정상국가화’를 추구하였다.

당-사회단체 관계

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해서도 지도와 통제를 행사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단체들 중 다수가 실체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다. 북한의 소수정당이라 일컫는 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도 노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평가될 뿐이다.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前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로서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 관련 단체들도 노동당의 지휘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외곽기구에서 정식 국가기관으로 승격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또한 외형상 국가기구지만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 하에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앙기관

북한에서 당의 영도 아래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국가의 중앙기관으로는 ‘최고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 입법기구로서 최고인민회의, ‘국가주권의 집행기관’인 내각 그리고 사법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1) 국무위원회

북한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하고,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 집행 형태를 감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국무위원장 명령, 국무위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 되며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한다.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며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또한 중요 간부의 임명·해임, 외국과의 중요 조약 비준과 폐기를 결정하고 특사권을 행사하며,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한다.

(2)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또한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임명 및 중앙검찰소 소장 임명·해임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 밖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과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최고 수위(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로 추대하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 서문에 명시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 부문에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토록 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3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3.31.)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헌법 개정, 법령 신설, 인사 개편 등 총 8개 의안을 토의·결정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령 채택, ‘우주개발법’ 제정 및 국가 우주개발국 신설, 박봉주 내각 총리 재기용을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이행력을 제고시켰다. ‘금수산태양궁전법’도 이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2014.4.9.)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 이외에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권력 구조 안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는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약 55%인 376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였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 김정은 최고수위(국무위원장) 추대 등의 의제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최고재판소·검찰소를 중앙재판소·검찰소로 개칭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다.



북한의 만수대의사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임무와 권한으로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소집, 법안 수정

및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법·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의 설치·폐지 그리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비준·폐기,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발표, 다른 나라 국회·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이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는 헌법해석 권한에 의해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의 직책으로 격상시켰던 것이다.

(3) 내각

내각은 행정기관이며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6년 기준 7위원회, 31성, 2국, 1원, 1은행 등 총 4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되었다. 이 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일부 임무와 권한 이양에 따라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된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한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해당 부문의 사업을 관장한다.

(4) 사법기관

검찰기관

북한은 헌법에 검찰기관의 구성, 임무 및 내부 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법집행 기능과 더불어 체제수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검찰은 중앙검찰소 산하에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를 두고 있다. 북한 검찰은 하급 검찰소가 상급 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 동일체’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고,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중앙검찰소가 담당한다. 중앙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재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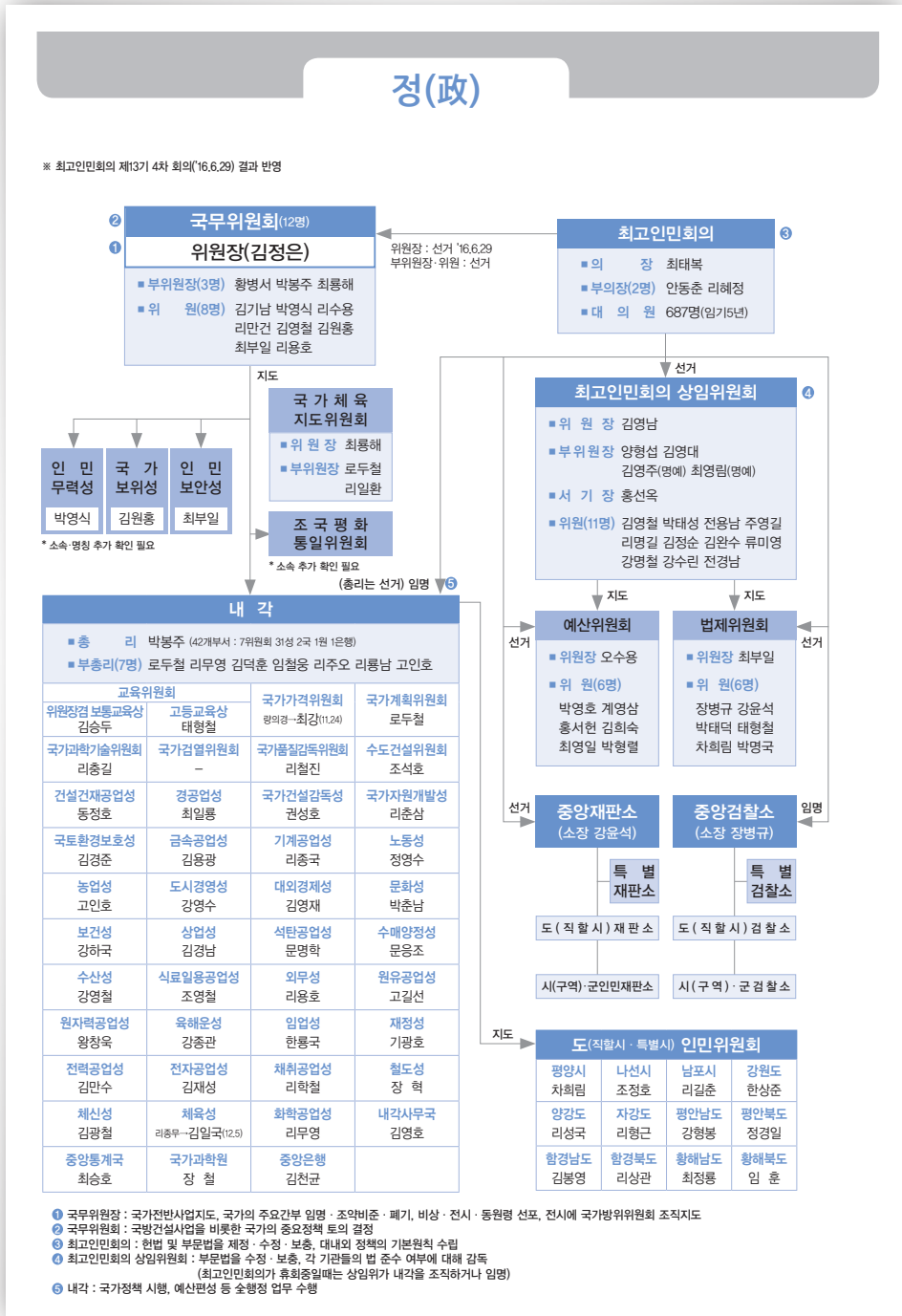
북한 재판기관의 구성은 검찰기관과 동일하게 중앙재판소 밑에 도(직할시) 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를 두며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재판은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하부 기관의 재판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을 지도·감독한다.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의 심리와 도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군·보위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예컨대, 장성택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된 지 나흘 만인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에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행위’로 사형판결 및 즉시 집행된 바 있다.



[그림 2-2] 정권기관



* 「북한권력기구조」, 통일부, 2016.10.

제4절 권력 세습과 김정은 체제

1. 권력 세습 과정

북한 정권은 수령독재체제와 세습체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김일성은 1960년대 후반에 독점적 단일지배체제를 구축한 이후 1970년대 들어와 김정일을 후계자로 하는 부자 권력세습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를 명분으로 도전 세력들을 숙청해 나갔다. 숙청의 핵심 논거로 제시된 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계속혁명론과 수령론에 기초한 후계자론이었다. 그것은 결국 세습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정치적 숙청 과정을 거쳐 유일체제 구축 및 후계체제 공고화를 정당화하는 정치체제로 구체화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와 내각 등에서 업무경험을 쌓고 31세의 나이에 당 조직지도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 등을 주도하였으며, 1980년의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당중앙위원회 정위원, 당 정치국 위원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선출되어 당과 군을 주도하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핵심적 대외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김일성의 공식적 후계자로서 실질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2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할 무렵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조원으로는 대학 졸업생들이 2~3년간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소조원들은 각급 기관 및 생산 현장에 파견되어 간부,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지도하면서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김정일은 북한 사회를 이끄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주도하였다. 김정일이 주도한 사회운동으로는 ‘속도창조운동’, ‘전 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 양양’,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이 있다.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1991년의 ‘우리식 사회주의’도 김정일의 주도적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1981년, 평양)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은 군사 지도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199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나아가 1992년 4월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후,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북한의 모든 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유신통치 기간을 거쳐 김정일은 1997년 말 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었고, 이듬해 9월 개정 헌법에 따라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의 지위에 올라섬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열었다.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심각한 경제난과 북핵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유지해 나갔다.

1964년 대학 졸업 후 30년간 당 사업을 통해 나름대로 후계자로서의 통치역량을 축적해 온 김정일이 구축한 세습 권력의 정치체제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수령 중심의 1인 지배체제이다.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었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1인지배를 정당화해 주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인민과 정치조직 및 기구가 수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군사우선주의이다. ‘선군정치’로 불리는 군사우선주의는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 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를 의미한다.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선군정치론은 북한 혁명과 건설의 주체 세력이 군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군정치론은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다.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우리 학교 우리 초소 운동’ 등은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을 이룬다는 ‘군민일치’,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로 굳게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관병일치’, 군사일꾼들과 정치일꾼들이 서로 합심하여 최고사령관의 지도 아래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군정배합’ 등의 구호들이 선군정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선군정치 구호가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군부는 다양한 민간 영역을 잠식했다. 군이 주요 건설사업에도 병력을 투입했다. 청류다리, 금릉2동굴, 태천발전소,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평양-향산 관광도로 등은 군 주도로 이루어진 건설사업들이다. 선군정치는 침체된 북한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군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오랫동안의 피폐해진 경제 상황에서 노동의 욕을 상실해버린 북한주민들을 산업현장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군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강성대국론’이다. 김정일이 내세웠던 강성대국론의 기치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며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강성대국론은 북한 주민의 결속과 통합을 주도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강성대국론은 사상·정치, 군사, 경제 강국을 실현하자는 것이지만 북한 스스로는 ‘사상·정치·군사강국은 이미 달성되었고, 경제강국의 건설을 통해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할 것’이라고 선전하여 왔다.¹³⁾

13) 강성대국론은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과 함께 본격 등장한 것으로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해’로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11년 들어 ‘강성대국’을 ‘강성국가’로 격하시키고,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강성부흥’이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하였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북한식 독자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반작용적 구호라고도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강성국가 건설’을 답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세가지 방도를 제시했다. 첫째, 당을 중심으로 군중을 단결시켜 일심단결을 이룩하여 정치사상 진지를 다지고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둘째, 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 군기’를 확립하고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노동적위군 대원들은 전투정치 훈련을 더욱 강화한다. 셋째, 국방공업 부문에서 첨단무장 장비를 증산한다.

2. 김정은 체제의 형성

(1) 3대 세습과 김정은의 등장

김정은 체제는 후계과정을 거치면서 당 조직 장악, 이데올로기 해석권 독점, 군부 숙청 등을 통해 공고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 구축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2010년 초부터 김정은 찬양가로 알려져 있는 ‘발걸음’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가 하면, 4월 14일 개최된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던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등장됐다.

2010년 9월 27일에는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후계체제 기반을 다졌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 (2010.10.10)

다. 특히,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201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군 열병식에 참석하여 군사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김정일 사후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가장 중시하는 북한 정권은 김정일 유훈, 체제 정통성, 군부통제, 내부통제, 결속유도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추진했다. 2011년 12월 29일 개최된 김정일 사망 추도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선언되었으며, 12월 30일에 열린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유훈(2011.10.8.)에 따라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였다.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제4차 당대표자회(2012.4.1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2012.4.13.)를 통해 당·군·정의 최고 직위에 추대됨으로써 ‘3대 세습’을 완료하였다. 김정은이 ‘공화국 원수(2012.7.17.)’에 추대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2) 김정은 체제의 형성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가 현재와 같이 김정은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린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개최를 통해서였다. 동 당대표자회 및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규약과 헌법의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하고 ‘온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는 등 김정은 체제의 제도적, 이념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북한의 권력 기반은 당 기구(중앙위원회, 정치국, 정무국 및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엘리트들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항일 빨치산 세대(혁명 1세대), 천리마 세대(1950~60년대 천리마운동 세대), 3대혁명세대(1970년대 중반 3대혁명소조운동 주도), 고난의 행군 세대(90

년대)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고령인 혁명 1세대뿐 아니라 천리마 세대들까지 점차 권력의 요직에서 퇴진하는 추세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50~60대의 3대 혁명 세대들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김정일 정권 말기에 북한의 핵심 권력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주로 김정일의 대학 동기, 당 조직지도부 출신 또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도와줄 50~60대의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은이 당·정·군 내 40~50대 간부들을 대거 발탁하고 있어 북한 권력 엘리트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3.3.31.)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2013.4.1.)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결정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및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과거와 달리 당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와 숙청을 통한 군권 강화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일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고영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도록 김일성과 유사한 모습의 김정은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진행하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연설 내용 중 ‘김일성 민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 ‘김일성민족’이라는 표현이 북한 보도매체에 자주 사용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2010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당’이라는 표현도 명기하였으며 2012년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유일지도사상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당 규약보다 실질적으로 우선 작동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함으로써,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권력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2013.12.17.)를 통해 김정은을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역

사를 펼치시고 있다.”고 한 최룡해의 ‘결의 연설’이 주목할 만하다.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면서 충성경쟁을 통한 1인 지배체제 구축과 체제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5월 9일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6월 29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에 올랐다. 이로써 김정은은 임시적인 권력의 성격인 ‘제1’의 수식어들을 없애고 김정은 중심의 권력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III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제1절 대외정책 목표

제2절 대외정책의 변천 과정

제3절 주요국들과의 관계



Key

Point

01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우위 국가체제의 특성 상 노동당 지도 아래 결정·집행되어 왔다.

02

냉전 시기 북한의 외교 활동은 한반도 공산화와 대남 우위 확보를 위해 사회주의권과 비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 생존에 중점을 두고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외교관계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03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체제 생존의 핵심 관건으로 보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일본과는 식민지 배 보상금 등 실리확보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04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긴밀화하여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제하면서 경제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냉전시기와 같은 긴밀한 관계로 복원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 세계 비동맹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1절 대외정책 목표

1. 이념과 목표

북한은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7조) 이러한 이념은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 아래 제국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고 우호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는 ‘반제 자주力量的 단결강화와 비동맹 운동의 확대 발전’ 및 ‘사회주의的力量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이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계급 해방의 실현” 등이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로 규정되었다.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반제자주력량과의 연대성 강화, 다른 나라와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운동 발전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였다.

2. 방향

냉전 시기 북한의 외교는 한반도의 공산화와 대남 외교 우위 확보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다.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실리 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활동은 사회주의권,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비

동맹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된 것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의 구조와 이념갈등 요인 때문이다. 반면,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활발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반제국주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남한과 수교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국제적 고립 상태에 직면하였다. 북한은 체제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체제 안정성 확보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 우호관계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미·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 관건으로 보고 대결 상황 속에서도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며 핵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한 후 이를 매개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동시에 얻어 내려는 ‘벼랑끝전술’¹⁴⁾을 구사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차례 양자·다자 회담을 개최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인해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2006.10., 2009.5., 2013.2., 2016.1., 2016.9.)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 연평도 포격도발(2010.11.),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1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2016.8. 등), DMZ 목함지뢰 폭발(2015.8.) 등으로 국제적

14)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위기감을 조성하는 전술이다. 냉전 시기 미·소 간 대립 상황에서 외교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양측이 사용하던 외교 전략에서 유래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위협 조치와 협상 행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강화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을 견제하고 경제원조를 비롯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 및 러시아와 사안별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선택적 협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3. 대외정책 결정구조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우위 국가 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의 지도 아래 결정·집행되어 왔다.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당 차원의 지도는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의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정무국 산하 전문부서 중 국제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고지도자에 의해 지휘·감독된다.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대외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 때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외교 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외교 사절의 임명·소환을 결정·발표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당, 국가, 민간 등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즉, 당 국제부, 외무성, 당의 외곽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정당간 외교는 당 국제부, 의회간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민간 외교는 노동당 외곽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이 각각 맡고 있다.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 30여 개에 이르는 지역국과 기능국을 분담해 업무를 관장하면서 산하에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두고 있다. 민간 외교는 주로 당 외곽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

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며, 조선직업총동맹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의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헌법 개정(2016.6.)을 통해 국무위원장은 “국가의 최고영도자로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며, 특사 파견권을 행사하고 외국과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한을 지닌다.”고 명문화하였다.

III

제2절 대외정책의 변천 과정

1. 냉전 시기 대외정책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제가 형성되었던 냉전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시기별로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948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중·소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외교, 2단계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비동맹국 외교, 3단계는 1970년대 자주외교, 4단계는 1980년대 대서방 실리외교이다.

(1) 중·소 사회주의 진영외교: 1948~1950년대 초

북한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 북한은 정치·경제적 지원을 얻어 낼 수 있는 우방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필요하였다. 그 중심에 전 세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이끄는 소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중국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는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이 1950년 6.25전쟁에 참전했던 계기를 통해 혈맹 관계를 맺었다. 이후 북한은 중국 중심의 외교에 치우치지 않고 중·소 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경쟁적으로 경제원조를 받았다.

(2) 비동맹국 외교: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은 전후 복구·건설을 위한 경제지원 획득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무상원조에 중점을 두고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소련에서 스탈린 사망(1953년) 이후 흐루쇼프가 집권하면서 평화공존 정책이 주요 화두로 제기되고, 1955년 4월 반동회의에서 ‘반동 10원칙’이 제시되면서 북한의 외교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국한된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및 비동맹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 들어 북한은 중·소 이념 분쟁과 남한에서의 군사정권 등장, 쿠바 사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신생 독립 국가들의 유엔가입 증가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비동맹국들과의 외교 관계 수립에 더욱 주력하였다. 이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들의 유엔가입 증가와 1960년 제15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초청 문제가 제기 되면서 대남 관계에서의 국제적 우위를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하타 대통령과 김일성(1965년)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 투쟁, 신생 독립국가에 대한 접근 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 일환으로 당시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1961.6.), 중국을 방문해 ‘조·중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1961.7.)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62년 중·소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우방국인 중국 및 소련과의 외교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중·소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의 대부분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고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대남 관계에서의 우위 확보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국제적 입지 강화를 모색하

던 북한은 1966년 8월 ‘내정 간섭과 호상 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¹⁵⁾하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한 비동맹국 외교에 본격 나섰다.

(3) 자주외교: 1970년대

북한은 1971년 9월 중국의 유엔 가입과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일본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등 주변환경이 변화되자 자주노선 견지와 경제적 실리 추구를 외교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하였던 북한에 우호적인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에 비동맹국 외교도 적극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북한은 노동당 제5차 대회(1970년) 이후 제6차 대회(1980년)까지 66개 국가와 수교하였으며, 제3세계 지역에서 중·소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외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¹⁶⁾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대남도발과 외채상환 문제, 위폐 및 외교관 밀수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국제적 입지는 약화되었다.

(4) 대서방 실리외교: 1980년대

북한은 1980년대 들어 경제침체 회복에 중점을 둔 대서방 실리외교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갔다. 당시 북한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중공업 우선주의,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노선 등의 비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 누적으로 장기 경제침체에 진입한 상태였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선택(1978년)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

15) '자주성을 옹호하자', 『노동신문』, 1966. 8. 12.

16) 1975년 8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 외상회의(8.25.~30.)에서 '비동맹회의' 정식 회원에 가입하였다. 1975년 개최된 제30차 유엔 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서방측과 공산측의 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등 북한의 영향력이 유엔 외교까지 미치게 되었다.

제전환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현실로 입증해 줌으로써 북한의 실리외교 추진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했다.

이로부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 국가, 제3세계 개발도상국,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관계에 중점을 둔 외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및 경제협조 관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1983년 10월 버마(현재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으로 북한의 국제적 위신이 실추되고 서방 국가들로부터 고립을 받는 등 외교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결국 북한의 선진 자본주의 기술도입과 자본유치를 목적으로 한 대서방 실리외교는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 탈냉전 시기 대외정책

소련의 붕괴로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등 탈냉전 시대가 들어서자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1990년대는 미·일 외교관계 정상화,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미·일 외교 정상화: 1990년대

1990년대 초 북한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와 경제침체, 국제적 고립 상황의 지속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소련의 붕괴 및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 이완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난 타개와 국제고립 탈피 목적에서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모색하였다.

1970·80년대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던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제1차 북핵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북·미 간 양자대화를 추진하였다. 수년간 여러 차례의 북·미 고위급회담 끝에 1994년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1999년 '베를린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1990년부터 북한의 미군 유해 발굴 및 인도사업도 실시되었고 1998년까지 200여 구의 미군유해가 인도되었다.

한편,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1991~1992년 북일 협상을 8차례 개최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1995년 3월 북한 노동당이 일본 연립 여당과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에 합의하였고, 1995~1996년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북·일 간 두 차례의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 일본 자민당 대표단의 방북(1998.3.) 등 북·일 관계 정상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일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북한이 1999년 8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더욱 냉각되었다. 이후 북·미 간 '베를린 합의'(1999.9.)를 계기로 북한은 일본의 정당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를 합의(1999.12.3.)하였다. 그 결과 북·일 적십자회담이 개최(1999.12.19.)되어 재북 일본인 여성 고향방문 재개 등 4개 조항이 합의되었다.

(2) 전방위 외교: 2000년대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 기간(1994.7.8.~1998.8.)을 거쳐 공식 출범(1998.9.)한 김정일 정권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대량 아사 등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난 극복, 대외고립 탈피,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의 목적에서 세계 여러 국가와 전방위 외교관계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최우선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전통적 우호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도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의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도 북한은 ‘핵 카드’를 수단으로 한 ‘벼랑끝전술’을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 미국의 BDA(Banco Delta Asia)은행 자금동결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가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해결 국면에 접어들자 2000년 10월(미국의 클린턴 정부 시기)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조·미 공동 코뮤니케’와 ‘반테러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였으나, 2001년 1월 부시 정부 출범, 2차 북핵 위기 대두 등으로 북·미 관계는 다시금 악화되었다.

‘선 비핵화’를 지향하며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미국과 핵보유를 체제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과의 대립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중재할 6자회담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섯 차례¹⁷⁾ 열렸으나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검증 등 합의사항을 불이행하여 현재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중·러 등 전통적 우방 국가와 일본을 비롯한 미수교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등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2000.5., 2001.1., 2004.4., 2006.1., 2010.5., 2010.8., 2011.5., 2011.8.)과 장쩌민(2001.9.), 후진타오(2005.10.) 등 중국 지도부의 방북으로 북·중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으나, 시진핑 정권 출범(2012년)이후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으로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가 중국을 방문(2013.5.)하고 류원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북한 당 창건 70주년 행사 참석, 상호 간 경축행

17) 제1차 회담(2003.8.27.~29.), 제2차 회담(2004.2.25.~28.), 제3차 회담(2004.6.23.~26.), 제4차 회담 1단계 회의(2005.7.26.~8.7.) → 2단계 회의(2005.9.13.~19.), 제5차 회담 1단계 회의(2005.11.9.~11.) → 2단계 회의(2006.12.18.~22.) → 3단계 회의(2007.2.8.~13.), 제6차 회담 1단계 회의(2007.3.19.~22.) → 2단계 회의(2007.9.27.~30.)

사 축하사절 파견(2015.9.~10.),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방북(2016.2.2.),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시진핑 주석 면담(2016.6.1.) 등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예전의 혈맹관계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표 3-1] 6자회담 주요 합의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9.19공동성명 (2005.9.19.) 제4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폐기, 미국의 대북한 안보 우려 해소, 경수로 제공 동의 • 미·북의 상호 주권 존중 및 평화공존, 일·북 관계 정상화 조치 • 대북 에너지 지원,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에 동의 •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비전 제시 •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조치
2.13합의 (2007.2.13.) 제5차 회담	<p>초기 단계 이행 계획: 60일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중유 5만 톤 지원, • IAEA 사찰관 복귀, 핵 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논의 •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진전 • 미·북, 일·북 관계 정상화 대화 개시 <p>5개 실무그룹 구성: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 미·북, 일·북 관계 정상화, 동북아평화안보 체제 <p>초기 단계 완료 이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프로그램의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 6차 장관급회담 개최
10.3합의 (2007.10.3.) 제6차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까지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 핵시설 불능화 • 북한 핵 물질·기술 이전 금지, 중유 100만 톤 지원 • 테러지원국 및 대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추진 • 미·북, 일·북 관계 정상화

러시아와는 김정일 생존 당시 정상 간 상호 방문(푸틴 대통령 방북: 2000.7., 김정일 방러: 2001.7., 2002.8., 2011.8.)으로 전통적 친선관계가 일부 회복되었다. 김정은 등장 이후 나진-하산 도로개통 등 일부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러시아 소치올림픽(2014.2.)과 전승절 행사(2015.5.)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푸틴 대통령 면담, 북·러 ‘친선의 해’ 선포 공동결의문 채택(2015.3.), ‘비법입국 및 비법체류자들의 인도와 접수에 관한 협정·의정서 조

인'(2016.2.3.), 인민무력성 대표단 러시아 방문(2016.9.3.) 등은 북·러 관계가 우호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핵실험·장거리 로켓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로 경협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전통적 친선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힘입어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2000.1.)을 시작으로 영국(2000.12.), 독일(2001.3.) 등 2010년까지 유럽연합 25개 회원국(프랑스, 에스토니아 제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대외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유럽연합 유로화 사용을 결정(2002.12.)하고 북한 노동당 대표단(단장: 강석주 당비서)이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2014.9.)한 것은 북한이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인권문제 등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는 200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과 유럽연합의 인권대화를 통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하고 북한 당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중단되었다. 이후 제14차 북한과 유럽연합 간 국장급 정치대화(2015.6., 평양)에서 논의되었으나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동남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의 북한 방문을 유도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 식량차관 등의 문제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은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비동맹국을 포함한 전방위 외교에 특별히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외교정책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대북제재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하여 있다.

제3절 주요국들과의 관계

1. 미국과의 관계

북한이 대서방 접근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미·소 간의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 시기 북한의 대미 접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유럽 사회주의권 붕괴로 외교 기반이 위축되고 체제 보호막 역할을 해 온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외교 고립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 왔다.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평화협정 체결, 체제보장, 핵문제 해결, 인권문제를 통한 내정불간섭, 대북제재 해소 및 경제적 실익 추구이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초기에 남북간 의제로 시작(1962년)¹⁸⁾하여 미국과의 단독 협상의제(1974년)¹⁹⁾로 선회한 이후 현재까지 대미 관계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의제이다. 북한은 또한 핵문제에서 ‘벼랑끝전술’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여 왔다. 북한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의 틀을 유지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 1996년 4자회담, 1999년 ‘베를린회담’(미사일문제), 2003~2007년 6자회담 등은 북·미 간 양자 또는 북·미 등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한 다자회담들이었다.

18) 북한은 196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19)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대미 서한을 통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제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가침 서약 및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 제거 (2)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 중지 (3) 조선경외로 부터의 일체의 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 중단 (4) 유엔군 해체 (5) 외국기지화 반대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 북한은 6자회담 진전을 희망하는 등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 핵 확산 의혹 해소 등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이 천명되면서 북한의 대미 태도는 강경해지기 시작하였다.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²⁰⁾,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²¹⁾, 2009년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발표, 2010년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을 통해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였다. 2012년 초 북한과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지원 재개에 합의(2.29합의) 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발사로 무산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가 2013년 1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를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월 7일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²²⁾를 채택했다. 이후 북한과 미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미·북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6년 북한의 4·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2270·제2321호의 채택을 주도하고 독자제재를 실시함에 따라 북·미 관계는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최근 미·북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는 조항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반발하였다. 북한은 2015년 9월 개최된 제70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반대와 미국을 상대로 한 평화협정 체결

20) 이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은 같은 해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 선언과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하겠다고 맞대응하였다.

21)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는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2009년 6월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다. 이 결의에서는 화물·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2)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는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의 제재 조치를 강화·확대해 2013년 3월 7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다. 이 결의에는 의무조항 5개를 포함하여 수출 통제, 항공·선박 규제, 금융 압박, 북한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됐다. 제2094호는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 조치)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억제 및 완전 포기를 위해 기존 제재의 수위와 강도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한 강력한 결의로 평가된다.

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의결과 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인권 제재를 시행(2016.7.7.)하였다. 김정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특징으로, 북한은 이에 대해 대미 관계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선언하는 외무성 성명(7.8.)을 발표하고 뉴욕채널을 차단(7.10.)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2. 중국과의 관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때로 소원해지기도 하였으나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순치(脣齒) 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이념을 토대로 하여 북한을 후원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되는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탈냉전 상황에서 이념보다 실리경제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1990년대 들어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중국이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에서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 온 구상무역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는 한편, 1992년 8월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그동안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과는 이념적 동질성,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국 방문 이후 2010년까지 6차례 방중하면서 협력관계를 모색했다. 장쩌민·후진타오 등 중국 국가 주석들도 방북(2001.9., 2005.10.)함으로써 양국간 친선우호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어느 때보다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중관계 강화를 위해 김정일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였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2010.5., 2010.8., 2011.5.)을 개최했다.

2011년 5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 기간(5.20.~27.)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친선관계 진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당 대표자회 정신을 높이 받든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3대세습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 완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북 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김정일 사망 이틀 후인 2011년 12월 19일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 당·국가·인민 간의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공헌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체제의 대중 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2012년 11월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북한과 ‘혈맹’보다 ‘정상국가’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미온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3년 5월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2015년 9월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과 10월 중국 공산당 류윈산 상무위원의 북한 노동당 70돌 경축행사 참석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2] 김정은 체제의 북·중 인사 교류 현황

날자	상호 교류 현황
2012.7.	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의 중국 방문
2012.7.30.~8.3.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 단장 왕자루이 부장 외 일행 북한 방문
2012.8.	북한 당중앙위원회 장성택 부장 외 북·중 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 중국 방문
2013.5.	김정은 특사자격으로 최룡해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중국 방문
2015.9.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5.10.	중국 류원산 상무위원의 북한 노동당 70돌 경축행사 참석차 북한 방문
2016.2.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북한 방문
2016.5.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중국 방문(단장 리수용 부위원장 김정은 친서 전달)
2016.10.24.	류젠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북한 방문

시진핑 지도부는 집권 초기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모든 당사국에게 역내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긴장 고조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신속하게 동참하면서, 동시에 독자제재를 강행하는 등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6년 4월 5일 대북 수출입 금지품목 25종을 발표한데 이어 2016년 4월 28일 '제5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CICA) 외교장관 회의' 기조강연에서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2016년 6월 14일 대북 수출금지품목 확대 등은 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강경한 대북입장을 보여준다.

북·중 관계는 중국의 북한 함경북도 북부지역 피해와 관련 '지원물자 무상기증' 방식의 북·중 경제교류 추진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근본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선노동당 70주년 경축행사시 방북한 류원산 상무위원(2015.10.)

3. 일본과의 관계

1970년대에 들어와 동서 간 데탕트와 미·중 우호 협력관계 발전, 남북대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도 다소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북·일 수교 문제는 1990년대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북한과 일본 간 수교회담은 1991년 1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0년 11월 까지 11차례 개최되었다.

북·일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들을 포괄 해결하기로 한 ‘북·일 평양선언’²³⁾을 발표함으로써 전기를 마련하였다. 양측은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2년 만에 제12차 수교회담을 개최(2002.10.29.~30, 쿠알라룸푸르)하였으나 일본의 핵개발 포기 요구 및 납치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차기 회담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하였다.

2004년 5월 22일 김정일과 고이즈미 총리는 1년 8개월 만에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2002년 10월 이후 중단된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일 관계 개선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사망한 후 2004년 12월 일본으로 송환된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진위 여부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본 국민의 대북 감정이 악화되었고, 북한은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한편 북·일 간 전세기 일본 착륙 금지, 북한 당국자 및 승무원 입국 금지, 모든 북한 상품 수입 금지 등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

23) 북·일 평양선언으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관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국교정상화 후 대북 무상 자금 및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 경제 협력을 실시기로 하였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핵 문제의 포괄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 준수와 미사일 발사 유예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2009.6.12.)에 동참하면서 대북 수출 전면금지 등 독자적으로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에 의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됨으로써 일본의 대북 정책 기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한편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후 2013년 5월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치마 내각 관방참여가 방북하고, 2014년 북·일 간 국장급회담이 수차례 개최되었다(2014.3., 2014.5., 2014.7.). 특히 5월 26~28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일 국장급 회담(스톡홀름 합의)에서 북한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 재북 일본인 유골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 측은 재조사 개시 시점에 민간인 왕래 규제, 송금·휴대금액 제재, 인도주의 목적 아래서의 북한 국적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등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7월 4일에는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일본도 같은 날 합의한 세 가지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일본이 조총련 간부 재입국 금지, 대북송금액 제한 등 요지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를 '스톡홀름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면서 '재북 일본인 재조사 중단 및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아베 정부도 납북자문제를 대북제재의 근거로 삼고 그 문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독자제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2016년 8월 북한의 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 일본은 강력히 비난하였다.

4. 러시아와의 관계

탈냉전 시기 이전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전통적 우호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소련은 군사·이념적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 정권의 수립을 지원하였고,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였다.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은 새로운 북·러 관계 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하는 등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1996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에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 체결에 이어 소련과 러시아의 최고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김정일과 푸틴은 2000년 7월 19일 평양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조와 상호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²⁴⁾을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 복원,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대미 공동보조,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합의가 담겨 있다.

24) 북·러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쌍방의 협조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북·러 신조약 정신 확인, 상호 침략 또는 안전 위협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접촉, 유엔 헌장 목적·원칙 존중과 이 헌장을 위협하는 힘의 사용·위협 반대, 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 준수, 북한 미사일의 평화 성격 강조, 아·태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위체계(TMD) 구축 반대, 국제 경제 협조와 확대, 쌍방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연계 적극 발전 등이다.

한편, 러시아는 2007년 2월 1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와 2007년 10월 3일 '9.19공동성명을 위한 2단계 조치'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을 지지하였고,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체제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나진-하산철도 및 나진항 재건 착공식과 2012년 북한의 대러 채무 탕감협정 체결, 2014년~2016년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친선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러시아가 동참함으로써 북·러 관계는 소원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북측 고위인사들이 매년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북·러 나진-하산 철도 개보수 완공

러시아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북·러간 '비법입국 및 비법체류자들의 인도와 접수에 관한 협정 의정서' 조인(2016.1.), 대북 식량기증(2016.2., 2016.7.) 등을 통해 북한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양면적 외교행태를 보이고 있다.

5.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와의 관계

(1)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북한은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1999년 9월 제54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사상 처음으로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해 서방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 가운데 외교관계가 없는 7개국을 대상으로 수교를 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제의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북 수교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어 2001년 5월 2일 당시 유럽연합 의장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방북하여 서방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김정일과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2003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확인받고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한측 경제조사단의 유럽 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유럽연합 개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써 이탈리아(2000.1.4.), 영국(2000.12.12.), 독일(2001.3.1.) 등 2013년까지 프랑스 및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정치대화도 인권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 2003년부터 꾸준히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유엔 총회 차원으로 격상하여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을 주도해 왔다.

2005년 11월 유럽연합이 유엔에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과 유럽연합 간 대화는 단절되었고,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월 2차

핵실험은 양자 관계를 냉각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2011년 3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영국, 2014년 9월 북한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유럽연합 가입국 의원 및 유럽의회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교류는 지속되어 왔다. 2015년 6월 북한·유럽연합(EU) 간 제14차 국장급 정치대화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핵과 미사일, 인권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인권문제 등으로 북한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후 유럽 여러 정당 출신의 북한 방문(2016.3.), 리수용 외무상의 ‘지속개발 목표달성에 관한 고위급 토론회’ 참석차 유엔 방문(2016.4.),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참석(2016.9.) 등이 있었으나,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인권문제 등으로 북한과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 기타 국가와의 관계

북한은 유럽연합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기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이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증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다. 당시 북한은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의 비동맹 국가들로 외교관계를 확대할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후 북한은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활발한 비동맹국 외교를 전개하였다.

1980년대 초 ‘자주·친선·평화’의 대외정책 기본원칙 제시를 계기로 북한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추진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 해체와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체제생존이 급선무이던 북한에 비동맹국들과의 외교관계는 더욱 중요하였다. 여기에 유엔에서의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후원 국가가 필요한 상황도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 강화의 주요 변수가 되었다.

북한이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지속 추진해 온 배경에는 ‘반제·반미 공동 전선’ 형성과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 유엔에서의 비동맹 그룹 국가가 많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비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의 핵 보유가 자위적 방어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동맹국들과의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2006년 미사일 발사, 1차 핵실험으로 한동안 북한의 비동맹국 외교는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북한의 대외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탈피하기 위해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2013년 6월 김격식 총참모장이 쿠바를 방문하였으며, 박의춘 외무상이 제2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여 수교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2013년 8월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10월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한 데 이어 201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동회의 60주년)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으며, 2016년 9월에 개최된 비동맹국 회의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수용 국제부장이 참여하였다. 또한 강석주 노동당 비서의 쿠바 방문(2015.6.), 쿠바 대표단의 북한 방문(2015.9., 2016.6.) 시에는 김정은 면담 등을 실시하고 친선관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쿠바공산당 대표단 방북(2016.6.30.)

김정은 체제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는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체제 생존 목적이 함축되어 있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행되는 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3-3] 남북 수교 현황 (2015년 12월 기준)

지역	수교국		동시 수교국	단독 수교국	
	한국	북한		한국	북한
아시아	37	26	26	11	0
아메리카	34	24	23	11	1(쿠바)
유럽	53	49	48	5	1(마케도니아)
중동	18	16	15	3	1(시리아)
아프리카	48	45	45	3	0
계	190	160	157	33	3

* 「2016 외교백서」, 외교부, p.426.

IV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제도

제2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제3절 북한의 군사력

제4절 대외 군사관계



Key

Point

01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수호의 보루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02

북한의 군사전략은 강성대국을 표방한 이후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특수부대, 전자전 등 특수전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은 비대칭 전력 우위와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03

북한은 오랜 기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군 병력을 활용하여 건물·교량·항만·도로 건설, 위탁 경영, 영농 관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다. 아울러 군부대는 사금 채취, 외화 벌이 등 자체 사업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등 군 조직이 자체 생존을 위한 경제 단위로 변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04

예비 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인구 대비 세계 제1위의 병력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측에 테러를 감행하거나 기습 공격하여 단기간에 주요 지역을 점령하려는 제한전, 지원 병력 도착 이전에 우리측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속전속결 군사전략도 유지하고 있다.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제도

1. 성격

북한군에 대한 성격은 2010년 9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당 규약 전문을 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당과 수령의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헌법은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 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대는 ‘혁명의 수뇌부’ 보위를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북한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군대뿐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군의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군의 위상은 동유럽 공산권 붕괴 이후 경제난 및 체제위기 상황에서 통

치논리로 '선군정치'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1998.10.9.)라는 표현에서 보듯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군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정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사상은 2009년 4월 헌법 개정 당시 주체사상과 나란히 명문화되어 지금까지 규정돼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정은을 김정일과 동일시하고, 전군의 수반, 영원한 단결의 중심, 최고영도자로 이상화하여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을 주장하였고, 2013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군력이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2013년 3월 3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천명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반기 재래식 군사비를 줄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투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핵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유일영군체계 확립을 위해 군 고위층 간부를 자주 교체하는 등 군부의 충성심 확보를 위해 군부통제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실시(2016.9.9.)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2. 기능과 특징

북한이 정권 수립(1948.9.)보다 7개월 먼저 군을 창건(1948.2.)한 사실에서 보듯 북한에서는 군을 당의 혁명통일 무장력으로서 최우선 배려하며 양성하고 있다. 북한이 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군을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한편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대 군사노선’으로 1962년 12월 조선노동당 제4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이래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1992년 헌법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

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全民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명문화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표 4-1] 4대 군사노선

노선	정책 목표
전군 간부화	모든 군인을 정치 사상, 군사 기술로 단련시켜 유사시에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전군 현대화	군대를 현대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로 무장해 최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습득
全民 무장화	인민 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 사상, 군사 기술로 무장
전국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 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 요새로 건설

*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p.89.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방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방 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을 보유하게 하는 등 권한을 강화시킨 바 있다. 그 후 2016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국무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직책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으로 바뀌었다.

북한 헌법에서 말하는 일체의 무력이란 정규군 128만여 명은 물론 교도대, 노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동원 가능한 예비 병력 762만여 명을 망라한 군사력을 의미한다. 또 국방관리 전반은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함을 뜻한다.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아래 혁명과 건설을 유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군을 장악할 수 있는 명분과 토대가 구축되었다. 김정일 사망 직후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각각 추대되었다. 2016년 6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칭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군(軍)중심에서 당중심의 내각 운영에 힘을 실었다. 국무위원회는 국방 부문에만 한정됐던 인사권 행사 범위를 전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정 전반을 군이 담당해 오던 것을 본래 당적 영도로 회귀하는 정책노선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군은 ‘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 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군은 “군사력 및 외교력의 관계는 현금 및 수표 관계와 같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군사력 확보를 담보로 한 대외관계 유지와 영향력 강화에 주력하여 왔다.

북한군은 경제건설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상당수의 군 병력을 대형 건축물, 문화회관, 고속도로, 발전소, 수로 공사, 목장, 양어장 등 각종 경제건설 현장과 위탁영농·어로활동·검문 등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군의 노력 동원 모습

그럼에도 북한은 악순환되는 ‘경제의 군사화’ 현상으로 국가 경제의 군사경제 구조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의 군사화 현상은 스탈린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난 공격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나, 현재 북한사회에서 전형적인 경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군사화’는 북한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첫째, 군사비 충당을 위해 국민 부담이 증대한다. 둘째, 국민경제의 군사 의존도 심화로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왜곡은 물론 민수자원 공급이 위축된다. 셋째, 민간설비의 신설과 합리적 투자를 저해한다. 넷째,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기풍 강요로 자유롭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질서 형성을 저해한다. 결국 북한경제를 파탄 상

태로 이끌어가는 ‘경제의 군사화’ 현상은 군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선군정치체제의 향후 존망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²⁵⁾

3. 조직과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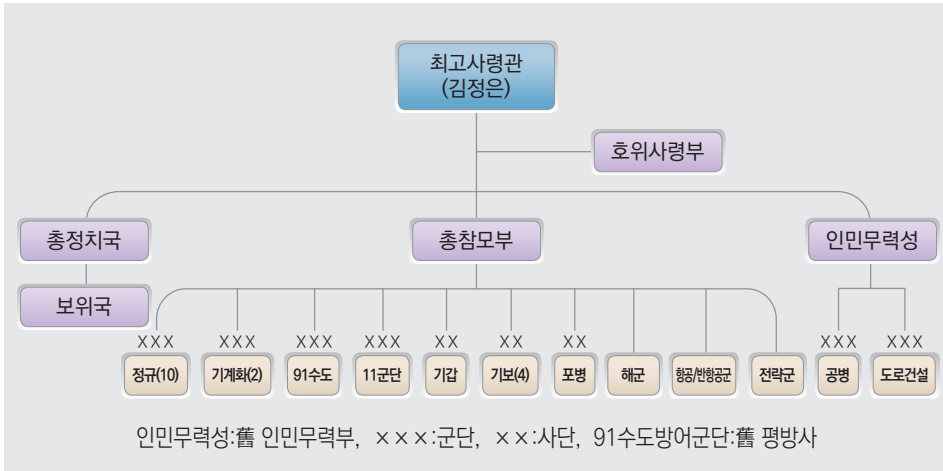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성, 군 총정치국, 군 총참모부, 국무위원회(前 국방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 채택 시 신설된 이래,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헌법 개정 시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998년 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그리고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 기관으로 국방위원회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했다. 그 후 2016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북한의 최고정책지도기관은 국무위원회다. 국무위원회는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서 전반적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바, 1948년 정권 수립시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하여 군 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고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現 국무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았다. 현재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장으로 무력 일체를 장악·감시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 과거 중국은 산업의 생산성을 중시하여 ‘경제의 군사화’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민수품 생산 비중을 높여 군수공장을 민수공장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23.

IV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군 최고사령관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등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하고 호위사령부에도 직접 지시를 내린다. 호위사령부는 김정은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주요 시설 경비 임무 등을 맡고 있다. 보위국은 총정치국의 지도로 반체제 세력을 단속하는 군 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2) 병역 제도와 병영생활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였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입영대상자 부족으로 더욱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 가운데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가운데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 복무

자 등) 등은 입대할 수 없다.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 요원, 예술·교육 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 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는 정책상 이유로 입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북한의 군 복무 연한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5~8년 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 복무 연한제’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남자는 12년, 여성은 7년동안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 등) 병력은 13년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²⁶⁾

부대에 따라 10~30% 비율을 차지하는 여군은 대개 수송·행정 부서에 배치되거나 위생병·통신병·초병(교량, 터널) 또는 해안포·고사총·소형 고사포대에서도 근무한다.

군관이나 하전사를 불문하고 군기 사고자는 제대 후 직장 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병영 생활에서 기본으로 지켜야 할 복무 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²⁷⁾이 있다.



북한 여군 포병의 훈련 장면

북한군 총정치국에서는 군내 통솔과 단합을 위해 각종 운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대급에서는 ‘3대혁명 붉은기중대 쟁취운동’, 연대급으로는 ‘오중흡 제7연대 쟁취운동’, 사단·여단급으로는 ‘금성천위부대 쟁취운동’이

26) 북한의 인민군 복무 기간은 내각 결정 제148호로 정하였지만 이 규정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정책 결정 및 인민무력성의 방침에 따른다.

27)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은 ① 군사 규정 철저히 준수 ② 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③ 군사 명령의 철저히 집행 ④ 당 및 정치 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 국가 기밀, 군사 기밀, 당 조직 비밀 엄격 유지 ⑥ 사회주의식 법과 질서 철저히 준수 ⑦ 어김없는 군사정치 훈련 참여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 금지 ⑨ 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 노력 ⑩ 군대 안의 일치단결, 미풍 확립 등이다.

있다. 판정 결과가 양호하면 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 공급이 우선으로 이루어진다.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 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 부모 사망 또는 부대 내 물자 구입 목적으로 10일 정도 휴가 또는 출장이 주어질 뿐이다. 군 복무 기간에 부모가 있는 집을 다녀온 병사는 약 20%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군 병사들은 주요 특수부대를 제외하고 평균 군 복무 기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건설, 영농 등 비군사 노동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한편 부대 급식을 살펴보면 주식은 보급되고 있으나 부식은 구매 또는 부대 자체로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농, 어로, 채취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1일 세끼 쌀밥에 야채, 절임 등 반찬 2~3가지가 기본이었으나 1990년대 접어들면서 사단별로 임시 보양소를 운영할 정도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외부 지원의 영향으로 부대의 급식 상태는 2000년 이후부터 다소 나아졌으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중단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군인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독립 소대부터 여단 본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대가 염소와 돼지 등 가축을 직접 사육하고 콩은 모든 부대에서 경작하고 있다.

부대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연대 군의소(군의관 8~10명, 여군 간호병 10여 명),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때는 사단 군의소(군의관 20~25명, 여군 간호병 50여 명), 15일 이상~6개월 정도의 장기 치료나 수술환자는 종합병원 성격의 군단 야전병원(군의관 60~70명, 여군 간호병 포함 민간인 여성 간호원 130명 정도)으로 각각 후송 되거나 감정제대²⁸⁾하게 된다. 입원 환자 중 영양실조에 의한 환자가 절반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7.1경제관리개선조치'(2002.7.1.)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

28) 북한군은 1995년부터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부양자가 없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제대'(의가사 제대)를 시키고 있다.

화별이, 영리활동, 근로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은 부수입이 많아 경제사정이 다소 나은 국가보위성 예하 국경경비대 배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생필품과 부식 보급이 열악하여 일부 군인들의 일탈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군민(軍民)관계를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군의 민간에 대한 부담과 각종 폐해 일소를 위해 군민관계 훼손시 엄중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계급 구조와 당 조직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로 불리며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 8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 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② 장성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③ 상급군관에 대좌, 상좌, 중좌, 소좌 ④ 하급군관에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우리의 부사관과 병사를 아우르는 ‘군사칭호’로서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군 장성급 계급 서열은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순으로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을 대원수로 추대하면서 7계급 구조로 되었다. 김정일도 사망(2011.12.17.) 후 2012년 2월 14일 대원수로 추대되었다. 현재 북한 김정은은 2012년 7월 17일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다.²⁹⁾

한편 북한군 내 모든 각급 부대에는 군사 계통의 참모부, 정치 계통의 정치부, 보위 계통의 보위부가 각각 존재하고 있다. 각급 단위에는 당 조직이 구성되어

29)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은이 ‘차수’ 계급을 건너뛰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승진했다.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공화국 원수’를 거쳐 ‘대원수’ 칭호를 받은 전례가 있으며,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준다는 결정은 노동당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나왔다.

북한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기능 행사를 의미한다. 북한군 내 중앙에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있고 연대급 이상은 ‘당위원회’, 중·소대 단위에 ‘당세포’ 및 ‘당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당위원회와 별도로 군 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해 놓은 가운데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표 4-2] 북한군 주요 양성 과정

구분	양성 과정	비고
징집 대상	군사동원부 차출 (특수부대 우선, 해·공군, 지상군 보병 순)	특수부대, 특과 우선
훈련병	각 부대 신병교육대 (일반 3개월~특수부대 9개월)	
병사	전사→초급병사→중급병사→상급병사	
하사관	하사관학교(3개월) 하사→중사→상사→특무상사(사관장)	병사로 3-5년 근무후 성분·자질이 우수한 자를 선발
소위	군관학교 2년(지휘자반: 최우등 시 중위 임명) 군사대학 4년(대학반: 중위)	군관학교 정치·군사 교육은 5:5 군사대학 정치·군사 교육은 3:7
중위	소위 복무 2~3년 경과 후 진급	
중대장	중위 복무 4~6년 경과 후 지휘관	
대대장	3~7년 경과 후 김일성군사종합대학(3년) 졸업	
연대장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전술연구반(2년) 수료	장성은 명령만으로 진급

* 국방부 등 유관 기관 자료 종합

이와 같이 정치기관들은 각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소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각각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 업무와 군대 내 정치 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정치위원은 군내 정치조직과 별개로 당 비서국에서 직접 통제·관여하고 있다. 북한군 일반 사병들은 약 20%, 특수부대는 약 40%가 각각 당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군 내 부대 단위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다. 이는 각급 당 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아래 비당원을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

다. 군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병일치(官兵一致)³⁰⁾, 상하일치(上下一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 내 이와 같이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 조직을 갖추고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군이 전시 국가관리 체제에서 영토 및 체제 수호 임무를 넘어 최고통치자와 당의 군대로서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30) 관병일치(官兵一致)는 군관과 사병과의 화합 강조를 의미한다.

제2절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1. 정책 기초

북한의 군사정책 기초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천명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 총동원 태세 견지이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4대 군사노선 기초는 유지한 채 북한군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 즉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³¹⁾

중·소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 원칙을 주창하기 시작한 것은 쿠바 사태와 중·소 이념 분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62년 1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결의하였다.³²⁾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4대 군사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쏠 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용성 같은 방위 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

31) 김정은은 2014.11.5. 보도된 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군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2월 김정은 공개활동과 2015.1.1. 신년사에서 ‘군력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이 강조된 바 있다.

32) 「김일성저작집 28」, p.534.

었다.”³³⁾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북한 군사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은 <표 4-3>과 같다.

[표 4-3] 북한 군사 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 방향

구분	내 용	비 고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건설과 군사 건설의 병진 전당·전인민의 전쟁 동원태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 의존 정책에서 탈피 1969년 특수 8군단 창설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형 군사공업 기지 완성으로 신기원의 자위력 육성 정규·비정규, 소부대·대부대 배합 전술 위주 교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독자 수행 능력 향상 휴전선에 남침용 땅굴 건설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투 동원태세 완비 예비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현대전 능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위부 설치 스커드 미사일 개발 및 배치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민일치 강화 전국가·전인민 방위 체계 강화 전략무기 독자 체계 구축 선군정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중시, 군대원호 기풍진작 노동미사일 개발·배치 및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방사포 등 장사포도 전방 배치
2000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공업의 선차적 역량 집중 ‘선군사상’ 헌법 추가 ‘핵보유국’ 헌법 명문화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차례 핵실험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대포동 2호(2006년) 등 수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2016.4.23. 1차 발사, 2016.8.24. 2차 발사 등

1990년대 들어 김정일은 동유럽 사회주의 공산권의 몰락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군대는 인민, 국가, 당’이라는 ‘군 중시사상’을 내세우며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전군을 주체사상화할 데 대한 군 건설노선’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 무기 중점 개발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비대칭 전력 우위 확보를

33) 「조선중앙연감」, 1963, pp.157. - 163.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보유국’을 명문화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재확인했다.

2. 군사전략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 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 공격과 전·후방 동시 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한 기동화부대로 하여금 고속으로 중심(縱深) 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 이전에 남한 지역 전체를 장악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 증강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전·후방 동시 공격 능력, 고속 중심 공격 능력, 선제 기습 타격 능력의 제고에 주력했다. 1980년대 말에는 이미 군사력의 전진 배치, 기계화 군단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 확보, 장거리포 추가 전진 배치 등 2~3개월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무기 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속전속결 공세형 군사전략,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 과시,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WMD)로서의 비대칭 억지 전략을 병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대 군사노선을 토대로 하는 선제 기습 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 기습 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 기습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 잠재력 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이 전략으로 군인 수가 북한 전체 인구나 비슷하고, 경제력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수십 배가 되는 남한의 수도권을 조기 탈취하려는 제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평

양-원산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다수를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증강하고, 수습 곳의 비행 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 장비의 집중 및 전진 배치 동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 기습 전략을 여전히 군사 기본 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기 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 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 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 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북한이 속전속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시 산업구조가 전시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인력·물자가 본격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전략 중 특징적인 것은 배합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붙들어 두고 후방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주민 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 공세를 취한다는 전략이다. 이 배합전략은 중국 마오쩌둥의 유격 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1960년대에 이르러 6.25전쟁 경험을 응용하여 현대전과 혁명전의 배합이라는 기본 전략전술을 설정하였다. 핵심 내용은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여 명의 비정규전 능력을 갖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 훈련모습

[표 4-4] 북한 특수부대의 임무

구분	임무
공통	목표물 습격 파괴, 후방 교란, 테러, 통신·미사일기지·비행장 등 주요 전략·전술 거점 무력화
저격 여단	주 전선 돌파, 82mm 박격포 및 방사포로 전략 목표물 타격, 국군 위장 침투 교란, 조직 구축
해상 저격 여단	함선·레이더기지·보급기지 기습, 유격전, 고속보트·공기부양정 보유
공군 저격 여단	공군기지 장비·시설 타격
항공 저격 여단	병참 시설 파괴, 증원 차단, 거점 확보
군단 정찰 대대	밀로 개척, 납치, 정찰, 폭파
경보병 여단	핵심 지역 장악, 지휘소 습격, 대부대 지원 6개 대대 6개 중대 편성(120명) 60mm 박격포, 휴대용 미사일 보유

* 국방부 등 유관기관 자료 종합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이론상으로 한반도 지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전의 교리나 현실 능력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군사력으로 도발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전쟁 지속 역량을 고려할 때 결코 북한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전쟁의 승패에는 병력 수, 사상교육과 지형만이 고려 요소가 아니라 전장 종합 환경, 병력의 교육 수준, 무기의 질, 과학·기술 수준, 불확실성, 예측하기 어려운 마찰, 우발 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계속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북한은 사이버부대 창설 및 평시 대남 사이버 도발 등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화력·기술력 열세 만회를 위해 제4세대 전쟁³⁴⁾ 방식을 준비하는 징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국방분야의 과학자들을 양성하면서 제2자연과학원이라는 기관까지 만들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화학무기, 재래식 무기까지 연구 개발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을 시찰하는 등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이 연구·제작한 발명품, 창안품들을 전시해 놓고 군사과학기술을 현대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의 전투성능 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이 최신 군사과학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검증·확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북한의 '국방과학기술 중시정책'의 결과라고 선전한다.

34) 윌리엄 린드(W. Lind)에 의하면 '제4세대 전쟁'이란 강대국에 대한 약자(중소국가, 테러집단 등)의 비정규·비대칭 전쟁을 의미한다.

제3절 북한의 군사력

1. 상비전력 및 장비

2014년 10월 기준 북한의 상비전력은 육군 11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등 총 128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총 병력 63만여 명의 2배 규모다.

지상군

북한의 지상군은 국방위원회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전·후방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舊 경보교도지도국),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 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방 지역에는 4개 군단 산하 기존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고 별도로 각각 1개의 경보병 사단을 신편하였고, 지상군 전력의 약 70%가 평양-원산 이남의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이는 강습돌파(強襲突破) 위주의 전격전 개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서울이 근접거리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모습

[표 4-5] 남북 군사력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병력 (평시)	계	63만여 명	128만여 명	
	육군	49만여 명	110만여 명	
	해군	7만여 명	6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전략군	-	1만여 명	
주요 전력	부대	군단(급)	12개(특전사 포함)	17개
		사단	43개(해병대 포함)	82개
		기동여단	15개(해병대 포함)	74개(교도여단 미포함)
	육군	전차	2,400여 대(해병대 포함)	4,300여 대
		장갑차	2,700여 대(해병대 포함)	2,500여 대
	장비	야포	5,700여 문(해병대 포함)	8,600여 문
		다연장·방사포	20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200여 기	발사대 100여 기(전략군)
		전투함정	110여 척	430여 척
	해군	수상 함정	상륙함정	10여 척
기뢰전 함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10여 대	810여 대	
	감시통제기	6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	50여 대	330여 대	
	훈련기	180여 대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690여 대	290여 대	
예비전력 (병력)		310만여 명 (예비군,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62만여 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236.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북한군 야포 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하고 산출

공격시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성 예하 예비 부대를 대부분 기동화·기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기존 진지의 몇 배 규모나 되는 위장진지 및 모의 장비, 전방 전개 지역에 공격 시 이용할 대량의 갱도 진지 등은 추가 준비나 부대의 재배치를 하지 않아도 기습 공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 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 장비 가운데 전차는 주력인 T계열 신형 전차(T-62/72 등)가 주종을 이루며, T-54/55 전차는 폐기시키면서도 일부 구형 전차와 경전차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차 보유 대수는 4,300여 대이며, 이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2,400여 대의 1.8배 수준이다. 한국이 성능이 다소 우수한 전차와 대전차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전장종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전차 4,300여 대	장갑차 2,500여 대	야포 8,600여 문	방사포 5,500여 문	300밀리방사포 10여 문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24.

해군

북한 해군은 총 820여 척의 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60%가 전방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30여 척이다. 또 고속상륙정 90여 척과 공기부양정 130여 척 등 상륙함정이 250여 척, 잠수함(정)이 70여 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 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 함대로 분할되어 있어 분리 운영이 불가피한 약점이 있다. 또 소형 함정이 많아 기상 악화시 기동성이 떨어지고

먼 바다에서의 해상 작전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의 어뢰정·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 소형 잠수정 보유와 전진 배치로 장사정 해안포와 함께 전방 접적 해역에서 대지·대함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한편 북한 해군은 공기부양정과 고속 상륙정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 장비는 40~52 노트 이상의 고속 기동 능력이 있어서 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 해군 전력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2개 함대와 13개 전대, 2개 해상 저격 여단, 40여 개 기지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³⁵⁾ 이와 같이 잠수함 전력, 신형 어뢰, 수뢰 등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서 천안함 폭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측 해군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군 해군의 훈련 장면



전투함정 43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	---------------	----------------	---------------------	---------------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25.

공군

북한 공군은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

35) 「중앙통신」, 2016년 8월 24일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으로는 전투임무기 81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헬기 29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는 전투 임무 기종의 약 40%를 전진 배치하여 기습 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N-2기 및 헬기를 이용해 저공 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가운데 1950년대 생산된 MIG-15/17기는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용이하여 가동률이 높아 전장 중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 요격 및 대지 공격 등에 운용될 수 있다. 이 밖에 20여 개의 작전 기지와 예비 기지를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지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IV

				
전투임무기 81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AN-2 포함) 33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헬기 290여 대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26.

사이버전 등

북한군은 이라크 전쟁(2003년)을 계기로 사이버전 대비 해커 전문가 양성, 경보병 부대 증편, 야간·산악·시가전 훈련 등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전자전과 정밀 유도무기 회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자·전파 교란 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4년 3월 소형무인기의 불법 침투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GPS교란·정보체계 공격 등 전자전 및 사이버 위협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은 주요 국가기반 체계 공격 등 사이버전 수행을 통해 남한 내부의 심리적·물리적 혼란과 마비를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을 목표로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재래식 무기의 성능

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2. 예비전력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全民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62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을 연간 1회 이상 각각 15~30일 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띠는 노농적위대, 1963년 노농적위대 병력 가운데 제대군인을 주축으로 한 교도대를 각각 조직하였다.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現 고급중학교) 군사 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교도대는 북한의 예비전력에서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 남성과 미혼 여성 지원자(17~30세)를 대상으로 행정 단위와 직장 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의 경우 대학생이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학년 중 6개월을 정규군과 동등하게 이수하면 소위 계급이 부여된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와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며 연간 500시간 고강도 훈련, 부대편성, 장비보유 등 현역 못지 않은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전쟁 발발 즉시 동원되어 후방 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되며 교도대의 총 병력은 60만여 명이다.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 이후 노농적위대를 노농적위군으로 개칭함으로써 현역에 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는 17세 이상 60세까지 동원 가능한 남성, 17세 이상 30세까지 여성 가운데 교도대 비편성자를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 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 시설 경계, 지역 및 대공 방어를 기본 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며 훈련 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570만여 명이다.

[표 4-6] 북한의 예비전력

구분	규모	비고
교도대	60만여 명	전투 동원 대상 - 남자: 17~50세, 미혼 여성: 17~30세
노농적위군	570만여 명	향토 예비군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32만여 명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 등
계	762만여 명	

* 「2016 국방백서」, 국방부, p.27.

IV

북한 의 군사 전략 과 군사 력

붉은청년근위대는 고급중학교 남녀 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 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1970년 김일성의 지시로 창설된 학생군사조직을 말한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총 160시간 교내 훈련을 받고, 방학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사격훈련까지 받는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보위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 역할을 한다. 유사시 군 하급 간부 전투력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으며, 연간 450시간(과거 27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약 100만여 명이며 인원과 훈련 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기타 준군사 부대로는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군수동원지도국, 경제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약 32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 병력이 있는데, 이들은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이 가능하다.

3. 전략무기 개발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무기 개발로 대외적으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016년까지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이는 국제 사회에 심각한 불안 요인을 야기하여 국제사회의 비난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다섯 차례 핵실험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 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핵무기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 핵 연구소인 ‘두브나 핵 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였다. 북한의 핵 관련 전문 인력은 고급인력 200여 명을 포함 하여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북한 지역에 매장된 우라늄 가 채량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1980년대 접어들면서 핵개발에 경제력을 집중하고 있다.³⁷⁾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는 <표 4-7>과 같다.

2016년 9월 5차 핵실험 강행은 ‘핵개발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기술적 진전을 통해 핵위력 증명 및 과시차원에서 보여준 것으로 북한의 ‘소형화·경량화·다중화 달성’ 주장은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여기에 탑재·투발 가능한 핵탄두 실 전능력을 조기 확보했음을 강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핵능력 고도화에 기존 2~3년이 소요됐던 때와 달리 1년 이내에도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36)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 국방부, 2004, p.54.

37)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 2001, p.95.

[표 4-7] 북한의 핵개발 주요일지

일자	주요 내용
1985.12.12.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1991.12.3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3.3.12.	NPT 탈퇴 선언
1994.10.21.	미·북 '제네바 합의' 체결
1994.11.1.	핵활동 동결 선언
19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2002.10.3.	켈리 미 국무부차관보 방북
2002.12.12.	핵 동결 해제 발표
2005.2.10.	핵무기보유 선언
2003.8.27.	제1차 6자회담 개최
2005.5.11.	영변 5Kw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발표
2005.9.19.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9.19공동성명 채택
2006.10.9.	1차 핵실험 실시
2007.2.13.	6자회담에서 영변 원자로 폐쇄 및 불능화 합의
2007.7.15.	영변 원자로 폐쇄
2007.10.3.	6자회담에서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합의
2008.6.27.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발
2008.9.24.	영변 원자로 봉인 해제
2009.5.25.	2차 핵실험 실시
2009.11.3.	사용후 폐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선언
2013.2.12.	3차 핵실험 실시
2013.4.2.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2016.1.6.	4차 핵실험 실시, 조중TV '첫 수소탄 시험 성공적 진행' 발표
2016.9.9.	5차 핵실험 실시

북한은 1980년대에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했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핵능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1차 핵실험에서 폭발 시험, 2차에서는 위력 개선, 3차에서는 소형화와 경량화, 4차에서는 수소폭탄,³⁸⁾ 5차에서는 핵탄두의 위력 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미사일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SCUD-B와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후 1990년대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작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괌 등도 사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고,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 만에 발사 가능한 이동식 신형 단거리 지대지 유도탄(KN-02)을 시험 발사하였다.³⁹⁾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재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고⁴⁰⁾ 2012년 4월 13일 외국의 주요 언론인을 초청한 가운데 ‘은하 3호’를 발사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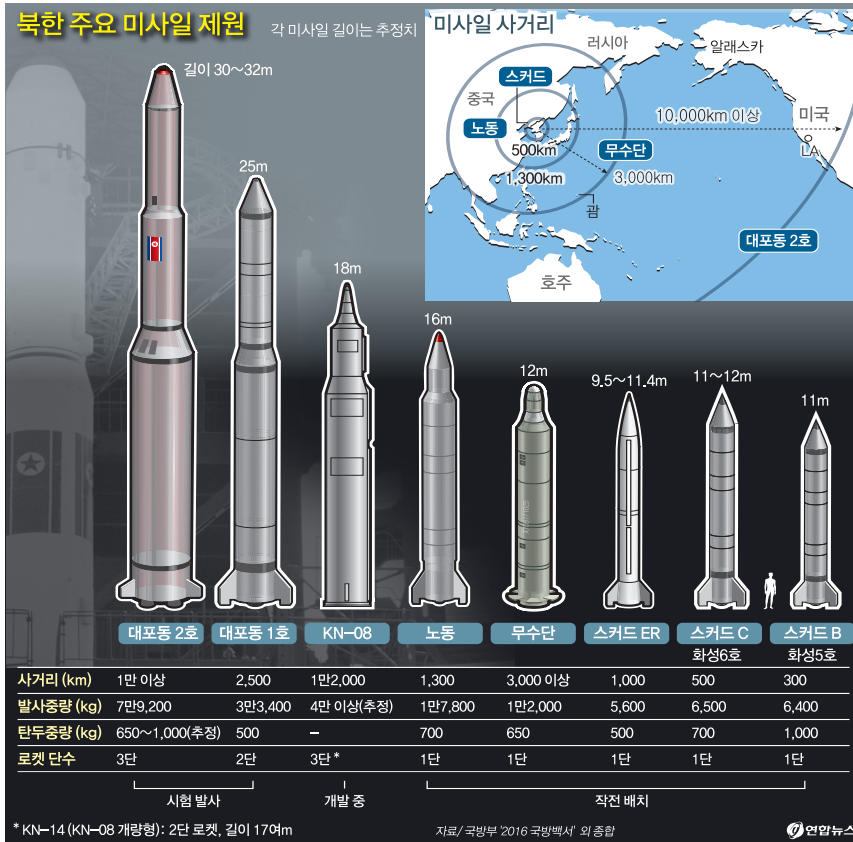
38) 북한은 2016.1.6. ‘시험용 수소탄’을 가지고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지진 규모(4.8~5.2)로 볼 때 이 ‘시험용 수소탄’은 수소폭탄에는 못 미치는 ‘증폭핵분열탄(또는 증폭핵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9) 미국의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톤 수석연구원은 2008년 2월 3일 미국 육군대학원 전략연구소(SSI) 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자금자족 단계에 이르렀으나 고급 기술과 부품은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40) 유엔안보리는 2009년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자산동결 등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으나 다시 실패했다.

[표 4-8] 북한의 미사일 제원⁴¹⁾



반중빈 기자 20170111 페이스북 tunej.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제공: 연합뉴스

그러나 2012년 12월 12일 평북 동창리에서 ‘은하 3호’를 발사해 1만km로 추정되는 운반 능력을 보여 주었고,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해 1만2천 km로 추정되는 장거리 운반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위협적인 것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이외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3년 SLBM 개발 정황이 포착된 이래 2015년에 4회의 사출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2016년에도

41)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급기술은 파키스탄, 이란 등 국가와의 협조와 중국·소련으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 4차례의 사출시험 및 시험발사(3.16., 4.23., 7.9., 8.24.) 등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 체제 결속과 군사강국, 대외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생무기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화생무기가 핵 문제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대량살상무기(WMD)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 요인이다.

북한은 자강도·함경남도에 화학무기 개발·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양·평안남도·황해북도 등지에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학무기는 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 등 유독가스 17종 2,500~5,000여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물무기는 콜레라, 탄저균, 천연두 등의 자체 배양 능력을 보유하고 정주·문천 지역에 생물무기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4절 대외 군사관계

1. 대외 군사관계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는 1948년 이후 중국과 소련을 양대축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김일성은 1961년 7월 6일 소련을 방문하여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북·소 조약’), 7월 11일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북·중 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북·중 조약’은 체결 일방이 개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소 조약’의 경우, 소련 붕괴 직후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가 방북하여 자동개입 조항 제1조(피침 시 군사 등 즉각 지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1995년 9월 7일 이 조약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다. 당초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었다. 조약 체결 일방이 시한 만료 1년 전에 해약 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효력은 1996년 9월 10일 이후 상실되었다.

199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개입 및 지원’ 보다는 러시아와 몽골, 베트남 간 우호관계 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북한은 군사외교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1971년 8월에 체결한 군사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3회 군사대표단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200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츠하오펜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였고, 환영식에 당·정·군 간부들이 모두 참가한 것은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일행 환영행사에는 군 간부들만 참가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북한은 2003년 4월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 5월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핵 관련 입장을 교환하고 북·중 군사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6년 1월 김정일이 군 원로들을 대동하고 중국의 광저우 등 산업지역 시찰 및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4월 차오강찬 중국 국방부장 일행이 방북하여 군사 분야의 친선 협조관계 발전에 합의하였다.

2008년 12월 12일 양광례 중국 국방부장은 북한의 대외사업 담당자들과 만나 양국 군대 간 상호교류와 협조 강화를 강조하였다. 2011년 8월 북·중 조약 체결 50주년에 즈음하여 전창복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양측의 군사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그 밖에 2001년 5월 북한 공군대표단의 파키스탄 항공단지 시찰을 비롯해 6월 고위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방위산업 협력 문제를 논의하였다. 2008년 7월 북한 군사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여 농업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나누었으며, 2012년 5월 리영호 총참모장 등 고위군사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9월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 군사 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으며, 2013년 4월 아프리카, 6월 쿠바를 각각 방문하였다.

북한이 동남아·중동·아프리카·중미 지역과의 군사관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비동맹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 목적 뿐만 아니라 무기판매, 군사기술 지원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란 및 시리아 등 아랍 국가와 군사 협력을 지속해 왔고, 특히 이란에 핵과 미사일 기술자를 파견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은 군사부문을 대외적으로 활용하여 체제 유지와 대외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경제 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이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체제 유지 보장 및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 및 테러문제와 같은 군사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며, 군사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는 한 북·미 간 협상과정에서 북한군의 관여와 영향력 행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군의 역할 및 영향력 증대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체제안정을 확보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IV

2. 대남도발과 군사회담

대남도발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려 3,040회에 이르는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하였다.⁴²⁾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북한이 자행한 대남 군사 공격과 침투·도발 행위는 남북관계에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 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 왔다. 동시에 ‘공산주의 화전양면(共產主義 和戰兩面)’이라는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의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으로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노선에 따라 지난 60여 년 동안 통일전선전술과 병행하여 왔다. 아울러 주목할 것은 북한이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를 대할 때도 군사력을 통한 공격과 침투 등의 도발을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로운 대화와 제도의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의도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발, 폭력, 테러와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의 ‘비상식 행

42) 「2014 국방백서」, 국방부, p.251.

등'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 변화와 양보를 얻어 내기도 하였다. 혹은 이와 반대의 순서, 즉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대화 및 협력과 같은 '평화 제스처'와 '위장평화 공세'를 선행한 후 군사력과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보면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은 한국에 행한 각종 대남 공작과 침투 도발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가장 대표되는 사례는 북한의 6.25 남침이다. 북한은 한국에 평화 협상을 제의하고 기갑부대와 포병, 20여 만 명의 보병을 동원하여 휴일 새벽에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로 남침용 땅굴을 건설한 사례(1972년)와 '3자회담'을 제의하고 아웅산 폭탄테러(1983년)를 감행한 전력도 모두 상기에 언급한 양면 전략에 속한다.

2000년대를 전후로 북한은 남북경협과 대북 경제지원이 진행되는 시점에도 잠수정 침투 사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였다. 한·일 월드컵이 절정인 시기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해상 공격을 벌인 제2차 연평해전(2002년), 쌀·시멘트 등 대북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 재개되던 중 발발한 '천안함 폭침 사건'(2010.3.),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자행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11.) 등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폭침 후 인양된 천안함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파괴된 민가

특히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포탄 공격이며 해병대원과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처럼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자 우리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후 '5.24 대북조치'를 통해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또한 NLL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임을 북한에 각인시키고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한편 2014년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2014.3.26.)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의장명의로 '구두 언론 성명'(2014.3.27.)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론짓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동해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안 백령도 NLL 남쪽 지역에 해안포 및 방사포 포격도발을 하였으며, 우리 군은 즉각 대응사격을 가하였다.

IV

군사회담

군사회담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남북 군당국자간 회담이다.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정점으로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남북군사실무회담(대령급)으로 연결되는 체계로 구축된다.

군사회담의 의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상호 자극적인 활동 자제, 상호비방 중지 등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 추진함으로써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간에는 군사분야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대화와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3회 개최되었으며, 2004년 6월 3~4일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이로써 쌍방의 함정이 대치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상대측에 부당한 물리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도 제거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우리측이 서해 해상 충돌 방지와 공동 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북한 측이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을 주장함에 따라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다. 그 후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12.12.~14.)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2000년 이후 남북 군사회담에서 12건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2011년 2월 개최된 제39차 남북군사 실무회담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 회담 개최 절차 문제를 협의하고자 했으나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다.

그간 회담에서 북측은 교류협력 지원 관련 군사회담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왔으며, 장성급회담이 개최되어 긴장완화·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의 논의를 위한 협의의 장은 마련했으나, 북측의 해상분계선 재설정 등 근본문제 해결 주장으로 실질적 합의 도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11.2.8.~9.)

V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

제1절 경제체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조

제2절 부문별 현황

제3절 경제정책의 변화



Key

Point

01

북한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인민적 소유중심)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02

북한은 초기부터 자력갱생 노선, 중공업 우선 노선,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초로 삼고 사회주의식 공업화를 추진해 왔다. 이들 정책기조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 건설, 김정은 시대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으로 각각 계승되고 있다.

03

북한경제는 1990년대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겪은 후 2000년대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열악한 기초 인프라, 전력난의 지속, 해외자본 도입의 곤란 등으로 군수산업 연관 산업부문만 부분적으로 산업연관관계가 복구되었을 뿐, 전반적으로 1980년대 후반 수준의 산업생산력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04

1990년대 계획경제 시스템의 전반적 동요는 자생적인 시장화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를 초래하고,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경제구조의 이원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시장에 대한 통제·목인을 반복한 김정일 정권과 달리, 병진노선 기조 하에 시장활용 정책 및 경제개발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병진노선에 따른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심화시켰으며 이로인해 북한 경제체제의 노선이 더욱 확대되고, 적극적인 개혁·개방 추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제1절 경제체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초

1.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제이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항공·운수·통신·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서, 토지·농기계·배·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는 협동농장이 전형을 이룬다.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제 위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 형태이므로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간다.”고 헌법(제23조)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소유제도는, 협동적 소유 비중이 20%~40%이었던 구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협동적 소유 형태의 비중이 아주 낮고

전 인민적 소유 위주로 구성되어 온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³⁾ 게다가 북한의 협동적 소유 형태는 철저하게 중앙집중적인 계획적 관리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인민적 소유 형태와 다를 바 없는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주의 소유제도 하에서 사유의 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에 한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계획기능 마비 현상을 반영해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소유 및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소토지 경작물, 상설 종합시장에서 장사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 발명과 같은 지식 재산으로 얻은 수입 등도 개인소유 대상으로 공식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의 확대일 뿐 북한은 최근까지 제도적으로 엄격한 국가소유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엄격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경제난 이후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확대되면서 점점 이완되고 있는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장사나 각종의 개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화폐적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공장·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를 제도적으로 결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국가주택 이용 허가증’(입사증)을 뇌물을 주고 관할기관에 명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사적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의 사적 소유화 현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경제난 도래 이후 더 이상 과거처럼 엄격한 중앙집중적 계획적 관리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재정의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화 체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부터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

43) 1964년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전인민적 소유형태 91.2%, 협동적 소유형태 8.8%로 조사되고 있다.

요 경제지표들(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의 경제지표)만 중앙의 국가 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경제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는 변형된 계획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⁴⁴⁾

북한의 계획당국은 전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단위들에 계획지표로서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경제단위들은 본래의 생산활동 목적과 상관없이 ‘액상지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되므로, 시장을 활용해 금액지표를 달성하는 현상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즉 공장·기업소들이 형식적으로는 국가계획을 수행한다는 합법적 명분을 내세워 시장을 활용한 불법적 경제활동을 행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가납부금을 납부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현실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어 있어, 제도와 현실 경제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정책의 기초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을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3대 경제건설 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내세웠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등을 3대 경제정책의 기초로 삼고 북한 특유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했었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44)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p.183.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건설 노선”⁴⁵⁾으로서, 북한경제의 대외 경제관계를 최소화한 정책이었다.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한다.”⁴⁶⁾라는 주장 하에 채택된 노선으로서 경공업보다 중공업 발전을 우선시한 정책이었다.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으로서,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조성하고 북한경제 내에 인민경제 외에 이른바 ‘군경제’를 독립적 경제구조로 정착시킨 정책이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정책기조들을 부분 수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경제 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초로 채택했다. 김정은 정권은 현 시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므로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⁷⁾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시대의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건설노선’을 계승한 것임을 표방하며, 핵무력 강화가 과학기술 발전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추동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핵·미사일 등 개발에 연관된 국방공업 우선 발전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전쟁 역지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보다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이 마치 이전 병진노선들보다 인민생활 향상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45)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208.

46)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715.~716.

47) 『조선중앙통신』, 노동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 전문, 2013년 4월 2일자.



북한의 경제·해무력 건설 관련 선전화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병진노선은 북한경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유지·확대시켜 외부 자본의 유입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경제는 20년 이상 지속된 경제 위기로 '빈곤의 함정'에 처해 있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이다. 김정은 정권이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내부 자원 동원에 의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내부 자원의 동원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병진노선은 국가의 투자 재원 배분에서 민생경제 부문을 배제하여 결국 자생적 시장화 현상을 더욱 확산시키고, 북한경제의 이중구조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2절 부문별 현황

1. 거시적 현황

북한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이며 상세한 경제통계들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왔었다. 그러나 1965년 이후 이러한 체계적·주기적인 경제통계 발표를 중단하고 간헐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유엔의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어 통계적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1991년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일관된 기준하에 북한의 경제력 수준을 파악할 목적으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해 북한의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주요 거시경제 통계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들은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받아 간접적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와 같은 명목통계는 북한의 가격자료 입수가 곤란해 우리나라의 가격·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거시통계는 남북한간 부가가치의 격차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실제 경제력 수준을 파악하는데 다소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 흐름을 일관되게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거시경제 통계치를 통해 북한 거시경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

북한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1990년~1998년 9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총 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이 당시에 다수 공장·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되고 일부 핵심 기간산업 및 군수공장만 겨우 가동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북한의 산업은 군수산업만 제외하고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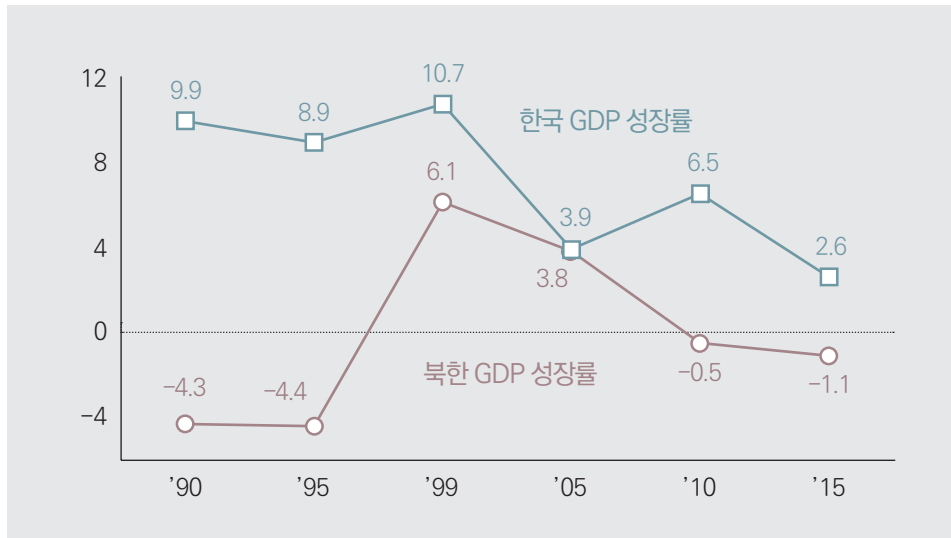
1990년대 북한경제의 위기는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경제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구소련이 사회주의 우호 무역에 의한 석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주요 원자재의 수입 중단·감축은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 산업 부문에서 산업연관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북한경제는 전시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는 급격한 축소재생산을 겪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경제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일단 벗어나고 있지만, 전반적 회복 추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즉 1999년~2005년 7년간 잠시 연평균 약 2.2%의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2006~2010년간 다시 연평균 -0.1%, 2011~2015년간 연평균 0.6%의 성장률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시장활용 정책을 시행해 외관상 다소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 전반은 여전히 정체 상태이다. 2015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약 34.5 조 원(남한 화폐가치 기준)으로서 남한의 약 2.2%(1/45),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39 만원(남한 화폐가치 기준)으로서 남한의 약 4.5%(1/22)에 불과하다. 1990년 남북한 격차는 명목 GNI의 경우 약 11:1, 1인당 GNI의 경우 약 5:1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1]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구분	'90	'95	'98	'99	'02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북한	-4.3	-4.4	-0.9	6.1	1.2	3.8	-1.0	-1.2	3.1	-0.9	-0.5	0.8	1.3	1.1	1.0	-1.1
남한	9.9	8.9	-5.7	10.7	7.4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2.6

자료: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 산업별 성장률과 산업경제 현황

북한의 산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설비 대체투자의 부족, 기술의 낙후 등으로 점진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도 나름 산업연관관계가 유지되는 재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원유도입량이 1980년대 말 대비 약 1/5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북한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원유도입량의 감소가 전력난·원자재난 등을 야기해 중간재 생산의 공급위기를 야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재 제품의 공급축소로 연결되는 산업연관관계의 전반적 단절 현상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다음 <표 5-2>를 보면 1990년대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이 모든 산업부문에서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최악의 시기는 1997년도

로서 광업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8%, 제조업의 성장률은 -18.3%에 이를 정도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후반 당시 북한 제조업의 가동률이 평균 20% 수준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98년 공식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산업연관관계를 복원하는데 역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기술개진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심각하게 노후화된 공장·기업소의 설비들을 폐기 혹은 폐쇄하고,⁴⁸⁾ 그 외의 공장·기업소들은 기술개진 대상, 신설 대상 등으로 분류해 산업을 구조조정 하거나 정비해 나갔다. 그러나 기초 에너지부문 등 핵심 기간산업의 가동률이 아주 낮고 생산력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술개진 정책’은, ‘4대 선행 산업부문’의 정상화라는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는 수준이었다. ‘4대 선행 산업 부문’이란 전력, 석탄, 철도·운송, 금속·기계 산업부문을 의미한다. 김정일 정권 으로서는 외자도입의 곤란과 투자자본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정상화 도모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게다가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정책을 경제정책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군수공업과 연관된 선행산업 부문의 정상화에만 제한적으로 역점을 두었다.

[표 5-2]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90	'92	'94	'97	'99	'00	'02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농림 어업	-10.5	-3.3	2.8	-2.7	9.2	-5.1	4.2	4.1	-2.6	-9.1	8.0	-1.0	-2.1	5.3	3.9	1.9	1.2	-0.8
광업	-5.6	-5.7	-5.2	-15.8	14.2	5.8	-3.8	2.5	1.9	1.5	2.4	-0.9	-0.2	0.9	0.8	2.1	1.6	-2.6
제조업	-3.2	-18.3	-3.9	-18.3	7.9	1.4	-1.5	0.3	0.4	0.7	2.6	-3.0	-0.3	-3.0	1.6	1.1	0.8	-3.4
(경공업)	0.9	-7.6	0.1	-14.2	2.9	6.3	2.7	-0.2	-0.6	-2.2	1.3	-2.1	-1.4	-0.1	4.7	1.4	1.5	-0.8
(중공업)	-4.1	21.3	-5.5	-20.3	10.4	-1.0	-3.9	0.6	1.0	2.2	3.2	-3.5	0.1	-4.2	0.2	1.0	0.5	-4.6
건설업	5.9	-2.4	-26.9	-10.0	24.4	13.5	10.5	0.4	-11.5	-1.5	1.1	0.8	0.3	3.9	-1.6	-1.0	1.4	4.8
서비스업	0.7	0.8	2.3	1.1	-1.7	1.1	-0.2	1.3	1.1	1.7	0.7	0.1	0.2	0.3	0.1	0.3	1.3	0.8

*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48) 대안유리공장 폐쇄(2000년 9월), 남포제련소 인비료 직장 폐쇄(2000년), 사리원카리비료공장 철거(2005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광업·제조업 부문은 1990년대의 극심한 산업 생산력 파괴 상황에서 일단 탈출하지만, 제조업·광업 가동률의 정상화는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 <표 5-2>를 보면 북한 산업의 성장률은 2004년 이후 연평균 1%대와 마이너스 2%대를 3~4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2012년~2014년간 3년 연속 연평균 1%대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5년 다시 -3.4%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0년대 후반 이후 건설업·서비스업 부문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활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3대 세습정권의 단기 업적 쌓기를 위한 건설사업들(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평양시 아파트, 문수 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등)이 다수 추진되고, 시장화 확산으로 인해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부문이 다소 활성화되고 있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광업 부문 등 주력 산업부문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 <표 5-3>에서 보듯이 전력·석탄·철광석·비철금속 등 핵심 기초 원자재 생산력이 1980년대 후반 수준을 아직 복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발전량의 경우 1988년 대비 2015년 현재 68%, 철광석은 47.6%, 비철금속은 16.3%, 강철은 24.2%, 시멘트는 68.2%, 비료는 66.9% 수준의 생산력만 보이고 있다.

[표 5-3] 북한의 주요 기초 원자재 생산 추이

(단위 : 억 kwh, 만 톤)

연도	발전량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1988	279	1,030	47.2	504	978	75
1991	277	816.8	22.7	316.8	516.9	80.4
2010	230	509.3	9.2	127.9	627.9	45.9
2015	190	490.6	7.7	122	667.5	50.2

*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이와 같은 애로 상황이 지속되자 북한은 2000년대 후반 경 이른바 '주체공업'을 내세워, 일부 핵심 산업에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기도 했었다. 주체공업이란, 해외로부터의 원자재·설비나 기술도입 없이 국내생산 원료 및 자체 개발 기술로 철강·비료·섬유 등을 생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이를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하 현재 '주체공업 방식'

의 산업복구 정책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기초에 따라 기존 군수공업 연관 산업의 생산력 유지에 주력하면서 민심확보에 요구되는 일부 경공업 부문 정상화를 시도했다. 2013년 3월 10년만에 제7차 경공업 대회를 개최하고 일부 식료품·의류·신발 등 공장에 신규 및 대체투자를 시행하여, 경공업 분야에서 2012년~2014년 3년간 일시적으로 연평균 2.5%의 플러스 성장세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표 5-2), 그 성과가 끝내 지속되지 못하고 2015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선행 산업부문 및 기초 공업부문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 한, 경공업 부문의 정상화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정권 초기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었던 선행 부문 및 기초 공업의 정상화를 2015년 신년사설 언급 이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이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전반을 놓고 볼 때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 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경제발전이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인정할 정도이다.

북한은 2016년 5월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년~2020년)을 발표하며 기간산업 정상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성취의 우선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의 강화, ‘만리마속도’ 하의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자강력 제일주의’⁴⁹⁾ 돌파하려는 북한 정책의 한계로 인해 그 성과도 출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9) 김정은이 2016년 신년사설을 통해 언급한 북한의 혁명과 건설의 원칙으로 김정은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는 혁명정신”이라고 규정하였다.



기초식품공장



'70일 전투' 관련 선전화

2. 주요 경제부문별 현황

(1) 에너지 부문

1990년대 북한 산업생산력 붕괴는 에너지 공급체계가 단기간내 급격하게 파괴 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김정일 정권 출범과 더불어 산업연관관계 복구와 함께 에너지 공급체계의 정상화에도 역점을 두 었지만 지금까지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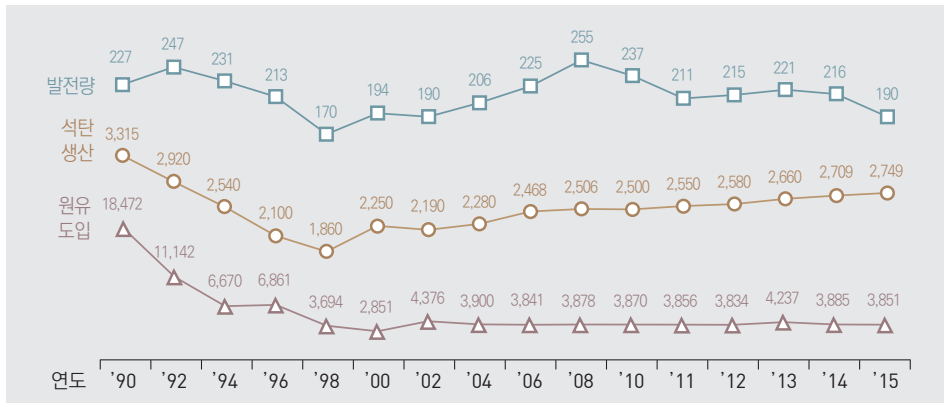
다음 <표 5-4>를 보면, 1990년도와 비교하여 1998년도에 각기 56%, 19.9%, 74.8% 수준으로까지 하락했던, 석탄생산량·원유도입량·발전량이 2015년에는 현재 겨우 83%, 20.8%, 83.7%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에너지 공급 부문이 핵 심 기간산업으로서 막대한 자본투입과 외자유입이 요구되지만, 북한의 악화되는 대외경제환경과 경제난 지속이 1980년대 수준의 에너지 공급체계 복원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경제부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4]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억 kWh, 만 톤, 천 배럴)

구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전량	227	247	231	213	170	194	190	206	225	255	237	211	215	221	216	190
석탄 생산	3,315	2,920	2,540	2,100	1,860	2,250	2,190	2,280	2,468	2,506	2,500	2,550	2,580	2,660	2,709	2,749
원유 도입	18,472	11,142	6,670	6,861	3,694	2,851	4,376	3,900	3,841	3,878	3,870	3,856	3,834	4,237	3,885	3,851

*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전력 생산 부문

북한의 전력 생산 체계는 화력보다는 수력 위주이고, 화력발전은 석탄공업에 기초한 체계로서 1980년대에도 세계적 추세에서 후진적이었다. 전지구적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수력 위주 발전 체계는 불안정한 전력 공급을 초래하고, 석탄에 기초한 화력발전은 급격한 전력설비 노후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발전소들은 1970년대 이후 발전소 현대화와 설비 대체 투자도 사실상 거의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노후화가 심화되어 갔다. 북한 화력발전소들(동평양, 평양, 북창, 청진 등)은 석탄 위주 화력발전소들로서 석탄 생산량이 감소하면 곧이어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타격을 받는 구조였다. 석탄 채굴 증가로 칼로리 함량이 낮은 저칼로리 석탄 사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화력발전소 가동에 착화를 위한 중유 사용도 필수였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생산 부문은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이미 1980년대부터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이 50%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1990년대 전반에 1980년대 말 대비 원유 도입량의 1/5 수준 추락, 석탄 생산량의 50% 이하 감소는 전력 생산부문을 곧바로 붕괴시키고 말았다.

북한은 1990년대 말 이후, 발전량이 평균 11kwh에 불과한 6,80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개 이상의 중·대형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했지만, 후진적 설비와 낙후된 기술, 일정치 않은 강우량으로 인해 실

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수력·화력발전소의 설비 개보수 및 터빈 교체 작업을 추진하며, 원산군민발전소, 희천발전소 3~12호,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등 여전히 많은 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있지만, 속도전식 건설과 후진적인 기술력 등으로 인해 발전량이 설계에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준공 및 발전 설비 개보수 이후에도 재보수를 위해 빈번하게 가동이 중단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많은 노력동원을 통해 건설한 수력발전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5-4〉를 보면 2005년~2010년까지 약 5% 늘어났던 전력 생산량은 2011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2002년 발전량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북한은 전력문제 해결을 2016년 5월 발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김정은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지시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 부문의 정상화 문제는 유엔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전력산업 복구가 어려워지자, 최근 북한에서는 개별 가정, 소규모 서비스 기관·공장 기업소들이 중국으로부터 11W, 50W, 100W 등 소형 태양광 집열판과 축전지·변압기 등을 수입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활경제 차원의 소규모 투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가정용 전자기기·전구 사용, 가내수공업 활동 등에 부분 유용할 뿐, 북한 전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전력산업의 정상화는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투자가 유입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석탄 생산 부문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외화난으로 원유 도입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산업의 정상화는 곧 석탄 생산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석탄을 ‘공업의 식량,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대규모 탄광들은 1990년대 중반경 3년 연속 수해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붕괴되어 있었다. 이에 북한은 1990년대 말경 이후 신규 탄광 개발보다는 소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중소형 탄광 개발에 주력해 석탄산업 정상화를 도모해 왔지만 그 성과는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홍수피해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수해 탄광들이 부분 복구되고, 중국 자본에 의한 설비 투자가 일부 탄광에 이루어지면서 석탄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경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최근 주로 폐갱된 소규모 탄광에 대한 ‘돈주’의 투자도 나타나 석탄 생산량이 다소 늘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석탄이 북한 수출상품의 제1위의 품목으로서, 북한이 2015년 1,963만 톤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을 볼 때(중국 해관 통계),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석탄생산량이 한국은행 발표 생산량인 2,749만 톤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산업 부문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 초기부터 자력갱생발전 노선에 따라 산업 에너지를 석탄 에너지에 의존하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을 취해 왔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석탄 광산은 1980년대에 이미 심부화(深部化)현상⁵⁰⁾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점점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저칼로리의 석탄도 채굴하기에 이르렀다. 석탄 채광의 효율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대규모 탄광을 발굴하거나 첨단장비들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 중반경 핵심 대규모 탄광들마저 대부분 홍수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북한의 석탄 산업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입된 중국 자본의 투자는 새로운 탄광 발굴보다는, 수해 피해 이후 시간이 경과해 생산재개가 용이한 구탄갱들에 일부 설비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석탄을 채굴·수출하는 것으로서, 석탄산업 정상화를 도모한 투자형태는 아니었다.

원유 도입 부문

냉전시대에 구소련은 북한 원유 도입량의 약 80%를 사회주의 우호무역 방식, 즉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구상무역 방식으로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1980년대 말경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약 250만 톤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구소련의 체제전환으로 북한은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으로 원유를 도입해야 하는데 외화 부족으로 원유 도입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50) 매장량 확보를 위해 비교적 채굴이 어려운 지반하부까지 파내려 가는 현상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최근까지 원유 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평균 약 55만 톤 수준을 공급해 왔다. 중국의 이 공급량은 1990년대 중반경 이후 거의 변함없이 유지해 왔는데, 중국은 2015년부터 대북한 원유 공급량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국제사회는 평안북도에 소재한 봉화화학공장이 기존처럼 가동되고 있고, 장마당 유통 석유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중국의 통계 미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대중국 원유 도입량은 유지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을 상업적 방식, 무상원조, 밀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러시아로부터도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증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북한의 원유 도입량은 중국이 발표해 왔던 공급량 이상의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공식 도입량까지 총합해 북한의 원유 도입량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1980년대 수준의 원유 도입량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 낮은 공장 가동률, 주민들의 압도적인 비석유 에너지 사용 실태 등으로 간접 파악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가정의 석유 소비는 2011년 기준 전체 수요량의 약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가정연료는 나무류, 무연탄, 갈탄, 진탄 등 가공되지 않은 석탄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식량 생산 부문

북한의 식량난은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된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 집단영농 생산 방식으로 인한 농업생산력 침체 등으로 1980년대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평균 415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정량배급 기준으로 이미 평균 200여 만 톤의 부족 현상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북한은 1987년부터 1인당 배급량을 평균 700g에서 22%를 감량한 546g만을 배급하였다. 다만 이 당시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등으로 기근 문제가 본격 제기 되지 않았을 뿐이다.

1990년대 들어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및 우호무역이 중단되고, 경제난으로 인한 농업 원자재 생산 급락, 연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생산량이 400만 톤 이하로 급감하면서 심각한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근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1995년~1997년 3년간 식량생산량은 평균 354만 톤에 불과함으로써, 감량배급(1인당 546g/일) 기준으로 식량 부족량이 평균 164만 톤에 이를 정도였다.

[표 5-5]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단위: 만 톤)

연도	'95	'97	'00	'02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식량 수요량	534	530	518	536	548	545	560	543	540	548	546	534	540	543	537	549	550
전년도 생산량	413	369	422	395	425	431	454	448	401	431	411	425	445	484	503	507	480
부족량	121	161	96	141	123	114	106	95	139	117	135	109	95	59	34	42	70

* 농촌진흥청(1995~2010, 1~12월 기준), WFP/FAO(2011~2015, 11월~10월 기준)

* ① 1995~2010년간 식량수요량은 농촌진흥청이 추계한 것으로, 감량배급(성인 1일 546g) 기준으로 계산

② 2011년 이후로는 WFP/FAO가 추계한 것으로, 1일 최소 칼로리 기준량(1인당 458g) 기준으로 계산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양호한 기상 조건, 국제사회의 농업 협력, 자체의 농업 기반 복구 조성 노력(자연흐름식 물길 공사, 토지정리사업) 등에 힘입어 4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회복하고 있다. 2013년~2014년에 500만 톤을 약간 넘는 생산량을 기록하고 2015년도에 다시 480만 톤으로 약 5% 감소를 보였지만, 2013년 이후 480만 톤 이상의 곡물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도의 식량 부족량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70만 톤 수준이지만, 매년 평균 상업적 도입량 30만 톤과 주민들에 의한 소토지 경작 확대, 시장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1990년대의 심각한 기근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식량 생산 해결만을 매년 '주공전선'으로 제기했던 과거와 달리, 농업 외 수산·축산분야도 강조하며 단백질 섭취 문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농업 인프라, 가뭄·홍수 등 기후조건에 대한 취약성, 농업생산 투입요소(비료·농약·종자·농자재 등)의 만성적 부족, 집단농 체제의 유지 등으로 북한의 식량생산은 단기간내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식량문제의 완전 해결을 농업분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면서 주체농법을 부분 수정하고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였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⁵¹⁾라는 개선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집단농 체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불확실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량증산 독려 선전화



북한의 다락밭

(3) 대외무역 부문

냉전시대에 북한경제는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 원유 등 전략물자들의 구소련에 의한 사회주의 우호무역 방식 공급 등에 영향을 받아 대외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북한 내수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생산요소들의 수입을 위해 최소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경제난 이전 북한의 무역액은 1990년 42억 달러가 가장 높은 규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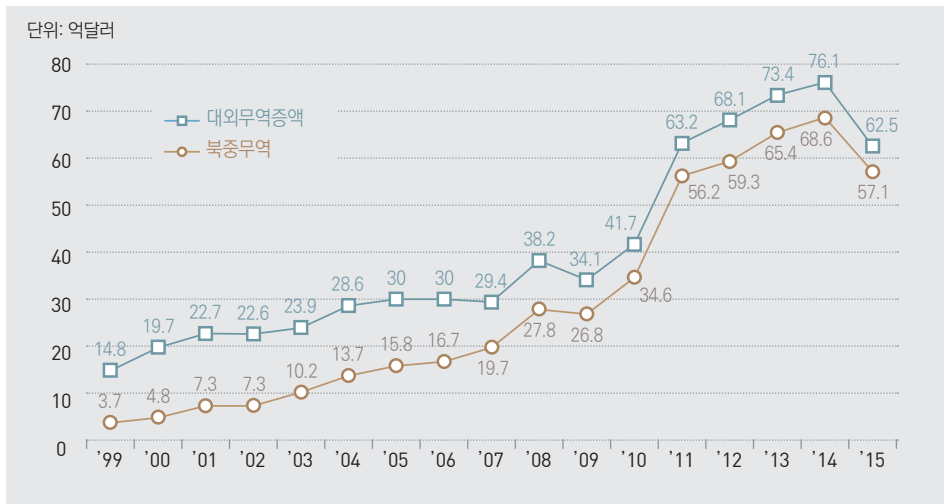
51)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의 기층조직인 분조를 단위로 하여 실시하는 농장 내부의 운영관리 형태를 말하며 포전담당제는 분조의 구성원을 기존의 7-8명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 축소한 가족단위 규모(4-6명)로 운영되는 영농방식을 뜻한다.



그러나 1990년대 구소련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8년 14.4억 달러까지 추락하였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단일화된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대외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지체로 투입 원자재 수입 곤란과 더불어 외화난에 직면하게 되고 무역의 붕괴도 겪게 되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 2015년에는 62.5억 달러로 여타 경제부문과 달리 1990년대 이전 보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대외무역액이 전년 76.1억 달러 대비 17.8% 감소하여 그간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증가·감소·정체의 기복을 보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 북한 대외무역과 북중교역 규모의 추이(남북교역 제외)



* 무역협회 자료 등 참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 내용은 북한경제의 기초 생산력 회복에 토대를 두고 전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역수지의 만성적 적자와 함께 확대된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0년대 연평균 4.9억 달러에서 2000년대 이후 매년 8억~10억 달러로 늘어났다. 북한경제의 미미한 회복세와 시장의 발달로 인해 수입은 급증한 반면, 수

출은 1차 자원에만 의존함으로써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에 못미쳐 왔던 것이다.

둘째, 대외무역이 중국과 남한에 편중되는 구조,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증대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중무역은 1999년 북한 대외무역의 25%에 불과했지만, 2015년 9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국가의 대외경제 부문이 어느 한 국가에 90% 가까이 의존되어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증하게 된 것은, 북한의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 급증, 경제회복을 위한 설비자재의 수입 증가, 시장의 발달로 인한 소비재 수입의 급증, 남북경협 위축·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5-6]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의 비중

(단위: 억 달러)

연도	'99	'00	'02	'04	'06	'08	'10	'12	'14	'15
총교역규모	14.8	19.7	22.6	28.6	30.0	38.2	41.7	68.1	76.1	62.5
북중교역규모	3.7	4.8	7.3	13.7	16.7	27.8	34.6	59.3	68.6	57.1
비중(%)	25	24.4	32.3	47.9	55.7	72.8	83	87.0	90.1	91.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2015년 북중교역액에 원유 수입 추정치 약 3억 달러를 포함.

마지막으로 북한의 무역규모 확대는 식량·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비롯해, 소비제품·기초 원자재·건설자재·차량 등 모든 공산품들을 다각적으로 수입하는 반면, 수출은 1차 자원 및 위탁 가공 제품에 편중되는 후진국형 구조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음 <표 5-7>은 2000년~2015년간 북한의 대중 수출입 10대 품목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중국 길림성 훈춘 권하세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화물차들

[표 5-7] 2000년~2015년 간 북한의 10대 수·출입품목 추이

순위	수출품목 (비 중, %)				수입품목 (비 중, %)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1	나무 (26.7)	광물연료 (22.6)	광물연료 (33.4)	광물연료 (42.6)	광물유 (26.1)	광물유 (26.3)	광물유 (21.0)	전기기기 (11.3)
2	철강 (23.3)	어류 등 (18.6)	광슬랙회 (21.1)	의류 (25.5)	곡물 (7.6)	육류 (9.6)	기계류 (10.8)	기계류 (8.6)
3	어류 등 (10.9)	광슬랙회 (18.6)	의류2 (13.5)	광슬랙회 (8.2)	차량부품 (6.4)	기계류 (7.1)	전기기기 (8.4)	차량부품 (6.7)
4	광물연료 (9.2)	철강 (14.5)	철강 (9.1)	의류 (6.7)	철강(5.0)	전기기기 (5.2)	차량부품 (7.0)	플라스틱 (5.7)
5	광슬랙회 (7.0)	의류 2 (11.7)	어류 등 (5.0)	어류 등 (4.4)	전기기기 (4.7)	플라스틱 (4.8)	플라스틱 (3.7)	인조섬유1 (5.1)
6	건 (6.1)	나무 (3.0)	아연제품 (4.0)	전기기기 (2.3)	플라스틱 (3.8)	곡물 (4.6)	인조섬유 (3.5)	광물유 (5.0)
7	플라스틱 (4.1)	아연제품 (2.3)	시멘트류 (2.6)	철강 (2.1)	의류 2 (3.7)	철강 (3.2)	철강 (3.1)	철강 (3.8)
8	면제품 (2.8)	과실 등 (1.4)	의류1 (2.2)	견과류 등 (1.7)	기계류 (3.2)	인조섬유1 (2.7)	곡물 (2.6)	동식물유지 (3.6)
9	과실 등 (2.4)	의류 1 (1.0)	전기기기 (1.8)	시멘트류 (1.6)	과실류 (2.4)	차량부품 (2.6)	인조섬유2 (2.4)	의류 1 (3.3)
10	채소 등 (1.5)	견과류 등 (1.0)	희토류 등 (1.2)	나무 (0.9)	비료 (1.7)	철강제품 (2.3)	철강제품 (2.3)	어류 등 (2.9)

* HS코드 2단위 기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참고

2000년 대중 1순위 수출품목이 나무였지만, 2010년 이후 광물 연료로 변화하고 있다. 무연탄, 철광석의 대중 수출비중이 2000년 16.2%에서 2010년 54.5%, 2015년 52.4%로 비약적으로 상승해 왔다. 특히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2008년~2010년만 해도 2,000~4,000만 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1년 수출액이 11억 달러로 급상승하고 2013년 13억 달러, 2015년 10.5억 달러 등으로 10억달러 이상 수출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지난 5년여 동안 북한 최대 외화 획득원이 되고 있다. 또한 의류제품의 수출 비중이 2000년도에는 10대 품목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위탁가공 증가로 2015년에는 그 수출비중이 32.2%(7.9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중 1, 2위 수입 품목은 원유·광물류·식량에서 점차 전자기기·차량 부품·플라스틱류·섬유 원자재 및 의류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시장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북한 주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의 다양화, 내수시장 확대, 공장 가동 정상화를 위한 기계·설비자재들의 수입 증가 등으로 북한의 완제품 수입규모와 함께 품목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북한경제가 시장화 확산의 영향으로 수입규모 자체가 확대되면서 전체 수입에서 원유 수입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공산품, 완제품 등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북한은 대외경제 부문에서 대중국 일변도 교역관계 외에 중국과 투자협력, 접경지대 인프라 연결 협력, 노동력 수출, 관광협력 등 다방면의 경제관계도 맺고 있다. 특히 중국에 노동력 송출을 통해 막대한 외화도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노동력 송출 규모는 최소 5~6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외경제 부문의 압도적인 대중국 편중 현실에 직면해, 북한은 무역의 다변화·다종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고수로 인한 부정적 대외경제환경 조건, 정체된 산업경제 등 상황을 감안해 보면 당분간 성과를 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경제정책의 변화

1. 시장화 현상

(1) 시장화 현상의 대두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1980년대 중·후반경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계획시스템 작동에 애로가 조성되고 있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 집중적 계획화 체계 자체가 사실상 곤란해짐으로써 점차 공급 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있었다. 계획경제 시스템의 양대 축인 자재공급체계와 배급제도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북한 당국이 1958년 이래 허용해왔던 10일장 형태의 농민시장이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매일 열리는 상설 시장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상설 시장화된 농민시장을 허용·통제를 반복하면서 다른 한편, 공장·기업소 등의 '8.3인민소비품' 생산과 부업발을 허용해 주었다. '8.3인민소비품' 생산이란 공장·기업소들이 계획지표를 수행하고 남은 부산물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업발은 공장·기업소 등의 소속 노동자들에게 부업으로 부치는 땅을 부여한 밭을 말한다. 협동농장 농민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약 30평 정도의 텃밭 경작이 예전부터 허용되고 있었다. 이 활동들은 계획 외 경제활동, 즉 합법적인 비공식 경제활동들로서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해 외연이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이후 주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식량 미공급 및 소비제품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나가자 암시장 형태인 '야시장', '장마당', 밀수 활

동이 발달됨과 동시에 농민시장이 합법적 공간의 성격을 뛰어넘어 점차 비합법적 공간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나갔다. 불법거래 상품인 쌀·옥수수 등 식량과 공산품 등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동요되고, 전반적 배급제 붕괴 현상이 초래되면서 급속도로 진전되어 나갔다.

북한 주민들은 처음에 배급제가 중단될 당시 생존을 위한 식량 획득 목적으로 ‘단순 거래자’로서 농민시장에 등장했었다. 장사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치부했던 과거 인식 때문에 주저했던 주민들은 장사 활동을 통해 생계가 유지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점차 신규 참여자로 진입해 들어왔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 수도 확대되어 나갔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의 교환활동을 통해 부가가치와 부의 축적을 경험하며 상업자본을 축적해 나가고, 일부는 이른바 ‘돈주’로도 성장해 나갔다. 장마당에는 공장·기업소 자산의 전용·약탈·탈취 등을 통해 유입된 재화, 텃밭·소토지 등에서 경작된 농축산물, 개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물품, 국제사회의 지원물자, 북·중 간 공식·변경무역 및 밀수 등을 통해 대규모로 유통된 재화들이 공급되었다. 북한은 식량난과 계획시스템의 붕괴에 직면하게 되자 북·중 접경지대의 통상구를 개방하고, 국가 지정 무역기관 외에 정부 부처인 성(省), 기관, 군부대, 지방의 도인민위원회, 공장·기업소들도 대외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말에 오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전국적 규모의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진전되었다. 주요 시·도들에 대규모 도매시장과 함께 이 시장들이 특화된 시장으로 발달되어 나갔다. 주민들의 장사 형태도 ‘등짐 장사’로 출발해 점차 지역 간에 부족한 물자를 유통시켜 이익을 얻는 장사인 ‘되거리 장사’, 철도·차량을 이용한 도매 장사인 ‘달리기 장사’ 및 ‘차판 장사’ 등에서 상설시장에서 앉아서 장사하는 ‘매대 장사’로 분화·발전되어 나갔다.

[그림 5-2] 북한의 대표적 종합시장



평양 통일거리 종합시장



지방의 장마당

한편, 1990년대 말 이렇게 전국적 규모의 유통 네트워크가 구축될 정도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확산된 이면에는, 북한의 당·군 등 주요 특권기관들이 시장공간에 본격 진입해 들어와 특권을 활용해 외화벌이 및 계획지표 수행 활동을 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경 자재공급체계가 전반적으로 마비되자 각 경제단위들에 물량지표가 아닌 액상(금액)지표를 부여하고 독립채산제를 확대해 나갔다. 특히 특권기관들에는 주요 외화벌이 원천들을 장악해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공장·기업소들이 본래 생산·경영 활동과 상관 없는 무역활동 및 상업활동 등을 통해 금액지표 납부를 수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특권기관들은 대규모 무역기관으로서 북한 내 유통망을 장악해 나갔다.

(2) 시장의 확산 및 통제

1990년대 시장화 현상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으로서 북한 경제체제에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라는 큰 모순을 야기했다. 1998년 공식 출범한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제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을 국가 관리 내로 유도해 체제 정비와 함께 선군경제정책 시행의 재원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정일 정권은 2002년 시장을 부분 제도화하는 이른바 ‘7.1경제관리개선 조치(7.1조치)’를 시행했다. 7.1조치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①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의 경제 활동에서 경영 분권의 부분 허용, ② ‘변수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지표 변경, ③ 시장가격 수준으로 국정가격의 현실화, ④ 협동농장 분조 축소(20명 내외 단위→ 7~8명 단위로 축소)와 개인경작지 규모 확대(30평→ 400평), ⑤ 공산품·식량 거래를 공식 허용하는 종합시장 도입(2003년), 기업소 간 원자재 거래를 허용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도입(2002년), 수입물자들의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수입물자교류시장 도입(2004년), ⑥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치였다.

이 조치는 경제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 기능을 부분 활용하고, 궁극에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의도를 내포했던 ‘체제내적 개혁’의 성격을 가진 조치였다. 따라서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에 부분 허용했던 경영분권화 조치는 경제개혁의 성격이 약했으며, 본래 의도했던 경제단위의 효율성·생산성 제고와 가동 정상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에 비합법적 영역이었던 소비재 시장을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제도화하고, 기업간 원자재·생산재 교류를 허용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의 합법적 등장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북한 경제내에 구조화하는 역할을 했다. 주민이 국가에 정식으로 ‘장세’를 내고 종합시장

에서 매대장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장·기업소들은 ‘기업소 자체 계획’에 따라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에서 원자재를 조달해 생산품을 만든 다음 종합시장에서 상품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물론 공장·기업소들은 계획지표 달성의 명목으로 계획당국의 관리하에 이와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국가기업이익금을 내야 했다.

그렇지만 과거 불법이었던 장사활동이 합법화되고, 경제단위들이 계획지표 수행이라는 명분하에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계획경제와 비공식경제간의 경계가 점점 더 구분하기 어려워져 갔다. 주민들은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해나가며, 종합시장 바깥의 장사활동(메뚜기 장사, 주택가·골목 장사, 방문판매) 및 사경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업종(노래방·PC방·숙박업·운송·목욕탕·식당, 개인 수리업, 자전거·오토바이 배달 등)들이 발전되어 나갔다. 공장·기업소들은 기존 업종·생산 활동을 아예 변경해 국가기업이익금을 내거나, 돈주의 투자를 유도해 일체의 경영·생산 활동은 돈주가 행하고, 돈주로부터 수익금의 일정 몫을 받아 국가기업이익금을 내기도 했다.

이런 현상 속에서 돈주가 중심인 사금융 시장도 발달되어 나갔다. 돈주는 상당한 규모의 화폐자산(주로 달러·위안화 등 외화)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시장화 현상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상업금융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음을 이용해 실물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유통해 주고 이자수익을 획득하는 북한판 화폐자산가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사채놀이를 행하였으나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 즉 공식경제 부문도 경제 활동 유지를 위해 시장을 활용하며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00년대부터는 돈주들이 비공식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공식경제 부문에도 투자행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단기 업적 시현 차원에서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평양 아파트 건설 같은 부동산 분야에도 돈주의 투자 없이는 건설이 어려울 정도로 돈주들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최근 돈주들의 사금융 행위는 예금, 자금이체, 송금, 담보 대출 등 일반 상업 금융기관이 행하는 금융행위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돈주로 불리는 사람은 재일동포 출신, 외화벌이 일꾼, 화교, 특권을 이용해 화폐자산을 축적한 간부(주로 부인들), 장마당에서 화폐자산가로 성장한 일반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돈주가 국영상점, 국영기업소 등에 투자해 ‘사회주의 모자를 쓰고’ 자본주의식 경영을 하게 되면서, 초기 형태의 임노동도 나타났다. 수산업 분야의 어부, 대규모 소토지 경작분야의 소작인, 벌이 버스의 개별 운전자, 상점의 점원, 국가 기관·기업소 명의를 갖고 사실상 개인이 경영하는 외화벌이 회사의 임금 노동자, 물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 이른바 ‘시장 일공(日工)’이 등장한 것이다. 소속 기관·기업소·공장에 대신 자기 월급을 납부하고 사경제 활동을 하는 이른바 ‘8.3 노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적으로 고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받는 공식임금인 월급(생활비)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나갔다고 한다.

한마디로 7.1조치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지만,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경제부문별(사금융, 노동, 생산, 유통, 건설, 서비스 등)로 더욱 심화·발전되어 나가게 하고, 의도치 않게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상호 공생하는 시스템을 구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초래해, 북한은 2005년 하반기 이후 7.1조치 시행을 중단, 점진적으로 시장을 통제해 나갔다.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 본거지”라고 주장하며,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장활동을 단속·억압해 나갔다.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전격 화폐개혁을 시행하며 종합시장도 철폐하려 시도했었다. 화폐개혁은 신·구 화폐를 1:100 비율로 교환하는 화폐교환 조치이지만, 북한은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공식 허용되었던 종합시장을 축소·철폐시키려 했다.

그러나 종합시장을 축소·철폐하려는 화폐개혁은 북한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2개월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미 주민들의 가계경제가 시장활동을 통해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 계획경제 공간도 시장에 의존해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수입조차 많은 부분 시장의 토대위에서 성취되는 경제현실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경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결국 합법적·공식 경제 영역에까지 침투해 계획경제와 시장이 상호 활용하는 구조로까지 발전하였다. 북한이 적극적인 시장화 개혁을 취하지 않은 결과 경제구조가 이원화되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결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할 수 없는 현실이다.

(3) 시장의 활용과 재확산

2012년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정권 말기 전주민 동원정책을 시행해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상징하는 희천발전소 건설 등 몇몇 대규모 건설사업 들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산업생산력이 아직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해 주민들에게 약속한 ‘먹는 문제’ 해결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2000년대 이후 구조화된 시장화 현상속에서 크게 확대된 경제의 양극화 해결과 함께 민생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정책과 시장의 부분 활용→ 통제→ 묵인의 반복은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3대 세습정권의 명분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셋째, 경제관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북한경제의 위기 상황이 더욱 확대되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었다. 제도와 경제현실간의 격차 확대는 경제의 양극화와 더불어 특권 세력들의 지대소득 확대만을 초래하고 있었다. 즉 시장 활동에서 산출되는 부가가치 및 잉여가치가 국가의 재정으로 유입되어 산업경제 정상화에 투입되는 경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암시장만을 확산시켜 왔을 뿐이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초로 선포하면서,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즉 김일성 시대 이래 북한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경제·군사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한경제 내에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시장화 현상 일부를 수용해 경제의 효율화와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다그치는 관건적 고리”⁵²⁾라고 하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일부

52) 노동신문, 2014.10.22.

경제단위에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시범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었다.

북한은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의 당사업총화 보고를 계기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확립을 공식화하고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과거 7.1 조치가 농업·국영기업·가격·재정·유통 등 경제 각 부문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었던 것과 달리, 아직 대외적으로 그 전모가 체계화된 내용으로 공표되어 있지 않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신보⁵³⁾, 해외 언론과의 북한 경제학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분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분야에서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일부 지역과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최종 작업조인 분조(15~20여 명, 50정보) 내에 포전을 담당하는 최종 노동단위를 3~5명으로 구성하고,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당국이 제공한 농자재 비용과 국가 몫 납부 후 초과 생산물을 국가와 농민간에 일정 비율로 현물 분배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로 변형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즉 균량미 수매 우선 원칙, 현실에 안 맞는 계획 수매량, 기존 협동농장 조직체계의 유지, 분배 토지등급의 차이, 분배 토지면적의 편차, 여전한 주체농정의 강조 등 문제로 인해 그 효과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공장·기업소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해 독립채산제 및 경영분권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방공장의 경우 국가계획 외 기업소 자체 계획을 허용해 생산량, 생산물의 품질, 가격·임금 결정 등에 있어서 일부 권한을 부여하고, 초과 생산품의 시장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북한식 기업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력·자본·원부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수출기업 외에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 내용들은 사실상 2002년 7.1조치 및 2004년 확대 조치 방안을 대부분 재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53) 조선신보는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에서 새 경제관리 체계에 따른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도입되었고(2013.4.11.), 평양 기초식품 공장에서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2013.11.6.).

있다. 7.1조치의 실험 중단과 시장의 통제와 묵인의 반복 속에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 상황을, 사후적으로 일부 수용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시장활용 정책 하에서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이를 겨냥한 계획경제 부문의 '사회주의 모자를 쓴'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시장화 초기에 계획경제 부문의 상품·자원들이 시장에 유출됨으로써, 시장은 계획경제 부문을 잠식하는 경제공간 성격이 지대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계획경제 부문이 계획지표 수행에 필요한 원자재·자본 조달 및 판매시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은 계획경제 공간과 상호 의존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대외 개방 정책

(1) 모기장식 개방과 4대 특구 개설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산업연관 관계의 단절 현상이 야기되자 대외경제 개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소련으로부터 우호가격으로 제공받아 왔던 원유, 코크스, 기초 원자재 등을 이제는 국제시장에서 정상 교역의 무역 관계로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북한은 “문은 열되 모기장을 치고 연다”는 의미의 ‘모기장식 개방론’을 내세우고 1991년 12월 처음으로 함경북도 최북단 항구 도시인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관련법 등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처음에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이 채택되었다. 국제사회의 부족한 관심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나선경제특구 개발은

2009년 12월 김정일의 나선시 현지도와 2010년 두 차례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소 소원했던 북·중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북한은 중국 자본을 유치해 나선경제특구를 대외무역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은 2010년에 나선시를 특별시로 격상시켰으며, 2015년 11월 18일에는 북한의 대외매체인 '내나라'를 통해 총 154.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나진항물류산업구, 신흥경공업구 등 산업구 9곳 개발에 92.2억 달러를, 비파섬생태관광구 등 관광지 10곳에 62.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나선경제특구 내 기업 수는 2014년 1월 현재 북한 기업 120여 개, 외국투자 기업 150개 등 총 270여 개에 달하며, 외국 기업의 총 투자액은 2013년 5월까지 약 4.1억 유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투자 기업은 대부분 중국 기업이며, 러시아·미국·이탈리아·태국 등에서도 투자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외국 기업으로는 동북아시아전화통신회사, 나선국제유한회사 등이 있다. 북한 기업들은 공업·농업·수산업 분야들의 회사들로서, 금속가공과 식료품·수산물·피복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은 자력으로는 1990년대 붕괴된 산업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변방의 경제특구를 확대해 나갔다. 2002년 7.1조치를 시행하면서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 제정하여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신의주·개성·금강산까지 더하여 4대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신의주는 특수행정 단위로 중앙의 관할 아래에 두지만 자율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부여하려고 했다. 정치제도 면에서는 홍콩식을, 경제특구 제도 면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토양 위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선천 특구를 선별 혼합한 방식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당시 계획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초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화교 사업가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무산되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 자본이 단독 투자·개발하는 형태의 특구로 개설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합의와 달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는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도발로 인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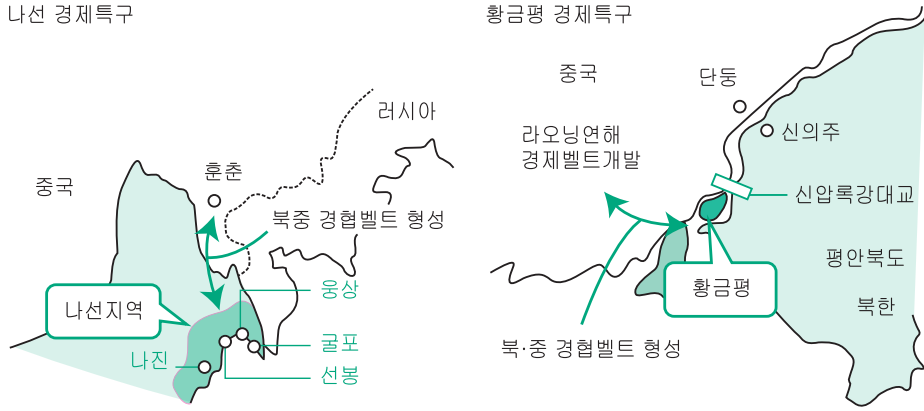
(2) 대중국 개방 확대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연이은 대남도발로 남북경협이 위축되자, 대중국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 정책을 변화시켰다. 2011년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함께 중국과 공동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지역의 교량,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대·연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북한이 나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 개발하려 했던 것은 북·중 간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적 수요도 작용했다. 우선 중국은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5년~2010년) 추진 이후 향후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동북 3성 지역을 주목했다. 따라서 동북 3성 지역 개발에 주변 지역인 몽골, 러시아, 북한과의 접경지역 연계발전이 절실했었다. 특히 2009년 9월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개방선도구'의 추진에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한 동해로의 출로 확보가 절대 요구되고 있었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돌파, 5.24조치로 위축된 새로운 외화벌이 원천 추구하고 그리고 2012년 강성국가 달성을 위한 경제건설 등으로 대중국 경제관계 확대가 필요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과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양 지역 경제특구 개발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우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의 경우 형식상 관리위원회 건물만 건축된 후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나선·선봉 특구의 경우 중국 자본 투자가 주로 식당·가라오케·물류업 등 서비스 업종 위주이고,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 투자는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나진항을 이용한 자국 남방지역으로의 물류이동에 필요한 원정리-나진간 도로 확장·개선과 제2두만강대교만 건설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중국 자본의 대북 투자 역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5-3]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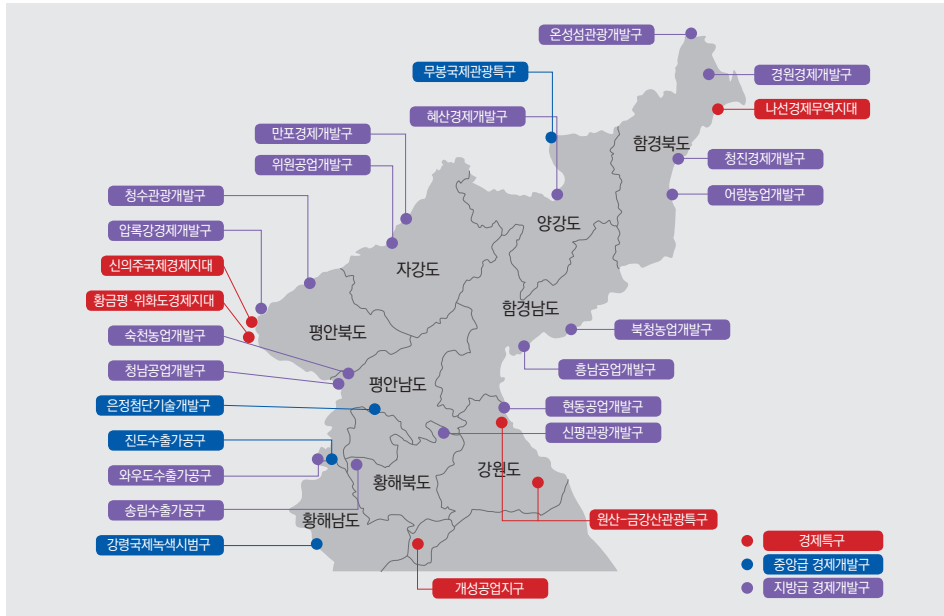
(3) 경제개발구 신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나선,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개별 특별법에 의한 특수경제지대)외에 지방에도 경제개발구를 개설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함으로써 2015년 12월 현재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개 등 총 26개에 이른다. 북한이 기존에 발표한 5개의 경제특구(나선 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 국제무역지대)를 제외하면,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지정한 경제특구·경제개발구는 무려 21개나 된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추진은 기존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보다 확대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중국식 경제특구 정책을 모방해 경제특구·개발구를 중앙급·지방급으로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종합 경제특구가 아닌 각 지방 정부들이 보유한 비교우위 요소를 기초로 특화된 경제개발구들(2015년 12월 현재 경제개발구 5개, 공업개발구 4개, 농업개발구 3개, 관광개발구·특구 4개, 수출가공구 3개, 첨단기술개발구 1개, 국제녹색시범구 1개 등)을 추

진한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과는 달리 경제개발구 지대 밖의 북한 기업이 새로운 경제특구·경제개발구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경제개발구법 제20조), 지대 내의 외국자본이 지대 밖의 북한 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경제개발구 기업창설규정 제21조) 제도화하였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나진 및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지대 밖 북한의 기업들과 위탁가공 내지는 생산공정의 분업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그림 5-4]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근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외자유치가 쉽지 않은 여러 현실 여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된 북핵 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북한의 시장개혁 지체, 개성공단의 중단 위기 사례, 전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물류 체계, 시장경제 의지 및 전문가 부족, 김정은 정권의 내부 불안정 요소 등이 외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특구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대외정책을 시행하며, 최고 지도자가 개혁·개방 의지

를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특구 지역과 국내 산업·시장의 연계를 위한 대내 시장개혁을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고, 중앙·지방 정부가 외자유치에 필수적인 법제도 및 인프라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외자유치의 관건은 그 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인프라 등 자본 유치의 여건이 마련되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시행하는 종합계획을 제시하고 핵개발 포기 의지를 적극 표명하지 않는 한 경제개발구 정책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김정은 정권은 1990년대 이후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추락한 산업 생산력을 복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질서에 적극 편입하여 해외자본을 활용하는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는 계획경제이지만 현실은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시장화 확대를 통해 산출되고 있는 부가 가치들을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대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기초를 전제로 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 능력 강화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모색하는 병행전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보다는 다소 민생경제 회복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거부하며 북한식 변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체제 유지 분야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제정책을 여전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북한식 변화의 모색과 중단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통제와 묵인 속에 1990년대 이후 북한 시장화 현상이 양적·질적으로 지속 발전되어 온 양상과 달리, 제한된 개방과 시장 기능의 부분 활용이라는 양면 정책을 시행→중단→재시도 등으로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북한이 시도하는 ‘변화정책’들은 현실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장화 현상

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하고, 아래로부터의 압박을 사후적으로 수용하는 소극적 조치들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 경제체제는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게 확장되고,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구조적 경제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향후 이러한 모순을 해소할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북한체제의 내재적 딜레마가 김정은 정권의 선택지에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경제개발을 위해 개혁·개방이 불가피한데, 이것은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손상을 입히고 체제전환 요소를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향후에도 '북한식 변화 경로'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체제의 이행기적 성격도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VI

북한의 교육과 문화

제1절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제2절 문예정책과 문학예술

제3절 언론



Key

Point

01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을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국가배급 제붕괴 등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무상의무교육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2013년부터 4년제 소학교 과정을 1년 연장하여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02

북한의 학교교육은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와 혁명활동, 주체사상 학습 등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한다.

03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발현된 창작보다 노동당의 이념, 정책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학과 예술은 국가의 통제 아래 당성, 인민성, 계급성을 강조한다.

04

북한체제에서 언론의 역할은 당정책 및 혁명사업을 선전·선동하며, 당의 혁명과업 실천을 위해 주민을 조직·동원하는 데 있다. 북한의 언론은 인민대중의 집단 교양자, 조직 동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체제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1절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1.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1) 교육정책의 목표

북한에서 교육은 체제유지와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변혁의 수단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의식의 변화는 사회의 물질 구조를 바꾸는 활력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교육이 의식변화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교육의 역할에 주목하여 광복 이후 사회주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부터 교육제도의 수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취학 전 교육, 무상 의무교육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교육제도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 정책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북한의 무상 의무교육은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 뿐 아니라 학교 건물 관리에서 교육 기자재, 연료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가 학생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와 일탈 행위 등이 교육에도 반영되어 부정 입학과 성적 조작 등 각종 교육 비리가 행해지고 있다.

이에 북한은 체제 정비 및 유지 차원에서 교육 운영의 파행을 최소화하고, 과학 기술의 인재양성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사상성 이완 방지를 위한 정치사상 교육 강화 등 일련의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교육법)으로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사회주의 헌법)로 명시되어 있다.⁵⁴⁾ ‘주체형의 새 인간’이란 첫째,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하고, 둘째,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며, 셋째,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겸비하고, 넷째, 대중동원운동 및 사회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북한이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재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투쟁하는 혁명 사상과 과학기술 그리고 국방과 노동의 의무를 다할 건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인간형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 발달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구성원의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김정일과 김정은 등 지도층에 복종하는 인재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1977년 9월 5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북한 교육 체계의 기본 골격과 교육 운영의 기본 방침이다. 이는 김일성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 행한 연설, 교시와 명령 등을 정리하여 공포한 것으로서 북한 교육 전반에 걸친 방향과 지침이 집대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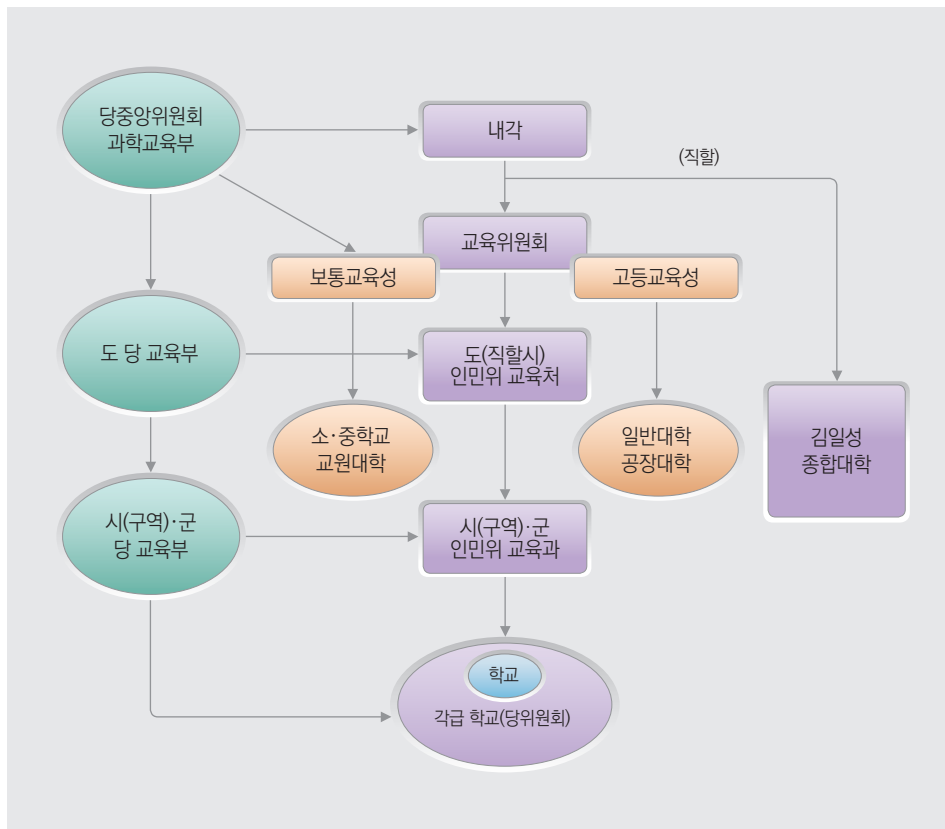
54)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에 따른 법 제정과 개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련의 교육 관련 법령을 발표하였다. 교육법(1999년), 보통교육법(2011년), 고등교육법(2011년)에 이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2012년 최고인민회의 법령) 등이다. 이런 법령들은 1977년 9월 5일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2) 교육행정 체계

북한의 교육행정은 노동당의 지도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된다. 북한은 당이 국가기구와 사회조직 일체를 통제하는 ‘당·국가 사회주의 체제’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지도 총괄은 노동당중앙위원회 산하의 과학교육부가 담당한다. 교육정책의 집행 및 교육과 관련된 행정의 총괄은 내각의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각급 교육기관은 당-내각의 지도 아래 교육을 실시한다.

〈그림 6-1〉과 같이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는 당, 내각, 학교 등으로 구성되는 3원 구조에 기초하여 당은 감독과 지시를 하고, 내각은 당의 지침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립·구체화하며, 학교는 당과 내각의 교육정책을 실시한다.

[그림 6-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북한교육과 관련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하급 당 위원회와 내각에 지시·전달한다. 행정실무 업무는 내각의 교육위원회가 담당하며 교육위원회 산하에는 보통교육성과 고등교육성이 있다. 보통교육성에서는 유치원과 소학교·중학교 및 교원대학, 고등교육성에서는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각각 관장한다. 교육성은 교육 지침을 각 도에 위치한 인민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원회 교육처는 이를 다시 해당 시·군·구역에 위치한 인민교육과로 송부하여 각급 학교에 전달된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학교교육은 당과 내각의 지도 및 통제를 받아 실시되고 있으며 노동당이 실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이런 점에서 당은 북한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학교는 당의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3) 학제

1) 북한 교육제도의 변천

북한의 교육제도는 정권 수립 이래 현재까지 정권과 사회의 필요에 따른 인재 양성을 위해 개편이 이뤄져 왔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 정권 수립 초기의 북한 교육은 소련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단일한 학제로 재편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소련의 후원 아래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위한 일련의 제도를 정비, 교육제도도 사회주의 교육으로 개편을 시도했으며 특히 문맹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6·25전쟁 후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전념하던 시기의 북한의 교육 제도는 ‘일하면서 배우는’ 학교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초등 의무교육(1956년)에 이어 중학교까지 7년제 의무교육을 확대(1958년)하여 노력 동원과 이념교육의 강화를 위한 체제 개편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교육을 강조하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2년제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의 3년제 중학교와 2년제 기술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 중학교를 새로 설립하여 9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1967년)하였다.

1970년대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교육에서도 ‘주체적’ 교육 체계 수립이 시도되었다. 1972년 노동당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1975년 9월 유치원 높은 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2002년 인민학교는 소학교,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개칭)을 포괄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교육도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교육의 전문성과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인재양성을 위한 수재 교육 등이 행해졌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양성을 위해 각 시·도에 영재교육 기관인 제1중학교를 신설하고 컴퓨터 분야의 중등영재 교육 기관을 지정하며, 대학에 수재반을 설치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의무교육제도는 4년제 소학교 과정을 1년 연장하여 5년제 소학교, 중학교 6년을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를 분리하여 교육한다는 내용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2013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2014년에 시작하여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6-1]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연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 의무교육(6.25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
1972년~201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4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데 대하여(2012.9.25.)’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재학 연한 확대
-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학교와 3년제 고급학교로 구분 운영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작성, 새로운 교과서 편찬

2.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와 세계적 수위에 맞게 교육의 질 향상

- 새 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 혁명인재로 키워나가는데 이바지 할 결의 표명
- 일반중학교(중등일반지식), 기술고급중학교(일반교육+해당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게 기초기술교육 시범적 실시)
- 수재교육 및 교육과학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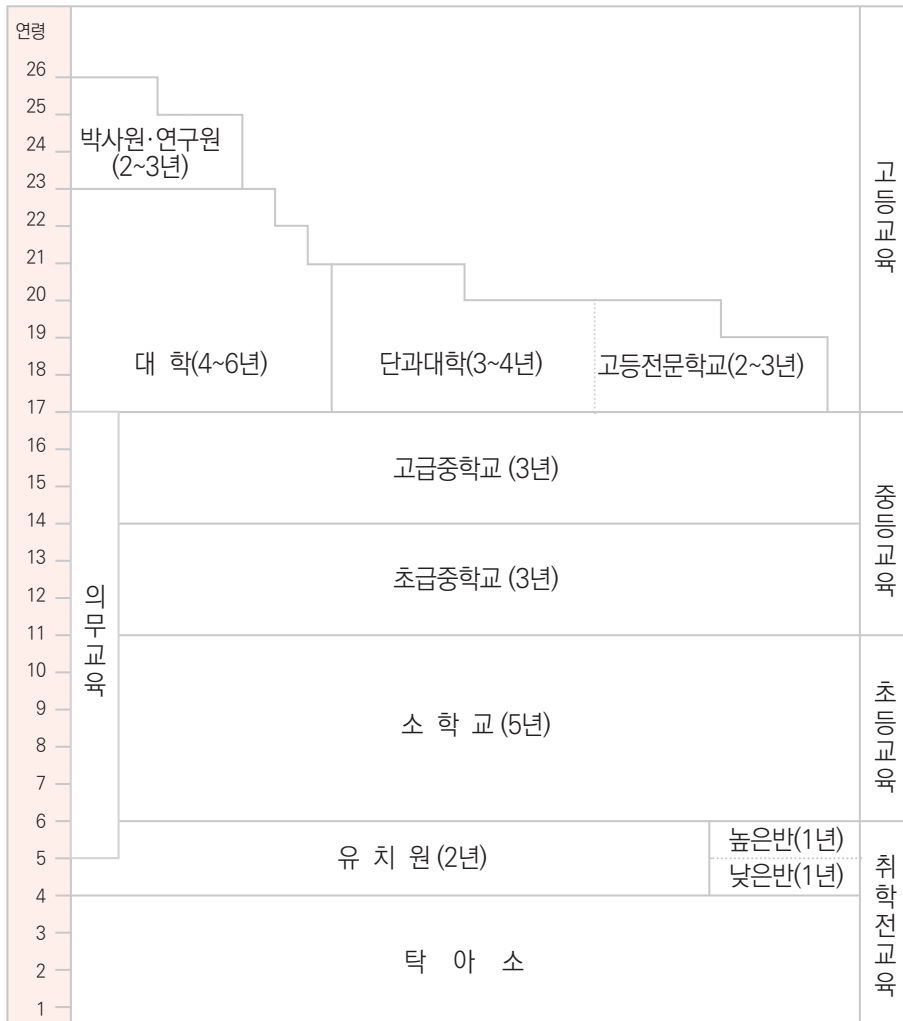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며 필요한 조건과 환경 마련

-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들이 지원
- 법령 발표 후 2년 동안 교실을 신·증축, 교구 비품들을 생산 보장

2) 학제 구분

북한의 학제는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5-6-4(6)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 구성된다. 당초 북한의 학제는 4-6-4(6)년제로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 등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2012.9.25.)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법령 발표로 인해 2013년부터 소학교는 5년, 중학교 6년 과정은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여 운영되는 학제로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그림 6-2] 북한의 학제



한편 북한은 기본 학제와 별도로 엘리트를 양성하는 영재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특수 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혁명학원 같은 출신 성분에 따른 특수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과 특수교육은 학교나 학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교원대학과 전문대학은 3년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학부에 따라 4~6년제다. 사범 대학은 4년제로 운영된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인문과학부

는 4년, 사회과학부는 5년, 자연과학부는 6년제이나 최근 들어 자연과학부의 졸업 연한이 1~2년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새 학년도는 4월 1일이고 학기는 두 학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1학기는 4월부터 9월까지이고, 2학기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이다. 방학은 학기 중간에 끼어있으며 소학교와 중학교 등 학교 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여름 방학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겨울방학은 12월 말에서 1월 말 내지 2월 중순까지로 되어 있다.⁵⁵⁾

보통교육

북한에서 보통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 교육으로서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수차례 학제 개편을 통해 현재 유치원과 초·중등 단계를 포괄한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지도자(수령)와 당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간형으로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정당화하는 ‘혁명적 수령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다.⁵⁶⁾

북한에서의 무상의무교육은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지만 모든 자원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모든 생산물 역시 국가가 소유하여 분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더구나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명분으로 학생들을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시켜 각종 노력동원 활동에 동원함으로써 무상교육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의 노력동원 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어 있다.

소학교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

55) 북한의 '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의하면 소학교의 여름방학은 31일(7월 16일~8월 15일)인데 비해 중학교의 여름방학은 22일(7월 25일~8월 15일)이고 소학교의 겨울방학은 51일(12월 30일~2월 18일), 중학교의 겨울방학은 33일(12월 30일~1월 31일)로 제시되어 있다.

56) 북한의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명시된 교육목표는 "백두산절세위인 등(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이론의 위대성, 영도의 위대성, 풍모의 위대성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과 인간적인 매혹에 기초하여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며..."이다.

도 한다. 초급중학생과 고급중학생 1학년생들은 농번기에 연간 4주, 고급중학교 2~3학년생들은 10주 동안 농사지원이나 건설현장 노력봉사를 나가야 한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김매기 전투’, 모내기를 하는 ‘봄 전투’와 가을걷이를 하는 ‘가을 전투’는 각각 5월 초와 9월 말에 시작되어 20~30일씩 계속된다.

또한 북한의 무상의무 교육은 교재와 기자재 구입 및 학교 시설 개·보수 등 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의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며, 이에 대한 부담이 경제난 이후 더욱 가중되면서 북한의 선전과 달리 그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

한편 평등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던 북한의 교육은 1990년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와 컴퓨터 등 실리 중심의 교육과 수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학교에서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시와 공업지대에 위치한 중학교는 수학과 물리 분야 과목, 농촌 지역 중학교는 생물과 화학 분야의 과목에 각각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영향을 받아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기관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들어 시·군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정보기술의 인재양성을 위한 조치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수재교육과 외국어·컴퓨터 교육 등 특수교육은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실시되지만 일부 지역의 특수 계층에게 기회가 부여될 뿐 일반 학생은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 교육 외 각종 노력 동원과 가중된 세외 부담 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

북한에서의 고등교육은 1946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을 평양에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6.25전쟁 후 3개년 복구건설기(1954년~1956년)에는 정치·경제 분야의 대학들이 신설되었고, 이후 중등 의무교육의 전반적 실시를 위해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1970년대에는 경제 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야간대학을 설립하는 한편, 부족한 각급 학교 건설을 위해 소규모 공장대학, 통신대학, 전문학교 등의 증설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 및 일반 단과대학과 함께 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 등 산업체 부설 현장대학이 설립되었다. 최근 북한은 평북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등 종합대학을 증설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 진학은 보통교육과 다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보통교육 과정은 의무교육이므로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고등중학교 과정까지 마칠 수 있으나, 대학 진학은 대학 입학 추천을 위한 예비시험과 도별 각 대학의 본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내각 교육위원회가 도별로 각 대학 등에 본시험을 위한 수험생 수를 정해 주고, 시·군 인민위원회는 도에서 할당한 인원수를 바탕으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수험통지서를 발급해 준다. 예비시험을 거쳐 대학 추천을 받은 학생은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약 20%이며, 이 가운데 시험에 합격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평균 10% 수준이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 환경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직통생'이라 한다. 시험에 떨어지면 남학생은 군대에 가고 여학생은 직장에 배치된다. 재수생은 없지만 군대나 직장에 배치되었다가 사회인으로 추천을 받아 다시 대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은 보통 시험성적 순에 따라 결정되지만 성품이나 소질도 중시돼 일종의 특례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별 성적 차를 인정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 실시로 지역별 학력 차를 감안하여 합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부정 입학, 성적 조작 등 교육 비리와 함께 대학의 입학 요건에 성적과 출신성분 이외 경제력이 부가되어 실제 명문 대학 내 당·정 간부, 외화벌이 지도원 등의 자녀들의 부정 입학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교육

북한에서는 특수한 신분과 자질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 기관으로는 수재 양성을 위한 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 예·체능계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무용, 음악, 조형예술, 교예 등에 소질이 있는 특기자들을 가르친다.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에 영재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제1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제1중학교는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재양성기지’를 마련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에 처음 설립된 후 이듬해 각 도 소재지와 특별시에 세워졌다. 1999년에는 전국 시·군·구역에 1개교씩 제1중학교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제1중학교는 과학, 수학, 물리 등 이과 계통의 과학자 양성 위주로 하고 있어 입학자격은 출신 성분만이 아니라 과학 및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제1중학교에서의 교육은 일반 중학교와 다른 특수교재(전문대 수준)로 자연과학, 컴퓨터, 영어 등을 배운다. 이들은 일반학생들과 달리 농촌지원활동 등의 면제 혜택을 받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진학하며 대학졸업 후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 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수재교육 기관의 설립을 통한 인재양성은 1980년대부터 시도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래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 아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강화되었다. 당국의 수재교육 강화는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제 건설과 국가 발전을 기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재교육 체제는 학교서열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균등과 차별 등 문제점을 해소를 시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통교육법(2011년)에 제1중학교를 중앙과 도 단위로 축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교육 기관으로는 평양외국어학원과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외국어학원이 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중학교 과정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킨다. 이 학원의 입학 자격은 소학교 졸업자로서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다.

북한의 수재양성을 위한 기초 과학기술과 외국어 교육의 강조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의 추진 인력양성을 목표로 강화되고 있다. 2012년 학제개편에 따른 2013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의하면 수학 및 자연교과와 영어과목의 비중이 높아졌다.

혁명학원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대를 이어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로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특수교육 기관이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등이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8년제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이며 입학 자격은 혁명 유가족, 전사자 가족 및 당·정 고위 간부 자녀들이다. 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군사조직형태로 편성되어 모두 기숙사 생활과 의무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 대우를 받으며, 졸업 후에는 군 또는 특수 요직에 진출한다.



만경대혁명학원의 학생들

2. 교육과정과 방법

(1) 교육과정

초등교육 과정

초등교육의 경우 <표 6-2>에 제시되어 있듯 소학교 재학 5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등 지도자의 어린시절, 국어, 수학, 자연, 영어, 정보기술 등 총 1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이 중 영어와 정보기술(컴퓨터) 교육은 2008년 9월부터 소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실시하였고 2012년 학제개편 이후 소학교 4학

년부터 교육하고 있으며 시수도 확대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시절' 과목이 추가되어 정치사상교과 시간이 확대되었고 음악이 음악무용으로 통합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주당 수업 시간은 국어·수학·자연·체육·음악무용·도화공작의 순으로 많으며 학제개편 이전보다 영어, 수학, 음악무용, 도화공작 등의 시수가 증가하였다.



소학교 학생들

[표 6-2] 북한의 소학교 교육 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1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1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1
5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6	수학	4	5	5	5	5
7	국어	7	7	7	7	7
8	자연	1주	1주	2	2	2
9	음악무용	2	2	2	2	2
10	체육	2	2	2	2	2
11	도화공작	2	2	2	2	2
12	영어				2	2
13	정보기술(컴퓨터)				1주	1주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소학교)' 내용 재구성.

* 북한의 교육과정은 주당 교수시간과 집중교수(주 단위로 표시)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위의 표에서 1주는 집중교수시간을 의미함.

중등교육 과정

중등교육의 경우 기본 6년제로 진행된다 2012년 학제 개편에 따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로 구분하여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지식경제강국’을 이끌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과학, 컴퓨터 기술, 외국어 교육’과 자립적인 학습능력과 창조적 능력의 배양, 실험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⁵⁷⁾ ‘지식경제강국’은 김정은 정권의 국가적 슬로건인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이의 실현을 위해 12년제 의무교육기간 연장과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초급중학교

2013년 개정된 초급중학교의 경우 주당 수업시간이 32시간이며 교육과정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 과외학습, 소년단생활, 과외체육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정 이전에는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23개 과목을 교육하였으나 개정된 이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의 교과목이 각각 16개와 22개로 분리 증대되었다.

초급중학교 교과목의 경우는 고급중학교에 비해 통합형의 교육과정으로서 ‘김정은 혁명활동’ 관련 교과목과 함께 ‘자연과학’, ‘음악무용’ 등의 통합교과목이 도입되었다. 이외 개정 이전의 제도, 실습 등의 과목이 ‘기초기술’ 과목으로, 컴퓨터 과목이 컴퓨터 이외 기본지식, 통계, 그림파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정보기술 과목으로 새롭게 편성되어 도입되었다.

교과목과 시수의 편성은 과학기술과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따라 수학에 이어 자연과학과 외국어 교과의 시수가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다. 외국어 교과의 경우 영어 교과로만 한정되어 수업시수가 확대되었다.

57) 「교육신문」, (북한 내각 교육위원회 발행 기관지), 2014.5.8.

[표 6-3] 북한의 초급중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활동	1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1	1	1
5	사회주의 도덕	1	1	1
6	국어	5	5	5
7	영어	4	4	4
8	조선력사	1	1	2
9	조선지리	1	1	1
10	수학	6	5	6
11	자연과학	5	5	5
12	정보기술	2주	2주	2주
13	기초기술	1	1	1
14	체육	2(1주)	2(1주)	2(1주)
15	음악무용	1	1	1
16	미술	1	1	1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내용 재구성.

* 위의 표에서 체육 교과의 주당 교습 시간은 2시간이며 괄호 1주는 집중교수시간을 의미.

고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경우 주당 수업시간이 34시간으로 정규 수업시간 이외 과외학습과 청년동맹 생활과 과외체육 등으로 편성되었다. 개정 이전에 비해 '김정은 혁명력사' 과목이 신설됐고, 세분화된 분과형의 교과목이 편성되어 초급중학교의 '자연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초급중학교에서는 없던 '당정책', '심리와 논리', '한문', '공업(농업)의 기초', '군사활동초보' 등의 과목이 추가되었다. 교과 영역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초급중학교와 같이 수학과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교과이며 영어교과의 비중도 높다.

[표 6-4]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육과정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	3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혁명력사		2	4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님 혁명력사		1/2	
4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력사	1	1	1
5	당정책	1주	1주	1주
6	사회주의 도덕과 법	1	1	1
7	심리와 논리			1주
8	국어문학	3	2	3
9	한문	1	1	1
10	영어	3	3	3
11	역사	1	1	2
12	지리	1	1	1
13	수학	5	5/4	4
14	물리	5	4	3
15	화학	3	4	2
16	생물	3	3	2
17	정보기술	2	1	1
18	기초기술	2주	3주	3주
19	공업(농업)기초			4
20	군사활동초보		1주	1주
21	체육	1	1	1
22	예술	1	1	1

*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 내용 재구성.

* 2학년의 '김정숙 혁명력사' 과목과 '수학' 과목의 주당 수업시간은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

고등교육 과정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교와 전공별로 다르나 대체로 정치사상 교과, 일반 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치사상 교과와 외국어, 체육 등 일반 교과는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일반기초 과정은 전공 학과의 특성에 맞게 지정한 과목과 전 대학에 규정된 공통 과목으로 구성된다. 전공기초는 전공에 필요한 준비 과목으로 강좌별로 결정되고 전공은 지정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다.

교과영역별 수업시간 비중을 보면 대학의 설립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교과 영역 비중이 다르지만 보통 정치사상 교과 25~35%, 일반 교과(외국어, 체육) 10~15%, 일반기초 10~40%, 전공기초 10~40%, 전공 10~15% 등이다.

최근 북한은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실용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통신 및 컴퓨터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에 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를 설치하여 IT 중심 학부로 대학 제도 개편을 시도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정보교육, 생명과학, 나노과학기술 교육의 강화를 위해 여러 학과 및 학과목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학과와 학과목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안을 개편하고 있다.

(2) 교육내용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 교육내용은 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으로 구분된다. 정치사상 교육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 과학기술 교육은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각각 가르친다. 체육 교육은 노동과 국방에 필요한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위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교육은 사상교육이다. 정치사상 교육의 목표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배양이다. 이에 따라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즉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과 김정은의

위대성에 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시절’이나 ‘혁명활동’과 ‘혁명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전공과 관계없이 ‘김일성주의 노작’, ‘주체철학’, ‘혁명역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에는 반미·반일 등 반제국주의의 투쟁과 대결을 강조하는 내용과 자본주의 문화유입을 경계하는 계급교양도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대미 적대 및 투쟁 의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미 교육과 함께 제국주의 사상 및 문화 침투를 배격하는 교육 강화, 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군 입대 장려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사상 이완의 방지를 위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리교육을 강조하면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외국어 교육과 과학기술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영어와 중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되었고 특히 영어의 비중이 높아졌다. 외국어가 영어로 교체되어 소학교 4학년부터 고급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가르치며 시수도 이전에 비해 확대하였으며 평양외국어대학의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다른 어학 전공자도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 교육을 문법에서 회화 위주로 전환시켜서 외국어 실기 능력과 일상 회화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어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과목 교재를 원서로 채택하는 한편 강의도 외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과학부문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공과목 외국어 교수 경연’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금성제1중학교 컴퓨터 수업

컴퓨터 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제1중학교와 제2중

학교에 컴퓨터반을 개설하고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 가운데 선발된 소수의 영재들이 컴퓨터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과외 교육 기관이다. 소학교·중학교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위해 건설된 일종의 학생회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을 ‘학생소년궁전’으로 부르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2,000석 규모의 극장과 도서관을 비롯해 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 등 각 부문의 소조실과 활동실 200여 개가 갖춰져 있다. 여기에 체육관, 수영장, 과학기술제품 전시장 등이 있다. 특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학생소년궁전과 함께 평양의 대표 청소년 시설로 특기가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재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 표방은 김정일 집권 이후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강조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교육, 특히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과 함께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발굴과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연속 선상에서 “지식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 양성”을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창조형 인재’ 양성에 대한 강조는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⁵⁸⁾

(3) 교육방법

북한의 교육방법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규정된 다섯 가지 사회주의 교육방법에 기초하고 있다.⁵⁹⁾ 첫째,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으로, 학생들 자신의 사고 활동으로 교수 내용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창발성’을 발전시키는 교육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이 교육 방법에는 설명을 통한 교육, 토론과 논쟁을 통한 교육, 문답식 학습을 통한 교육, 이론과 실기 교육의 조화를 강조하는 직관 및

58) 『교육신문』, 2014.4.3.

59)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 pp.389.~398.

실물을 통한 교육, 모범사례의 ‘…따라 배우기’ 방식의 긍정 감화 교육 등이 있다.

둘째,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다. 이는 기초기술교육과 실습을 결합하는 한편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의 답사와 생산노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셋째, 조직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의 강화다. 조직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은 학생들을 정치사상 측면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학생들은 학생소년단,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녹화근위대 활동을 하고 사회주의건설 지원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이다.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후대 교육을 전 사회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은 학교 이외에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 등 사회교양 시설들을 거점으로 한 정치사상 강연, 과학토론회 발표 모임 등 다양한 소조활동으로도 이루어진다.

다섯째, 취학 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행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과 품격이 어릴 때 형성되어 일생 동안 공고히 발전된다는 전제 아래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일생 동안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각각의 수준에 맞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확립·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북한은 단순한 지식 습득만이 아닌 지적 능력과 지식탐구 방법의 향상을 위해 지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암기능력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전환시켜 시험을 암기테스트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기 위주로 실시하는 한편 컴퓨터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사고능력 배양, 지능교육을 위해 학교마다 과목별 지능문제 만들기, 소논문 집필, 지능문제풀이 경연,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등을 실시하고 교수방법 강습, 과목별 교수교양경험 발표회, 교수방법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원들의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재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한 교사에게 ‘새 교수방법 등록증’과 ‘창안증’ 등을 수여하고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교수안 및 교안자료 전시회, 교편물 전시회, 소논문전시회’ 등의 방법도 활용하는 한편 우수 교원에게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는 김정일이 2003년 무봉중학교 현지도도를 실시한 것을 기념하여 우수 교원에게 칭호를 수여한 제도다. 또한 2006년부터 지역 간 경쟁으로 교육의 물적 토대와 질 향상을 위한 ‘모범교육군 칭호쟁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강조하고 있는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종합, 판단추리 능력과 상상력, 창조력, 언어 및 문자와 그래프 표현 능력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열람, 습작, 계산능력, 창조적인 학습능력 등이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다.⁶⁰⁾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육시설, 기자재 등 여건 마련이 관건이며 특히 정보기술 등 일부 과학기술 관련 교과 내용은 컴퓨터 등 첨단교육 시설이 없이는 정상적인 실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 교육에서 정치사상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과 창조형의 인재 양성은 병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북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북한체제가 원하는 구성원, 즉 체제순응형 인간을 육성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3. 학교생활

(1) 수업과 과외활동

북한의 교육시간은 학교별로 다르다. 소학교의 수업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으

60) 「교육신문」, 2012.11.29.

로, 과목당 40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중학교의 수업시간은 45분 수업에 초급중학교가 6시간, 고급중학교가 7시간이다. 대학은 하루 4강좌를 기준으로 하며 강좌당 9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보통 오전 8시에 시작한다. 소학교의 경우 8시에 1교시를 시작하여 12시 35분까지 5교시를 마친다. 3교시와 4교시 사이에 20분간 ‘업간체조’ 시간이 편성되어 있으며, 5교시를 마치고 1시간 30여 분 동안 점심시간을 갖는다. 중학교의 경우 점심시간 이후의 오후 교과시간이 있어 1~2교시가 더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교과운영 전체는 소학교와 유사하다.

대학생의 경우 등교 후 30분간 독보와 수업 전 검열이 실시되며, 8시부터 오전 강의가 시작된다. 오전에 3강의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점심시간이며 오후 강의는 2시에 시작하여 1강의를 하고 3시 반에 정규강의가 종료된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나 노력지원 등으로 수업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1~2강의를 더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교육의 과외는 실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체능 과목 위주로 교원들에게 불법 과외를 받기도 하지만 과외를 받는 학생의 비율은 지역·계층별 격차가 크다. 우리의 과외에 가장 유사한 것은 소조활동이다. 소조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원의 지도를 받는 보충수업이다. 소조의 종류로는 수학소조, 외국어소조, 예체능소조 등이 있다. 매일 방과 후 2~3시간 실시된다.

북한 학생들의 과외활동 특징은 노력동원과 조직생활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은 생산활동과 결합되어 있어서 모든 학생은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사회의무 노동은 1959년부터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다. 생산활동은 소학생이 연간 2~4주, 중학생은 연간 4~10주, 고등전문학생은 연간 10주, 대학생은 연간 12~14주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 기간이 길어진다.

북한의 주민은 모두 조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 7세가 되면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하게 된다. 만 14세가 되면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에 가입하고, 소년단 일원의 상징인 붉은 머플러 대신 왼쪽 가슴에 청년동맹 휘장을 달게 된다. 또한 청년동맹 가입 후 곧바로 교내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 들어가게 된다.



소년단 입단식

군사교육 훈련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해당된다. 대학생이 되면 준군사 조직인 대학교 교도대에서 6개월 간 군사 훈련을 받게 되며, 교도대 복무 졸업증이 없으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다. 북한의 대학은 그 자체가 군대식 대열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학은 연대, 학부는 대대, 학과는 중대, 학급은 소대로 각각 편성된다.

(2) 교원

북한에서는 교사·교수를 통칭하여 교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사용하며 대학 교원의 경우 교수라고도 한다. 다만 유치원 교사는 교양원으로 불린다. 일반 교원의 경우 임금은 노동자의 상급 수준을 받고 대학 교원은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는 등 북한에서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국가 혜택이 축소하고 학교관리와 운영비용의 상당 부분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면서 교원의 처우와 인식이 나빠졌다.

한편 교원들도 배급 중단에 따른 생활고로 교직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들은 직업 혁명가라고 하여 마음대로 조직생활에 빠질 수 없고 장사에 나서거나 퇴직할 수도 없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이다. 따라서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난 이후 교원은 인기 없는 직업으로 전락하였다.

도시 지역의 남성 교원들은 대부분 아내들이 장사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농촌에서는 땀겨울 농사로 연명하기도 한다. 미혼 여성 교원들은 질병이나 결혼 등을 빙자하여 휴직한 후 장사에 나서고, 기혼 여성 교원들도 직접 장사에 나서기 위해 절근하기도 한다. 또한 교원들은 몇 조로 나뉘어 시·군 당 교육부 모르게 7~10일 씩 교대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학교에 남은 교원들이 학급 몇 개를 맡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몇몇 교원들은 성적 조작, 입시 부정과 같은 불법행위나 비밀 과외학습 지도 등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가 저하됨에 따라 사범대 졸업생 가운데 출신 성분이 좋은 학생들은 보위부나 안전부 또는 시·군 교육기관이나 군 당 지도원 등 권력기관으로 진출을 선호한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대학을 나와야 한다. 교원양성 대학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고, 각 도에 1~2개가 설치되어 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중학교 교원, 교원대학은 3년제로 소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각각 양성한다. 이들 대학에서는 교원 충당을 위해 주간의 정규교육 이외에 통신·야간교육을 실시하며, 교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도 실시한다. 최근 의무교육 기간 연장에 따라 부족한 교원들을 충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 군별로 교원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다.⁶¹⁾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 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 등이 있으며 각 도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이 있다.

북한에서 교사의 주요 업무는 교육이지만 방과 후 학습부진 학생 또는 우수 학생의 학습지도를 한다. 월요일에 학습과 총화 시간,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분과 모임을 하며 나머지는 교재연구를 위한 시간이다. 중학교 교원의 분과 모임은 수업 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다. 이 모임은 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한 교원들은 갖가지 노동 현장에 동원되기도 한다. 철도 공사 지원, 주변농장 지원, 식수, 국토정리 등 시기마다 진행되는 노력동원과 봄·가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노력동원이 있다.

61) 「교육신문」, 2014.10.2.

제2절 문예정책과 문학예술

1. 문예정책의 목표와 창작원리

(1) 목표와 변천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시, 소설, 영화, 연극, 미술, 체육 등 모든 문화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용어이며 문예정책(문학예술정책)은 이와 관련된 북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문학예술의 목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세계의 건설과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양성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예관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자 온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수단”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문학예술의 목표를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참여, 지도자(수령)에 대한 충성심, 대남 적화통일의 정당성의 전파와 독려에 둔다. 창작가의 창조성·독창성보다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적 측면이 중시되는 것이다.

1960년대 이전 북한의 문예정책은 일제사상 잔재 극복, 사회주의 사상으로서의 의식개조, 새 사회 건설에로의 고무·추동에 중심을 두었다. 전쟁 기간에 문학예술은 전쟁 승리의 강력한 무기로 간주되었고 휴전 이후에는 계급교양, 공산주의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목표를 삼았다. 이때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전담 국가행정기관과 문예총(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개편되었고 사상투쟁과 군중문화사업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대중노력 동원운동인 천리마운동이 지속되면서 문예정책의 목표는 당의 유일사상과 주체사상으로서의 대중교양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학예술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고 천리마 운동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작품을 창조하고 보급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는 김정일이 제1의 문학예술혁명을 추진한 시기로 북한은 1970년대를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로 자찬한다. 이 시기 주체문예이론이 정립되었으며 김정일은 권력기반을 강화해나가면서 문학예술을 자신의 지도역량 선전과 주민들의 노력 동원에 적극 활용해 나갔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당중앙위원회에서 강조하자 ‘민족적’ 형식의 문학예술작품 창조가 중요시 되었다. 이어 1990년대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제2의 문학예술혁명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김일성 사망 이후 다시 체제수호·수령결사옹위를 강조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선군정치를 내세워 주민들의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체제 결속력의 강화를 도모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말경 선군혁명문학이 등장하여 ‘선군’이 문학예술의 지침이 되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가 대두되면서 문예정책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의 발전 촉구, 우리식 문예방침의 관철, 명작 창작 증대, 군중예술 활동의 활성화,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 분쇄 등을 제시했으며, 최근 제7차 당대회에서는 다시 ‘우리식 사회주의’와 속도전을 강조했다.

VI

(2) 창작원리

북한은 1967년 이전에는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⁶²⁾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동일하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당성, 인민성, 계급성을 창작의 원리로 삼았다. 그러나 1967년 이후 카프 계열의 문인을 숙청하고 김일성의 반제항일투쟁을 주제로 하는 ‘항일혁명투쟁’ 작품을 정통으로 내세우면서 주체문예이론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우위에 있는 창작원리로 선언한다.

62)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은 1920년대 공산주의 이론이 도입되면서 박영렬, 안석영, 김기진 등 문학·예술인들이 결성한 좌익 문예단체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충실한 동시에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

동시에 주요 원리로 종자론, 전형창조, 군중예술론, 속도전 등을 내세웠다.

주체문예이론

북한은 ‘주체문예이론’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점과 인민대중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차별된다고 설명한다. 주체사실주의가 인민대중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설명이지만 실제 북한은 인민의 주인에 수령을 위치시키며 수령 형상화에 초점을 둔다. 김정일은 주체문예이론의 확산을 위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학예술서를 출판했고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인들은 이 이론서를 따라 창작한다.⁶³⁾ 이와 함께 모든 작품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하고,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감성에 맞게 혁명사상으로 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의 호응도와 인기를 고려하여 대중성·오락성이 강화되고 있다.

종자론

북한 문예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종자론’은 주체문예이론에 기초하여 예술창작에 임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실천 강령이다. 북한은 종자를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설명한다. 작품의 소재, 주제, 사상을 밀접하게 하나로 통일시키는 원리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은 종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종자의 핵심은 사상성, 즉 수령의 교시와 당 정책에 맞는 것”으로서,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은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63) 김정일은 주체문예이론의 확산을 위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예술이론서들을 출판했다. 여기에는 「영화예술론」(1973), 「연극예술에 대하여」(1988), 「무용예술론」(1990), 「음악예술론」(1991), 「건축예술론」(1991), 「미술론」(1991), 「주체문학론」(1992) 등이 있다.

전형창조

북한은 문학예술인들이 “혁명의 주인공들을 형상화하여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당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은 문학예술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 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 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모범적 인간 전형을 형상화하고, 북한 주민들이 이를 따르기를 독려한다.

2. 문학예술의 실제

(1) 문학

북한은 문학을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반영하는 예술의 한 형태”로 정의 하며, 문학의 임무를 “주민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1967년 이전 북한문학은 프로문학의 비판적 계승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작품 창작에 초점을 두었지만 1967년 이후 주체 문학으로 바뀐다. 주체문예 이론이 대두된 197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다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의 작품들을 장편소설로 개작하였고, 후반에는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새로운 인간상을 형상화하였다. 생산성 향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과거 지주와 자본가 등 선악으로만 구분되던 인물을 모범·긍정의 인물들로 전환하며 노력영웅을 재현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는 북한 문학의 소재에 변화가 나타난다. ‘당 중앙(김정일)’의 지시로 김일성 가계에 대해 충성만 촉구하던 문학이 생활 속의 소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다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김일성 부자와 당에

대한 충성의 주제를 남녀의 애정의 줄거리로 엮어내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대표작으로는 <청춘송가>(1987년 남대현 작) 등이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 등 4개의 새로운 문학개념이 나타났다. 추모문학은 김일성의 사망을 추모하는 문학으로, 김만영의 서사시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가 여기에 속하며, 단군문학은 1990년대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태양민족문학은 1995년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나타난 문학 개념으로, 북한은 이를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위인상을 사상 예술적 경지에서 형상화”하는 문학으로 설명한다. 2000년에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을 잇는 개념으로 김정일의 선군혁명 업적을 문학작품에 반영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우애의 강조와 군이 선도하는 강성대국의 건설이며, 대표작품에는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인 <총대> 등이 있다. 또한 김정일 외 김일성, 김정숙 등 소위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 형상화를 위해 2009년 김일성의 업적 등을 형상화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인 <번영의 시대>가 출판되기도 했다.

이외 개인의 일상성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과 홍석중의 <황진이>와 같이 성애를 소재로 하는 작품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예술’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등 유머란에 간단한 유머가 게재되기도 한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김정일을 추모하는 추모문학이 주를 이루었고, 2013년부터는 <불의 약속>, <붉은 감>, <12월의 그이> 등 김정일의 후계자 승계를 합리화하는 작품이 제작되었다. 최근 김정은이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낸 후⁶⁴⁾ 문학계는 이상화 작품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주요 작품



황진이

64) 이 서한에서 김정은은 “창작가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명작 창작을 위해 열정을 다 바치지 않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한바 있다.(2014. 5.)

으로는 김일성의 업적 칭송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의리의 전역〉,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김일성이 남긴 일화를 추려서 묶은 책 〈태양 총서에 비긴 일화의 세계〉, 김정일의 업적을 서술한 ‘덕성도서’에 속하는 〈영화보급의 새 력사〉 등이 있다.

(2) 영화 ·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북한은 영화를 “화면영상으로 생활을 펼쳐보여주는 화면예술”로 정의하며, “인간생활을 극적으로 생동하고 감명깊게 펼쳐보여줌으로써 사상정서적 감화력이 크며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설명한다. 북한에서 “영화는 정치사상 교양의 힘 있는 수단이며 문화정서 교양의 강력한 무기”라는 김정일의 관심에 따라 다른 장르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관련 지침서는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이다. 「영화예술론」(1973년)에 따르면 “영화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깊이 있게 그릴 것을 강조하고 연출가는 사건의 논리적 연결보다 감정 자극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여러 인민의 단결과 협조에 바탕을 둔 집체적 창작을 중시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영화인들은 제작 과정에서 현실을 직접 체험하여 단순한 상상의 연기가 아닌 체험의 연기를 하도록 요구받는다.

1967년 이전 북한 영화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인간형과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을 재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67년을 기점으로 김일성이 1930년대 만주에서 공연했다는 작품을 영화화한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자위단원의 운명〉을 제작한다. 이 영화들은 북한에서 혁명영화로 불리며 이후 백두산 창작단을 중심으로 수령형상영화가 활발히 제작된다. 대표작으로는 1980년대의 다부작 영화인 〈조선의 별〉(1980년~1987년),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민족의 태양〉이 있으며 내용은 김일성과 김일성 가계의 항일투쟁이다. 실사와 허구를 혼용함으로써 영화를 통한 허구의 사실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는 잠시 서정성과 사실성을 반영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대표작에는 신(申)필름의 <사랑사랑 내사랑>, <소금> 등과 <보증>이 있다. <보증>은 북한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간부들의 부정부패·권위주의, 토대와 성분에 따른 인간 차별 등을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성을 강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소금



사랑사랑 내사랑

1990년대 사회주의권이 해체되자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자주성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을 부각시켰다. 또한 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1992년부터 다부작 예술영화인 『민족과 운명』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영화는 원래 10부작으로 계획됐으나 김정일의 지시로 50부작으로 늘어났으며 2002년 다시 100부작으로 제작이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는 ‘선군혁명 문학예술론’에 따라 선군정치를 반영하여 군인의 혁명정신을 실천하는 모범군인의 삶을 그린 <이어가는 참된 삶>, <그는 대좌였다> 등 군사 관련 작품을 제작했다. 또한 <한 녀학생의 일기>(2006년)와 같이 경제난 이후 북한 차세대의 고민을 다룬 영화도 제작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부모세대에 대한 북한 차세대의 반항과 거부감, 자본주의 요소 유입에 따른 갈등이 미세하게 드러나 있다.



한 녀학생의 일기

김정은 시기에 북한은 부르주아 영화는 “미국식 생활양식을 퍼뜨리는 전파자이므로 우리의 영화 영역은 물론, 우리 생활속에 0.001%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며 자본주의 방어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여 동료를 살리는 <최전연의 작은집>과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포성없는 전구> 등과 같은 작품이 제작되었다.



최전연의 작은집

텔레비전 드라마

최근 북한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비슷한 종류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텔레비전 소설, 텔레비전 연속소설, 텔레비전 연속극, 1편으로 끝나는 텔레비전 단막극, 텔레비전 영화가 있다. 텔레비전 영화는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로서 일반 예술영화와 달리 등장인물이 적고 상영시간도 길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북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중심 주제는 지도자 가계에 관한 것과 지도자와 함께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 과정이다. 그러나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도 생활 속에 드러나는 부부간 갈등이나 세대차이 등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갈등을 다룬 연속극 <엄마를 깨우지 말아>(3부작)와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을 소재로 한 <가정>(9부작)은 이전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다른 경향을 보여 준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속극 <따뜻한 우리집>(2부작), <우리 여성축구팀>(3부작) 등이 제작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텔레비전 연속극은 개인의 욕망을 버리고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요주제로 하며, 대표작으로는 <기다리는 아버지>(2부작)와 <소학교의 작

은 운동장》(3부작) 등이 있다.⁶⁵⁾



기다리는 아버지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3) 연극

북한은 연극을 “인간의 생활과 배우연기를 통하여 무대적 형상으로 펼쳐 보여 주는 극예술의 기본형태”로 정의한다. 북한에서 연극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까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했지만 1970년 이후 점차 그 중요성이 낮아 지고 있다.

북한 연극은 1967년 이전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천리마 영웅 등을 형상화하면서 인민대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1970년대부터 형식에서 양상을 달리한다. 1978년 6월 김정일의 지시 이후 연극에 음악·무용 등을 가미한 ‘성황당식’ 혁명연극이 개발된 것이다.⁶⁶⁾ 〈혈분만국회〉(1984년), 〈3인1당〉(1984년), 〈딸에게서 온 편지〉(1987년), 〈경축대회〉(1988년)가 〈성황당〉(1978년)과 함께 5대 혁명연극으로 지칭되는데, 북한은 김일성이 이 작품 모두를 1920년대 항일 운동을 하면서 창작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65) 〈기다리는 아버지〉는 경상유치원의 뛰어난 교육환경으로 피아노 신동이 콩쿨에서 1등을 한다는 내용으로 김정은의 ‘사회주의 문명국’에 부응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은 유망한 축구선수가 지방 소학교의 축구교사를 지원하여 차세대 육성에 힘을 쏟고, 마식령 속도로 일반 운동장을 잔디운동장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이다. 김정은을 위해 명예를 포기한 축구선수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66) ‘성황당식’ 연극의 특징은 ‘흐름식 입체무대미술’과 ‘방창’이다. ‘흐름식 입체무대미술’은 무대전환 시 암전 없이 무대가 움직임으로써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방창’이란 무대 밖에서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인1당



혈분만국회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담론과 함께 군인, 군인가족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김정일과 당을 위한 군인들의 영웅적 투쟁이며 희극성을 특징으로 한다. 2010년에는 경제선동에 중점을 둔 경희극 <산올림>이 제작되었으며 북한은 이 연극이 180여 회 공연에 21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고 선전한다. 또한 경제선동의 또 다른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2011년)는 김정일과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함께 관람한 작품으로 북한에서 사상성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극은 경희극과 같은 희극 공연이다. 대표작은 평양민속공원을 짓는 내용을 담은 <사랑>(2012년)이며 '김정일 애국주의 만세'의 구호가 등장한다. 공연의 특징은 화려해진 의상과 무대장치를 들 수 있다.



사랑



산올림

2016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국립연극단은 김정일의 현지도 30년을 기념하며 평양 국립연극극장에서 5대 혁명연극 중 <혈분만국회>를 공연하는 등 혁명연극의 재공연에 주력하고 있다.

(4) 음악 · 가극

음악

북한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북한은 스스로가 ‘노래로 고난을 극복하는 나라’라고 선전하듯이 북한에서 음악은 인민의 계급의식과 공산혁명 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양 및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북한은 우리와 달리 음악을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발간한 노래집의 절반 정도는 소련 민요와 중국풍의 국민 가요식 민요조 선율을 띠고 있고, 화음과 리듬보다는 가사와 멜로디에 치중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단조로운 화성과 창법에서 비성(鼻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는 송가(頌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⁶⁷⁾ 우리 고유의 전통 악기를 개조하여 서구의 현대악기와 합주하는 등 전통 음악의 양악화 역시 특징이 된다.

북한은 “계몽기 가요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깊은 감흥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 아래 ‘고난의 행군’ 시기이던 1990년대 중반부터 음악가동맹 주관으로 계몽기 가요를 발굴·정리했으며, 190여 편의 노래가 수록된 ‘계몽기 가요집’을 2000년에 펴내기도 했다. 북한은 <고향의 봄>, <눈물 젖은 두만강> 등 일제강점기에 부르던 계몽기 가요를 민족 수난의 그 세월 우리 인민의 정서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가요들이라며 편곡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선군정치에 부응하는 노래와 민족 개념을 강조하면서 전통민요의 발굴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이 강조되면서 ‘고난의 행군’을 거쳐 선군정치가 완성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선군장정의 길>과 민요풍의 대중가요 <강성부흥아리랑> 등이 발표되었다. 이외 북핵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강조하면서 조국애를 주제로 한 <내 나라의 푸른 하늘>, <결전의

67) 「조선문학예술년감」(1998)에 실려 있는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 ‘인민군협주단’, ‘만수대예술단’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76곡의 악보를 보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음악이 52곡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길〉 등도 널리 보급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모란봉악단이 2014년 9월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신작음악회를 진행했다. 노래에는 〈내 심장의 목소리〉, 〈고백〉 등이 있으며, 민요를 여성독창과 방창으로 부른 〈바다만풍가〉, 〈세월이야 가보라지〉 등이 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는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이 있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음악은 “정치에 복무해야 하며 정치가 없는 음악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는 김정일의 음악관을 따라 체제결속과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모란봉악단 공연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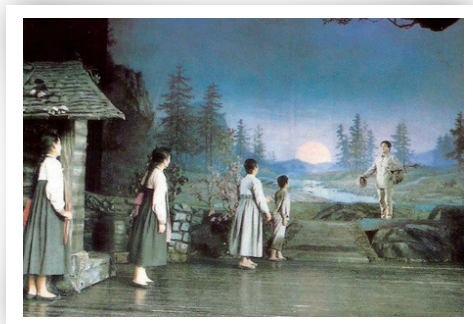


공훈국가합창단 공연모습

가극

북한에서 가극은 음악 분야의 극음악에 속하며 “노래와 음악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인간과 생활을 반영하는 극예술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오페라와 유사하지만 만 아리아나 레시타티브를 사용하지 않고 방창이나 무용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1971년 ‘피바다식 가극’의 시작으로 불리는 혁명적 민족가극 〈피바다〉가 제작되었고, 이후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가 〈피바다〉의 형식을 따라 제작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향하자 이에 부응하는 민족



피바다

가극이 창작되었고 최근에는 신작을 발표하기보다는 1970년대의 혁명가극 〈한자위단원의 운명〉, 〈피바다〉 등을 재공연하는 경향이 있다.

(5) 무용 · 교예

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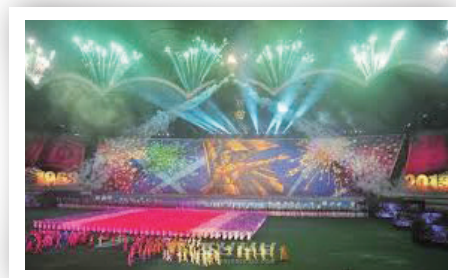
북한은 무용을 “인간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예술적 율동으로 반영하는 예술형태”로 정의하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민족의 정서와 색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고전무용의 춤사위가 동작의 기본을 이루지만 형식에서 신체미, 율동미와 더불어 힘, 규모, 조직을 과시하는 특징이 있다. 무용 소품에는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1967년 이전에는 최승희 무용연구소가 북한 무용의 본산으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의 지도 아래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이 중요시되면서 춤동작, 가락, 보법(步法) 등이 강조되었다. 북한이 자랑하는 4대 무용명작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은 모두 혁명무용으로 불리는 현대무용이다.

북한 무용의 특징은 전투성이 짙고 선동하는 동작을 중시한다는 점과, 1970년대부터 강조된 주체문예의 일환으로 무용 동작을 기록하기 위해 무용표기법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한글과 같이 자모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용 동작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실용성은 없어 북한에서조차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무용표기법



2013 아리랑 공연

김정일 시대인 2011년에는 <산울림 총각>, <장군님 그리는 마음> 등이 창작되었으며, 김정일이 북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초강도 강행군길을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 시대인 2014년에는 소위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기념으로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한 승리의 7.27>이, 2015년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에는 1만명 대공연의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이 공연되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집단체조(매스게임)를 공연예술 형식으로 만들어 국가기념일이나 국빈 환영식에 수만 명이 동원된 화려한 집체예술을 연출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2년 기간 중 9차례 공연된 <아리랑>을 들 수 있다.

교예

북한은 교예를 “기교동작으로써 인간생활을 반영하고 형상을 창조하는 예술형태”로 정의하며 “우아하고 아름다운 율동미와 세련된 조형미, 용감하고 씩씩한 운동동작의 조화미를 통하여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재능, 완강한 투지와 슬기를 보여주는 예술”로 설명한다. 우리의 서커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작으로는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조화시킨 <2인 그네>, <3인 그네>, <넬뛰기>, <뱃줄타기> 등이 있다. 또한 우리의 ‘마술’에 해당하는 요술교예가 있으며 동물의 재주를 수단으로 하는 동물교예가 있다. 북한의 교예는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받은 바 있다. 최근 김정은 시기에는 능라인민유원지에서 체력교예와 희극교예가 공연되었다.

(6) 미술

북한은 미술을 “현실에 대한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직관예술”로 정의하며,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생활 수단과 환경을 고상하게 꾸린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 미술에서 추상적 작품은 창작되지 않으며 북한의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당성·인민성·계급성을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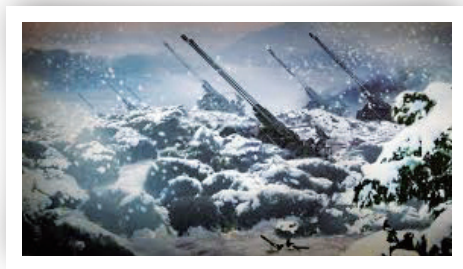
북한의 미술은 재료와 기법에 따라 회화, 조각, 공예, 수예, 조선보석화 등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넓은 분야인 회화에는 조선화, 선전화, 유화, 벽화, 출판화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조선화를 동양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서양화의 기법을 혼합한 것으로 설명하며 기법에서 색이 두텁지 않고 밝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화에서도 조선화의 기법을 응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대표작품에는 <보천보의 해불>,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만풍년>, <전후 40일만에 첫싹물을 뽑는 강철전사들> 등이 있다. 선전화는 포스터의 일종으로 정치선동을 중요시하는 북한에서 미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조각에는 애국열사릉 및 혁명열사릉에 조각된 군상이 대표적이며 공예에는 금속, 자개, 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다. 조선보석화는 조선화를 바탕으로 그 위에 보석가루나 색을 입힌 돌가루를 뿌리는 것인데 돌가루를 뿌리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로 인해 입체감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은 조선보석화의 원리가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설명하며 만수대창작사 산하에 조선보석화창작단을 설립하여 외화벌이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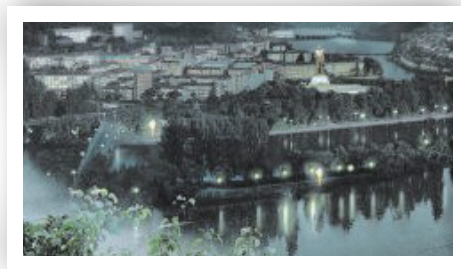


보석화

최근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의 역사를 그린 선군 8경이 있다. 선군 8경의 특징은 풍경화이지만, 순수자연이 아니라 김정일이 시찰한 <다박술 초소>, 김정일의 지도로 중소형발전소들이 건설된 장자강변 <장자강의 불야성>, 김정일의 구상으로 대지로 변한 밭 <한드레벌의 지평선>을 그리므로 전통풍경화와는 거리가 멀다.



다박술 초소



장자강의 불야성

제3절 언론

북한의 언론은 공산주의 언론관에 기초하고 있다. 공산주의 언론은 “인민을 교육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고무”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언론은 정치사회화의 도구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 할 때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⁶⁸⁾ 언론인은 북한에서 당에 충성하는 ‘문필전사’로 호칭되며, 2000년대 후반에는 ‘선군의 붓대’로 표현된다. 이들은 북한 내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언론은 북한의 체제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은 1995년 11월 언론 매체에 보낸 친필 서한에서 언론 매체가 사상 교양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 체제 결속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대중의 지도자 및 안내자로서의 존재 가치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에 부과된 일차 임무는 당 정책 및 혁명사업의 선전·옹호에 있다.

68) 『노동신문』 1만호 발간기념사설(2001.12.1.)

1. 신문 · 잡지

(1) 신문 발간 현황

북한은 다양한 매체 가운데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건설의 과업실천을 위해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⁶⁹⁾ 이와 같이 북한의 출판물은 인민대중의 집단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시되고 있다.

북한의 신문학 이론서인 「신문이론」에서는 북한 신문의 선전·선동 기능과 조직자기능, 문화·교양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급성과 당성, 인민성과 대중성, 진실성과 전투성을 제시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⁷⁰⁾ 이에 따라 북한의 신문은 노동계급의 이익 복무를 비롯해 당의 노선과 정책 선전에 충실해야 하는 계급성 및 당성을 띠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인민성과 대중성을 고수하며,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진실성과 전투성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신문은 모두 기관지로서 당과 내각, 각종 단체나 문화예술 선전 조직에서 발간하는 공식 매체다. 노동당 내 선전선동부의 감시·감독을 받는 동시에 내각 출판총국의 행정지도를 받아 제작·발간된다.

69)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296.

70) 배순재·라두림, 『신문이론』, pp.25.~26.



북한의 신문

북한의 주요 신문으로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비롯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평양신문’, ‘함북일보’, ‘자강일보’, ‘개성신문’ 등 10여 개의 지방지가 있다. 이 밖에 조선인민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과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 내각의 각 성에서 발간하는 ‘철도신문’,



‘건설신문’, ‘교통신문’ 등 기관지, 공장 및 기업소 발행의 공공신문, 각 대학 발행의 ‘대학신문’ 등이 있다. 북한에서 신문은 일반시사 종합신문과 부문별 신문으로 나뉘기도 한다. 일반시사 종합신문은 정치, 경제, 문화, 정세분야의 시사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신문으로 ‘노동신문’을 의미한다. 부문별 신문에는 사회생활과 인민경제 중심의 신문으로 ‘체육신문’, ‘문학신문’, ‘교육신문’ 등이 있다.⁷¹⁾

이상 북한의 신문들 가운데 ‘노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위원회에서 발간되는 지방지 등은 일간지다. 기관별로 발행하는 신문들은 격일간지나 주간지로 발행되며 발행 부수도 많지 않다.

북한은 신문 기사의 종류를 제시되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다루는 사설, 사상적·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밝히는 논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공동사설을 쉽게 풀이한 해설, 정치문제들의 의미를 다루는 정론,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주장하는 논평, 단평, 정세해설, 사론, 단론, 관평, 덕성기사, 영도기사 등 총 29가지로 분류한다.⁷²⁾

(2) 주요 신문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노동당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노동신문사가 발행하는 북한의 대표 신문이다. 1945년 11월 1일 ‘정로’라는 제호로 출발했으며, 1946년 9월 1일 신민당 기관지인 ‘전진’을 통합하여 현재의 노동신문으로 개칭되었다.

노동신문은 대내외 주요 현안 및 어떤 계기가 발생했을 때 정론이나 사설 등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총 6면 내외로 발행되는 조간신문으로 지도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건을 다룰 때에는 9~10면까지 발행하기도 한다. 특징은 김

71) 『광명백과사전 7: 교육·언어·출판보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72) 『광명백과사전 7: 교육·언어·출판보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의 이름이나 교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글자보다 눈에 띄도록 크고 진하게 표기하고 있는 점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관련 기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1면에 실리며, 1면에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모두가 실릴 수 있다. 또한 노동신문은 철저한 검열을 거치기 때문에 철자법 등에서 오류가 없으며 배포는 국가기관이나 당원으로 한정된다.

민주조선

민주조선은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로서 1946년 6월 4일 창간되었다. 1945년 10월 15일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직속 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한 이후 이를 개편하여 1946년 6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1948년 9월부터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기관지로 발행되고 있다.

민주조선은 “국가, 경제기관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 당정책 관철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⁷³⁾ 민주조선사에서 대형 판으로 주 6회 발행되며 행정 실무와 관련된 문제 등이 많이 실리고 정권 기관에서 채택한 결정 사항이나 정령·법령 등을 상세하게 취급한다. 편집의 경우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1면과 2면의 내용은 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의 정치지도 동향과 사진, 이들에게 보내온 외국의 축전이나 편지 내용, 우상화 선전 시·수필 등을 게재하고 있다. 통상 4면으로 제작되고 화요일 및 금요일과 특별한 날 등은 6면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노동신문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신문이다.

청년전위

청년전위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기관지로서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창립과 함께 ‘민주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

73) 『조선대백과사전 10』,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97.

후 1964년 5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 대회에서 연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바꾸면서 제호도 ‘노동청년’으로 바뀌었다. 1996년 1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대표자회에서 명칭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변경되면서 이 단체의 기관지인 ‘노동청년’도 명칭이 ‘청년전위’로 바뀌었다.

청년전위는 청소년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며,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여 이의 완수를 위한 일에 헌신하도록 권고하고, 청소년들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정신을 지니도록 교양할 것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청년전위의 기사 내용은 ‘노동신문’에 실린 여러 문제를 청소년과 결부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3) 잡지

‘문학신문’은 1956년에 창간되었으며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문예이론을 해설하고 문학예술 부문의 작품을 소개한다. 주1회 4면으로 발간된다. ‘조선예술’은 1967년에 창간되었으며 예술부문의 종합잡지이다. 예술부문의 전문가, 예술인들, 예술소조원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배포된다. 초기에는 연극과 무용부문의 예술잡지로 출발했지만 1968년 4호에 ‘조선미술’, ‘조선영화’, ‘조선음악’이 통합되었으며 월간 발행된다.

‘조선문학’은 1946년 ‘문화전선’으로 창간되어 1947년 ‘조선문학’으로 발행되다가 1948년 ‘문학예술’로 발행된다. 이후 1953년 ‘조선문학’으로 다시 발행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이다. 문학전문가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간 발행된다.

‘조선영화’는 1957년 창간된 영화예술잡지로 영화예술인가 영화애호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1968년 3호 이후 ‘조선예술’로 통합되었지만 1984년 다시 ‘조선영화’로 속간되었다. 최종적으로 1997년 다시 폐간되면서 ‘조선예술’로 통합되었다.

2. 방송

방송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보도하며,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방송사업 체계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나 통일전선부에서 방송업무 자체를 지도·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기재 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업무 일체를 계획·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방송기능과 규제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내각 문화성의 산하기구로서 문화성이 각 방송국의 시설, 기재의 관리 및 일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방송의 내용이나 방송국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는 당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조직 편제상으로는 내각에 속해 있으나 위원장은 노동당에서 임명하고,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의 방송체계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 각 도(직할시) 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군 방송위원회가 있으며 하부기관으로 유선방송중계소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앙조직으로는 라디오총국, 텔레비죤총국, 문예총국이며 직속으로 방송예술단과 방송학원을 둔다.

VI

북한의 국가권력

(1)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에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유선방송’, 대남방송인 ‘평양방송’ 등이 있고 대외 방송으로는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외국어로 서비스한다. 북한을 대표하는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 방송으로,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의 ‘조국개선환영 평양시군중대회’를 중계 방송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제 치하에 있던 평양방송국을 모체로 출발하여 1967년 12월 제1중앙방송(대내)과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으로 분리됐다가 1972년 11월 제1중앙방송은 조선중앙방송,

제2중앙방송은 평양방송으로 각각 개칭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양방송’은 1967년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돼 제2중앙방송(대남 및 대외용)으로 출발했으며, 1972년 11월 ‘평양방송’으로 개칭하였다. 뉴스 보도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의 보도, 사설, 논평, 노선기사 등을 대부분 인용 보도하고 있다. 1989년부터 시작한 ‘평양FM 방송’은 음악을 통한 대남선전용 방송으로서 북한의 혁명가곡과 베토벤, 브람스, 비발디 등 클래식음악을 방송하고 있다.

북한에는 ‘제3방송’으로 불리는 독특한 유선방송이 있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우리의 케이블TV와 달리 전 가구를 유선방송망으로 연결,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유선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 도·시·군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중앙방송을 중계하고 있어서 일종의 사내방송이나 대학방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텔레비전 방송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조선중앙텔레비죤’을 비롯하여 ‘교육문화텔레비죤’, ‘만수대텔레비죤’ 등이 있다.

북한의 대표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주체사상과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1963년 3월 ‘평양방송국’으로 개국하여 1970년 4월 ‘조선중앙텔레비죤’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후 1974년 4월 15일 김일성 62회 생일을 계기로 컬러 방송을 시작했으며, 1999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54주년을 맞아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조선중앙텔레비죤의 방송진행 시작 시간은 평일(월~토) 5시, 일요일과 명절에는 9시부터였는데 2013년 8월부터 평일 오후 3시, 일요일과 명절에는

9시로 변경되었다. 현재 주요 프로그램은 김정은 선전프로그램이며 영화방송 시간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기를 집중 방송한 바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저녁 8시 뉴스시간에 30대 안팎의 젊은 앵커들이 등장하여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기도 한다.⁷⁴⁾

‘교육문화텔레비죤’은 1997년 2월 16일 김정일의 55회 생일을 맞아 신설한 텔레비전 방송으로 평양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한 대내 방송이다. 1983년 12월 개국한 ‘만수대텔레비죤’은 평양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및 명절에 한해 예술 공연, 영화, 스포츠 등을 주로 방송하고 있어 평양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북한 텔레비전 방송은 주민의 사상교양을 위한 선전·선동 성격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드라마를 방송 황금시간대(오후 8:30~9:30)에 편성하는 한편 작품 소재와 내용도 당 및 수령과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 이외 남녀문제, 주민생활, 사회갈등 해결 등의 문제를 다루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2월 9일 부터 기존의 표준화질(SD) 방송을 중단하고 고화질(HD) 방송으로 완전 전환했다. 2001년부터 태국 통신위성 타이콤5를 통해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을 아시아 전역과 아프리카 등지로 송출하고 있다.

7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자료.

VII

북한사회와 주민생활

제1절 사회계층 구조

제2절 사회통제 방식

제3절 주민생활 변화와 일탈

제4절 주민 인권침해



Key

Point

01

북한사회는 핵심계층·기본계층·복잡계층을 포함한 3계층 45개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계층 구조는 출신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규정된 정치적 계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북한은 이러한 계층구분을 기반으로 주민 대상 사회통제를 강행하고 있다.

02

북한의 사회통제는 사상이념적·정치조직적·경제사회적·법적 통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사상이념적 통제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정치조직적 통제는 정치조직생활 참여를 통해, 경제사회적 통제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통제는 당·인민보안성·국가보위성 등의 권력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03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 대부분은 자립적 생존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경제활동이 가계경제의 주축을 이루면서 집단주의·수령제일주의 가치관은 개인주의·가족중심주의·배금주의로 변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이탈이 증가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주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04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억압하고 침해하는 인권 후진국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권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주민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제1절 사회계층 구조

사회계층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위가 구별되어 같은 구성원끼리 묶여지는 서열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한 사회 안에서 구별되는 인간 집단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면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유일체제 구축과정에서 출신성분과 당성에 기초하여 정치적 성격을 띠는 사회계층을 분류하였다.

1. 사회계층 형성과정

북한은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집단주의와 수령제일주의를 강조한다. 집단주의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하에 개인보다 사회와 집단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함을 담고 있다. 수령제일주의는 지도자 중심의 일심단결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수령·당·대중의 통일체인 삼위일체)’, ‘사회주의 대가정론(부부-수령, 모부-당, 자녀-대중)’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의 사회계층은 체제 유지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규정된 정치적인 계층이다. 북한체제에 의한 사회계층 구분은 1950년대 중반 종파숙청 사건에서 발단되었다. 종파의 여독을 뿌리뽑고 1인 지도자 중심의 유일사상체계를 구축할 목적에서 시작된 주민등록 조사는 197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다. 그 결과 3계층(핵심계층·동요계층·복잡계층) 51개 부류가 완성되었고 이후 ‘주민요해사업’, ‘외국귀

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북한의 사회계층 구조는 불법월경, 행방불명 등 각종 일탈행위를 반영하여 3계층 45개 부류(핵심계층·기본계층·복잡계층)로 재조정되었다.⁷⁵⁾

[표 7-1] 북한의 주민 출신성분 조사와 계층구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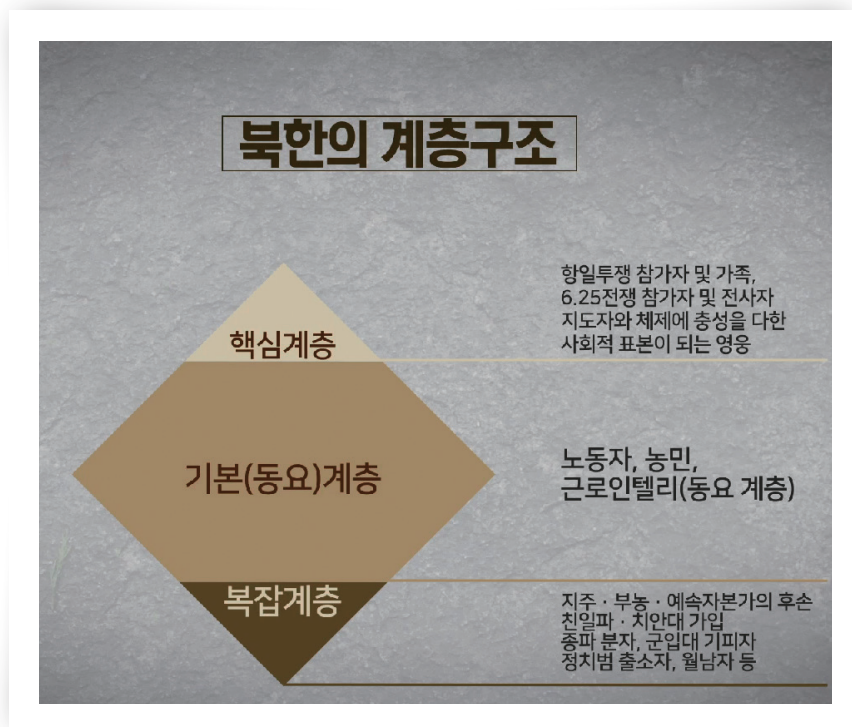
구분	시기	내용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주민 재등록 사업	1966.4.~1967.3.	100만 적대위의 사상 결속을 위한 주민 성분 분류(직계 3대, 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 부류 구분 사업	1967.4.~1970.6.	주민 재등록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 요해 사업	1972.2.~1974.	남북대화 관련 주민 동태 조사·파악,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 사업	1980.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해 갱신하면서 불순자 색출과 통제 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0.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 자료로 체계화
복송 재일교포 요해 사업	1981.1.~1981.4.	복송 교포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 자료로 체계화
주민증 갱신 사업	1983.11.~19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 문건 정비
주민 재등록 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 신상카드 작성
공민등록법 채택	1997.1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
공민증 갱신사업	1998.2.~1998.10.	수첩 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

북한의 핵심계층에는 항일투쟁 참가자 및 그 가족, 6.25전쟁 참가자 및 전사자

75) 통일연구원, 『2009북한개요』, p. 331.

가족, 반농·고농·노동자 출신 및 가족, 영예군인, 접견자, 공로자, 지도자와 체제에 충성을 다한 사회적 표본이 되는 영웅 등이 해당된다. 기본계층은 노동자·농민·근로인텔리를 기본 구성원으로 하며 이 중 근로인텔리는 동요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식인들은 외부사조에 쉽게 현혹될 수 있고, 다른 체제를 선택하였을 경우 적응력이 높다는 근거에서이다. 복잡계층에는 지주·부농·예속자 본가의 후손, 친일파·치안대 가입자와 그 가족, 종파분자, 군입대 기피자, 정치범 출소자, 월남자 가족 등이 포함된다.

북한이 사회계층을 구분해 놓은 것은 반당·반혁명 색채를 가진 인물을 제거·격리시키고 유일독재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를 강행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사회계층 구분은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출신성분에 따라 대학진학·교육혜택·직업배치 및 승진이 결정되어 이를 통한 소득 격차의 발생, 생활수준에서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평등을 주장하는 북한 사회주의 성격에 위배된다.



2. 사회계층 구조의 특징

북한이 규정해 놓은 사회계층은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어 수직적 이동이 제한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핵심계층이었던 주민이 과오를 범하여 하위계층으로 하락되는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의 이동은 가능하나,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의 상승은 극히 드물다. 지도자를 접견하였거나, 화재 혹은 수해 현장에서 지도자의 초상화를 목숨으로 보위하였을 경우, 국위선양 및 국가건설현장에 거액을 기부하였을 경우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복잡계층에서 기본 혹은 핵심계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북한주민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북한 사회의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출신성분과 ‘당성(黨性)’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은 소득·교육·직업 수준 등 객관화된 요소로 측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교육 불평등이 취업 불평등으로 이어져 다시 소득 불평등을 낳게 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요소의 불평등은 인위에 따른 성분 정책의 결과로 다르게 나타난다. 핵심계층일수록 고등교육과 특수교육의 기회가 많이 부여되고, 권한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또한 국가분배에서도 특혜를 받게 되므로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적 계층구분은 교육 및 직업 불평등에 의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낳게 된다.

둘째, 귀속지위(ascribed status)에 근거한 폐쇄체제이다. 이로부터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며 부모의 권력에 의해 자녀의 간부 등용이 결정된다. 핵심계층에 속하는 주민은 사상범이나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권력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대부분 그 지위가 대물림된다. 반면에 출신성분이 나쁜 이유로 복잡계층에 포함된 주민은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핵심·기본계층으로의 진입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 중 정치범죄에 연루되면 연좌제 징계에 의해 아오지 등의 이주지역에 추방되어 탄광노동자·협동농장 농민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불합리한 정치적 불평등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셋째, 소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주민 사회통제 수단이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회계층 구조는 북한체제를 지탱시키는 사회통제 목적에서 절대 다수 북한 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의 핵심 기득권을 보호해 왔다. 3계층 45개 부류의 계층구분은 북한체제의 주민대상 사회통제를 계층에 따라 사상이념적·정치조직적·경제사회적·법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

넷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계층 재구조화 현상이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자립적 생존방식이 북한사회 전반에 고착되면서 사경제활동에 의한 부의 축적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의 이동이 불법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핵심계층 중 최상위 계층은 선물정치 혹은 배급제의 혜택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나 나머지 계층의 구성원은 자립적 방식으로 생존해야 한다. 특히 중견간부들 중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가계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면 권력남용·부정부패·뇌물수수를 생존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부분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과정에 복잡계층에 속한 신흥부자의 신분세탁(출신성분이 반영된 주민등록 서류 위조)에도 동조하게 된다. 복잡계층의 주민들 속에서 부를 축적한 이후 자녀의 대학입학·직업배치를 위해 출신성분을 교정하여 상위계층으로 등극시키는 사회계층 재편 현상은 부분적이지만 주목할 만한 사회 변화이다.

북한 사회의 계층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출신성분과 당성에 기초한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계층구분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의해,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재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제2절 사회통제 방식

북한의 사회통제는 사상이념적·정치조직적·경제사회적·법적 통제의 방식으로 시행된다. 사상이념적 통제는 조기교육 단계로부터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정치조직적 통제는 의무적인 조직가입과 정치조직생활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경제사회적 통제는 직장생활 영역에서, 법적인 통제는 권력기관을 활용한 징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상이념적 통제는 주민 의식 속에 복종 및 충성의식을 잠재시키는 과정이며, 조직적·경제사회적 통제는 사상교육을 통해 주입된 지도자의 사상이나 체제이념이 실생활에서 체질화되는 과정이다. 법적인 통제는 위의 세 단계에서 낙오된 대상에 대한 물리적 징계를 시행하여 두려움 및 공포의식을 내재시키는 과정이다.

1. 사상이념적 통제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이념적 통제를 지속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통제방식은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북한체제는 인간 본연의 자율적 속성보다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식·통치이념·체제동조의식이 고착되도록 사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시행된다. 이 과정에 인간본연의 자율적 속성은 배제되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격화, 체제동조의식이 내면화 되게 된다.

조기교육단계에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우상화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단

계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이상화와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자긍심, 체제수호정신 함양이 기본으로 주입된다. 우선 탁아소(어린이집)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지도자의 은혜를 주입시키는 감성교육이 이루어지고 각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점심식사·간식·선물 사탕과자 등)이 지도자가 베풀어준 것이며, 지도자가 없이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식시켜 절대적인 이상 심리를 갖게 하는 것이 이 단계 사상이념적 통제의 목적이다.

학교 입학 이후 소학교·중학교 과정에서는 사상이념적 통제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된다. 전체 교과목의 10~30%는 정치사상과목으로 지정⁷⁶⁾되어 교육되며, 학교생활 준칙을 제시하여 아침 독보시간, 오후 방과 후 시간, 조직생활총화 시간에 사상이념이 주입되도록 규제하고 있다.⁷⁷⁾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이상화, 애국주의, 반세계급교양, 북한식 통일교육 내용을 주입시키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지도자를 신격화하기 위한 교육에서는 왜곡된 역사적 내용이 주입되고 있다.⁷⁸⁾

학교 졸업 이후 사회생활과정(대학, 군대, 직장 등)에서 시행되는 사상이념적 통제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매주 1회 정치사상학습, 매월 2회 강연회 참석에 대한 통제로 이루어진다. ‘김일성-김정일주의’ 통치이념의 정당성,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준수, 3관(혁명적 수령관·조직관·인생관) 정립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지도자와 체제에 맞게 변형되도록 만들고 있다.

북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가정에서의 정치사상교육까지 포함한다. 이는 부모의 충성의식, 계급의식 등이 가정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투영되는 과정이다. 북한은 ‘가정혁명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회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76) 주요 정치사상과목으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김정은 혁명역사’ 과목이 있다.

77) 구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정치사상교육은 매일아침 학교생활의 첫 순서인 독보시간에 365일 카드(1년 365일 최고지도자가 베푼 덕성자료를 일순으로 기록한 자료)를 낭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편, 수업시간에 주입받는 정치사상교육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충실성의 발현(초상화 보위, 동상 청소, 충성의 외화벌이 등)도 병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78) 대표적으로 8.15해방이 20여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김일성의 항일혁명업적에 의한 결과이며, 6.25전쟁은 미제의 추종을 받은 남한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는 교육내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경제난 이후 주민의 자립적 생존방식 고착, 시장 확산에 의한 외부사조 유입, 주민 가치관 변화로 가정에서의 사상교육은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져 사상이념적 통제의 효과는 저하되고 있다.

북한이 사상이념적 통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주민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변형시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의 삼위일체(사회정치적 생명체), 사회주의 대가정(지도자는 아버지, 당은 어머니, 대중은 자녀)으로 결속시키려는 데 있다.

북한체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사상이반 및 외부세계 동경, 체제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더욱 강행되고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념 고취와 5대 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 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 교양, 도덕교양) 강화는 김정은 체제의 사상이념적 통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2. 정치조직적 통제

북한의 사회통제 방식 중 정치조직적 통제는 사상이념적 통제를 통해 주입된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실생활에서 체질화되도록 통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조직적 통제의 주된 목적은 의무적인 정치조직 가입 및 조직생활 참여를 통한 충실성 검증에 있다.

[표 7-2] 북한의 정치조직

단체명	가입 대상	조직 규모	구성 방법 및 활동	창립일
조선소년단	소학교 (2학년 이상)	약 300만 명	소학교 2학년에 순차적으로 가입 조직생활, 토끼 기르기 등 과업 수행	1946.6.6.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14~30세 학생, 군인, 사회인	약 500만 명	당원을 제외한 해당 연령층 · 사상교양, 당 후비대 사업, 경제건 설, 통일 및 대남 정책 지원 등	1946.1.17.
사회주의 여성동맹 (여맹)	여성: 31~60세	약 20만 명 ⁷⁹⁾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 당후비대 사상·교양·노력동원	1945.11.18.
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협동농장원: 31~65세 (여: 60세)	약 130만 명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상교양, 농촌사업지도	1946.1.31.
직업총동맹 (직총)	노동자, 사무원: 31~65세 (여: 60세)	약 160만 명	노동자, 사무원, 직장단위 조직 9개의 산별직업동맹 사상교양, 기술 습득, 자력경쟁 지도	1945.11.30.

*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p. 53. 재구성

주민의 정치조직 가입은 만 7세(소학교 2학년)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직 가입의 의미는 최고지도자가 주는 정치적 생명을 조직을 통해 부여 받는다는 데 있다. 북한체제는 정치적 생명은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과 다르게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영생한다고 교육시켜 왔다. 그 일환으로 불붙는 교실이나 열차에 뛰어들어 초상화를 보위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 보유자로 당 사자와 가족에게 지도자의 특별혜택을 베풀어주고, 전국적 모범사례로 영웅화시키고 있다. 정치조직 가입에서 누구든 선택권이 없으며 만 7세부터 60~65세까지 조직구성원으로 의무적인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북한이 의무적인 정치조직생활 참여를 통한 조직적 통제를 강행하는 것은 이 과정을 충실성 검증단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주입된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의식, 체제동조이념, 체제수호의식이 실생활에서 발현 되려면 조직적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79)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가계경제로 회귀하면서 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확한 통계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아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상학습, 조직생활총화 참여는 충실성 검증의 주요 평가 항목이다. 특히 소속된 조직에서 생활총화를 통해 한 주 동안의 자신의 생활을 대중 앞에서 반성하고, 조직구성원 중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해야 하는 과정은 조직 생활을 하는 동안 평생 반복된다. 북한체제가 규정한 상호비판의 의미는 ‘혁명적 동지애’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비판과정이 인간본연의 자율적 속성과 상대에 대한 배려정신을 파괴시키고 불신의식을 증대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로 변용되어 왔다.

주민의 정치조직생활은 노동당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조직생활평정서⁸⁰⁾에 의한 정치적 평가, 화선입당 및 표창장 수여를 통한 우수자 평가, 조직생활 불참자에 대한 조직적 징계 및 법적 징계⁸¹⁾를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의 정치조직생활 의무화를 통한 조직적 통제 방식은 지도자 중심의 일심 단결 공고화를 위해 북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충성심이 실생활에서 발양되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통제기제이다.

3. 경제사회적 통제

북한의 경제사회적 통제는 직장생활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직장생활 통제는 직업배치로부터 시작하여 직장출근, 직업 종사 태도,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생존수단 규제를 통해 시행된다.

북한은 만 18세 이상 노동능력을 가진 주민에게 직업을 배치해주고 생산노동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국에 의한 직업배치는 고급중학교 졸업 이후 대학진학 및 군 입대를 제외한 모든 졸업생에게 해당된다. 대학졸업생과 제대군인도

80) 조직생활평정서는 조직생활을 하는 모든 북한주민에 한하여 작성되어 평생 그 당사자의 정치사상행태를 규정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문서로 6개월에 1회씩 조직생활을 끝내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작성되어, 대학진학 및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81) 당·인민보안성·국가보위성 합동으로 전격적인 조사를 통해 사상투쟁회의 대상을 규정하고, 교정이 안되는 경우 혁명화(탄광·농촌), 법적(정치범수용소, 노동단련대, 교도소)징계로 처벌한다.

향후에는 직업배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국에 의한 일률적 직업배치는 적성 및 전문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불평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한의 직업배치를 통한 경제사회적 통제는 출신성분과 부모의 직책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 제30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직업배치 시 개개인의 소질 및 희망 보다는 출신성분이 먼저 고려된다. 직업배치의 이러한 차별화는 근로소득(생활비)⁸²⁾ 격차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직장생활을 통한 북한의 경제사회적 통제는 직장 출근 집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존수단 압박을 통해 시행된다. 직장 출근 보고는 북한 전역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집계되어 직장 미출근자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출근 일수에 따라 근로소득 및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식량배급표가 공급된다.

[표 7-3]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 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 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 근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 보장자, 전업 주부(가두여성), 유치원생
8급	200g	1~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미만의 유아

82) 생활비는 북한식 경제학 용어로서 매월 근로자가 받게 되는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경제난 이후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어 주민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식량공급표는 큰 의미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직장생활 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보수 노동 등의 징계로 통제하며 자율적으로 직장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직장의 조정 및 이동은 합법적인 이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불순분자의 추방, 도시인의 농촌 이주(평양시 거주 남성이 농촌지역의 여성과 결혼시 농촌 연고로 지방으로 이주)와 같은 구조 조정의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산근로자의 생산현장 이탈, 뇌물을 주고 ‘안면관계’를 이용하여 직장을 비합법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제하는 계층과 통제받는 계층의 생존을 위한 결탁으로 사회통제 이완이 현실화되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직장 이동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직장생활을 통한 경제사회적 통제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사사(私事) 여행’에 대한 통제이다. 북한은 여행증 없이 타지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행증명서 발급은 1차적으로 해당 직장의 정치조직 책임자, 직계 상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인민보안성 산하의 2부(여행증 발급 담당자) 부원(지도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 시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제75조)하였지만 여전히 직장에서의 승인 및 여행증명서 발급, 타지에 서의 90일 이상 체류 금지를 통한 경제사회적 통제 방식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생산현장에서 노동생산능률을 높였을 경우 표창을 통해 모범근로자로 표본화하여 이를 충실성의 척도로 강조하는 경제사회적 통제도 병행하고 있다.

4. 법적 통제

(1)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북한은 지도자의 사상과 당의 요구, 정치조직적·경제사회적 통제에 불복종하거나 불성실하였을 경우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하여 엄중 처벌하고 있다.

정치범죄는 특별독재대상구역 감금(완전통제구역으로서 정치범수용소, 정치범관리소)으로 징계하고 특별히 반정부 음모를 시도하였을 경우에는 8촌까지 연좌제를 적용하는 정적 제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일반범죄의 경우 교도소, 강제노동단련대에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체제이탈자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행 목적으로 체제를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정치적 범죄자로 분류하여 위에서 전술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며, 생계형 체제이탈의 경우에는 기존의 강제노동단련대 3~6개월의 수용에서 2~3년 교도소 감금으로 그 수위가 높아졌다.

북한이 규정한 일반범죄는 경제범죄(경제질서를 위반한 생계형 범죄, 금전적 이득 취득을 위한 고리대금업죄, 절도죄, 밀수죄, 생존 목적의 북한이탈죄 등), 공공질서 위반죄(매춘, 도박, 약물중독, 술주정, 교통질서 위반, 풍기문란 행위, 수정주의 날라리풍 또는 한국드라마 및 외부사조 유포 등), 권력남용죄(권한을 뇌물수수·부정부패·물자 착복 수단으로 활용했을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공안통치를 선대 지도자 시기보다 더욱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 2014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국경지역 주민들의 밀수, 남한과의 휴대전화 통화, 탈북과 도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시켰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인접 국경지역 주민들의 체제이탈을 막기 위해 주민들 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통제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2) 권력기관을 활용한 통제

북한의 법적 통제는 주요 권력기관인 노동당,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을 통해 3중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부말단 통제단위로서 인민반을 작동시키고 있다. 노동당은 정치생활을 통제하는 기관이며, 인민보안성은 직장생활 및 사회주의 준법 위반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국가보위성은 반정부 음모 및 정치동향, 사상이반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북한의 노동당은 헌법에 우선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자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를 산하 권력기관과 주민사회에 하달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제기관이다. 북한의 각 도(직할시)·특별시에는 공장·기업소, 학교를 비롯한 기관별로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고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가 유일영도체계에 따라 중앙집권적으로 하달된다. 당의 명령을 집행하는 하부 조직으로는 시(구역)·군 당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당원 5~30명으로 구성된 당세포가 있다.

북한의 노동당은 그 외곽단체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을 두고 있다. 당의 영도는 외곽단체에 대한 사상이념적·조직적 지도를 통해 전체 조직구성원에 대한 사회통제를 동반한다. 북한에서 당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의해 어머니로 지칭된다. 그러나 어머니당으로서의 기능보다 정치조직을 통한 사회통제의 기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동당은 당원을 비롯한 만 7세 이상의 정치조직에 가입한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당 조직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제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사회통제 기관에는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감독하는 정치사찰 기관으로서의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있다. 이러한 각종 기관은 주민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반당·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국가보위성은 형사재판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 전담 기구로서 정치사상범의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절차 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김정은 호위, 각급 행정기관 내의 수사, 사

회단체·공장·기업소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 도청, 비밀문서관리, 장병 동태 감시는 물론 3대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야기되는 저항 요소를 척결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 보위성은 중앙에서부터 도·시(구역)·군 및 리·동, 기관·기업소 및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정보원을 파견하여 주민 정치동향 및 사상이반을 감시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공공질서의 유지·강화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체제이탈, 사상불신, 외부사조 유포 등을 감시·적발하여 처벌하고, 개인의 신원조사와 사생활 통제를 한다. 인민보안성은 각 도와 시(구역)·군에 보안서를, 그 산하에 분주소(파출소)를 두고 있다.

북한 사회의 통제기관 중 하부말단 단위는 인민반이다.⁸³⁾ 인민반은 북한의 읍·동 사무소 소속에 있으며 20~3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반을 통한 북한의 사회통제는 인민반장이 통제자 역할을 담당하여 개별적 가정에서의 체제이탈, 경제생활 수준 등을 상시 감시하며 노동당과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에 보고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83) 1958년~1973년까지 실시되었던 '5호담당제'는 인민반이 출연되기 전 북한주민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였으며 '5호담당제'는 북한의 전 세대를 5호씩 나누어놓고 이 중 총성가구 1가구를 배속시켜 다른 가구 주민들의 사상동향 및 비리를 감시·통제하는 제도였다. 이는 김일성 지시에 의하여 1973년 인민반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3절 주민생활 변화와 일탈

북한은 정치조직생활의 의무화와 경제생활 및 문화생활의 준법화를 주민생활 규칙으로 제시하여 왔다.

정치조직생활에서는 혁명적 수령관·혁명적 조직관 확립에 기초하여 ‘수령·당·대중의 통일체(3위1체)’, ‘사회주의 대가정’ 결속이 강화되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직에 의거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정치조직 가입 이후 정치 사상학습·강연회·생활총화에 자발적으로 성실히 참여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는 직장생활과 물질소비생활을 북한체제가 규정한 법적 규범에 맞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생활은 만 18세 이상 노동능력을 가진 공민에 한하여 사회직업에 종사하고 사회노력동원에 성실히 참여하며 국가공급에 의존한 물질소비생활을 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국가공급 단절로 북한체제의 경제생활 규정은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생활에서도 사회주의 준법기풍 확립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 비사회주의적 현상, 외부사조에 의한 다른 체제 동경의식 확산, 외부문화 모방과 같은 사회적 병폐를 배격하고 이에 대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 주민생활 변화의 3단계

북한 사회의 주민생활 변화는 자립적 생존방식 변화→ 문화행태 변화→ 정치의식 변화의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일탈을 동반하며 집단주의·수령제일주의에 입각한 주민 가치관을 개인주의·가족중심주의·배금주의로 바꾸어 가고 있다.

주민의 자립적 생존방식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생산부문 80% 이상이 침체되고 국가공급이 단절되면서 생존 기로에 선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경제난 초기에는 소규모 장사, 소토지(화전)⁸⁴ 농사, 밀수(강타기)에만 국한되었던 자립적 생존방식은 2000년대 들어 공설시장 운영에 힘입어 개인수공업, 고리대금업, 유통업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급규모의 장사(운송수단을 활용), 임노동을 동원한 소토지 농사, 군인과의 협업을 통한 밀무역, 개인수공업자의 임노동 채용 등의 방식으로 승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과 시장 상인과의 결합은 사회통제를 이완시켜 사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이 자립적 생존 촉매제로 작용한다. 현재 주민 80% 이상이 이러한 자립적 생존방식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생산현장 이탈을 비롯한 사회적 일탈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에는 빈부격차 양상이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대규모 금융자산을 축적한 시장 세력이 자생적 생존방식의 틀을 바꾸고 있다. 개인·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그룹별·분야별로 상업화되고 있으며, 개인수공업의 생산·판매가 분업화되고,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 등)를 활용한 기능화·구조화된 장사방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 소득 격차에 의한 불평등이 양극화로 구조화되고 있다.

북한의 생산근로자도 자립적 생존방식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난 이후 원자재·에너지 부족으로 공

84) 2002.7.1조치 이후 북한주민 생존방식 중 하나인 소토지(덧밭-화전과 같은 의미)의 경작권은 북한정부 정책에 의해 한 가구당 400~600평까지 관리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그 대가로 평당 토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업소가 가동되지 못하자 장사할 시간을 받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대체하고 있다. 즉 생산근로자가 부업근로자(8.3근로자)화 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한 '8.3액'은 공장·기업소의 국가기업 이익금으로 국가에 납부된다.

자립 생존에 의한 경제생활 변화는 문화행태 변화와 정치의식 변화를 견인하는 기제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한 주민들 속에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외부 사조 접촉을 통한 문화행태 변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한국드라마와 한국노래, 미국영화 및 팝송을 선호하며 외부세계를 동경하는 문화의식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정보 접촉과정을 통해 북한체제의 단점을 인식하고 체제불신 및 지도자 불신을 표출하며 정치의식 변화 행태를 보이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 이후 자립적 생존방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배급중단 등에 대한 경제생활 어려움을 단순 불평불만으로 표출하던 주민들이 체제작동이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을 자발적으로 체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의 본질을 깨닫는 의식 변화, 체제불신 및 지도자 불신을 과감히 표출하는 정치의식 변화는 지역별·계층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민 정치의식 변화가 증폭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숙된 의식화를 제어하는 잠재의식의 한계와 소통의 부재에 있다.

북한의 사회통제(사상이념적·정치조직적·경제사회적·법적 통제)에 의해 주민의 가치체계와 의식구조는 어려서부터 지도자와 체제에 맞게 변형되어 수동적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인간이 타고난 자율적 속성·항거 DNA가 약화되고 복종과 두려움·공포의식이 잠재의식 속에 내면화되었다. 주민 정치의식 변화의 한계는 바로 이러한 잠재의식이 제어기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괴된 자율적 속성이 회복되고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성숙된 의식화가 현재보다 더욱 폭넓게 촉진되어야만 본질적인 정치의식 변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 간 소통 부재의 한계가 극복되어야 한다. 북한 내 시장 확산을

통해 외부사조 접촉은 비공식적이지만 가능하게 되었다. 외부세계 동경의식 확산, 집단적인 체제이탈, 가족단위의 한국행 등의 사회적 일탈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북한체제의 잘못된 작동을 지인들과 소통하며 변화 의지를 공유하는 사회변화는 추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가 강력한 사회통제기제인 공개처형 등을 통해 공포의식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이후 주민들 의식속에는 개인주의·배금주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주민변화는 주민의 자발적 노력, 외부사조 접촉 환경의 확산(시장), 기득권 계층의 부정부패 등에 의해 더욱 촉진될 것이다.

2. 사회적 일탈

사회적 일탈이란 해당 사회가 질서유지를 위해 규정해 놓은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컫는 용어이다. 주민의 사회적 일탈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국가공급제도의 유명무실은 자생적 생존을 위한 사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켰고, 생산현장에서의 이탈, 정치조직생활 기피 현상을 현실화시켰다. 북한체제는 이러한 일탈을 범죄유형별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다.

(1) 정치적 일탈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국가공급의 유명무실로 자립적 생존방식이 고착되고, 시장을 통한 외부사조 유입 및 주변세계 동경의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조직생활 이탈 현상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조직생활 참여 및 기피가 사회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를 통제해야 할 조직책임자들까지 통제이완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이기주의를 중시하는 해이된 도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 북한체제가 주입시킨 3관(혁명적 수령관·조직관·인생관)과 집단주

의 원칙은 배제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기초한 정치생활총화가 형식상 진행되고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공개 비판하는 것을 서신·전화로 대체하거나, 조직생활평정서를 뇌물을 주고 위조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주민들의 조직생활 기피 및 이탈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시범적으로 사상의식 변화 및 체제 이탈자에 대한 일벌백계식 징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정목표로 제시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전체 주민에 대한 충실성 실천을 강요하고 있으며,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사회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⁸⁵⁾.

(2) 경제생활 이탈

주민의 경제적 이탈은 식량을 비롯한 배급 비정상화가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 더욱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생계유지나 금전 이득을 위해 행하는 불법 경제 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절도, 밀수, 고리대금업 등 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이탈현상이 주민들 속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이탈 현상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산 현상을 이탈하여 개인장사를 선호하거나, 국가 소유 재산인 양곡창고, 생필품공급소인 상점, 공장, 기업소의 부품자재창고, 전화선과 전기선, 문화재를 절도하여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명 ‘강타기’로 지칭되는 밀수는 북한의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탈 행위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법월경죄, 경제질서 위반죄의 징계기준을 강화하

85)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2013.9.24.)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배격해야 한다’의 내용 중: 외부사조 유입 차단을 강조, 중동 민주화시위와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를 언급,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의 위험성과 후과를 똑바로 알고 맹아단계부터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조하였다.

여 일탈현상을 규제하고 있다.

(3) 사회·문화적 일탈

북한은 일상생활에서 생명, 신체, 사회규범, 공공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대인관계 및 문화이용과정, 공중도덕 준수에서 나타나는 일탈은 ‘사회준법기풍 위반’에 해당된다.

북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대인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유괴, 명예훼손, 강간 등으로 사회구성원 간 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다. 도박, 약물중독, 교통위반, 풍기문란 행위 등의 공공질서 위반도 주민 일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문화이용 과정에서 외부문화의 접촉 및 모방, 외부문물 유입 및 유통을 통해 북한 체제의 규정에 위반되는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적 일탈은 특히 외부사조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체제는 이러한 일탈을 ‘퇴폐문화 반입·유포죄’ 및 ‘적대방송 청취죄’로 분류하여 ‘문화침해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문화적 일탈은 정치의식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당국의 이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선대 지도자 시기보다 북한사회 저변에 확산되는 외부사조 유입·유통 규제를 사회통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⁸⁶⁾시키고 사상통제 강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말씀’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준한 정치생활총화를 강화할 것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부문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이 과정에 정치조직생활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 일탈이 보편화되고 있다.

86) 2014년 2월 26일 제8차 사상일꾼대회 연설에서 김정은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색정적이고 이색적인 부르조아 문화, 생활약식에 오염된 이전 쏘련 등의 청년들이 변질되고 부패 타락하여 나중에는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등의 내용을 지적하였다.

(4) 권력형 일탈

권력형 일탈은 북한 권력층의 업무 수행 과정 또는 직권남용 과정에서 발생한다. 뇌물수수, 물자 유용, 사례금 착복, 부정부패 등이 이러한 일탈현상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 북한체제는 노동당,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견관료계층의 경우 생존 및 금전이익 추구 목적에서 시장 상인들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 지도층의 권력남용은 핵심 권력층(당·정·군의 중앙부처 간부)으로부터 중견관료층(도·시 단위 당·정·군 간부), 하부말단 사회통제 집행자(시·군 당 지도원·인민보안원·국가안전보위원)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핵심권력층은 부를 축적할 목적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대외무역 허가를 인증하는 증서(와크)를 남발하는가 하면 대학입학 및 직업배치, 간부승진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중견관료층은 공장기업소 생산품의 대량 유용(국정가격으로 구입하여 시장도매가격으로 처리)을 통해, 하부말단 사회통제 집행자의 경우는 규정을 어긴 시장 상인, 조직생활 이탈자, 직장출근 기피자를 압박하여 뇌물을 받는 형식으로 일탈을 범하고 있다.

부분적 현상이기는 하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주민들의 신분세탁(출신성분 교정)에 동조하여 권력형 일탈을 범한 사회지도층도 있었다. 북한체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징계하면서도 고위층 권력과의 유착 원천을 봉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4절 주민 인권침해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문화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가로 비난받고 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주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와 계획경제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고문 금지, 이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등 제반 권리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실태는 모든 부문에서 억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이동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 억압, 성분 차별 정책,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생명권의 침해는 공개처형과 체제이탈자 불법 처형, 불법 구금 및 체포, 고문, 교화소 내 인권 유린,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 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권은 성분에 의한 적대계층·월남자 가족·종교인 차별, 여성 차별, 장애인 격리 수용 등이 문제가 된다. 자유권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정보통신의 자유 침해가 쟁점이다. 참정권은 정치활동 제한과 투표의 자유 침해 등이 문제가 된다.

(1) 공개처형

북한에서 생명을 유린하는 대표 행위는 공개처형이다. 공개처형은 사회가 안정 되어 있을 때도 실시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공개처형 대상에는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무’를 중국인에게 매매한 죄, 외부문물을 판매한 죄, 마약(속칭 ‘빙두’) 밀수 및 밀매죄, 국가 수출물자 횡령죄, 밀수죄를 범한 주민이 포함된다.

공개처형은 보통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며, 학교·기업소·농장 등 조직별로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처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 형식으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여 진행하며 판결과 함께 즉시 처형된다.

공개처형은 제도 자체가 비인도적 행위이며, 자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하다.⁸⁷⁾ 첫째, 북한의 형법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집행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집행은 사형집행 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형벌 집행기관이 검사의 참여 아래 집행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87)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2, pp.70.~71.

(2) 정치범수용소

북한에서 일명 ‘수용소, 관리소’라고 지칭되는 정치범수용소는 인권유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투옥·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 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적 계층을 특정 지역에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북한에는 5개의 정치범수용소(평안남도 개천 외동리와 용운리,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명간과 청진)가 있으며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⁸⁾ 여기에 수용된 사람은 주로 반국가 음모자, 유일사상체제 위반자, 탈출 기도자, 납북 인사들과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 당정책 위반자 등으로 구성된다.

수용자들은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수용된 날로부터 모든 기본권리가 박탈당하며, 가족·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연락도 불가능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구역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해야 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자아비판을 하고 사상개조 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들의 일과는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에 출근해 7시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1시까지, 오후 작업은 밤 9시까지 계속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 갱도 작업과 벌목·개간 등 중노동이며, 철저하게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식량이 배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들 대다수가 영양실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내에는 또 다른 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이 설치되어서 규율을 어긴 자, 도둑질한 자, 성행위를 한 자, 감독의 지시 위반자를 수용하고 있다.⁸⁹⁾ 수

88)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4, p.158

89)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상권)』, 시대정신, 2003, pp.176.~189.

용소는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용소들은 광산지역이나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산악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높이 3~4m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곽에는 함정이 있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장 경비원이 경비견을 데리고 순찰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면 사면될 때까지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다.

[그림 7-1]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황



(3) 기타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서 개인의 자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적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 거주·이전은 직장이동 등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되며 직장 배치 자체

가 당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주·이전 여부는 당국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여행도 원칙상 시(구역)·군 내에서만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그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민반장부터 시작하여 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함경북도 등 국경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하며 평양을 여행하기 위한 승인번호는 받기 어렵다.

참정권은 투표로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다.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북한도 법으로는 일반·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따름이다. 그 결과 북한의 선거는 거의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언론의 자유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은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한다. 주민은 라디오, TV, 녹음기 등을 입수하게 되면 1주일 이내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봉인이 뜯겨져 있을 경우 불법으로 외국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치범으로 처벌된다.

북한은 종교에 대한 자유도 구속하고 있다.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은 종교를 봉건시대의 낡은 잔재인 '미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⁹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응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종교 관련 헌법 조문

90) 『김일성저작집 5』, 평양, 로동당출판사, 1980.

을 바꾸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1972년 헌법에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 2009년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종교 규정이 다소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북한에서 종교가 인정된다는 실질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비난에 부딪히게 된 북한은 선전 차원에서 종교정책에 부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⁹¹⁾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보에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을 계기로 종교 단체들을 내세워 남한과 해외 종교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요청했다.

91) 통일교육원,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2006, pp.22.~24.

[표 7-4] 북한의 종교 현황

구분	종교시설수(개)			신도수(명)			교직자수(명)		
	해방시기	2001	2008	해방시기	2001	2008	해방시기	2001	2008
개신교	2천	2, (가정교회 520)	3, (가정교회 520)	20만	1만 2천	1만 3천	908	300 (목사 20)	300 (목사 30)
불교	518	60	65	37만5천	1만	1만	732	200	300
천주교	교구 4개	1(공소2)	1성당, 2공 (3지구, 500가정처소)	5만 7천	3천	4천	262	0	0
천도교	99	52교당 800기도처	52교당 801기도처	169만	1만 4천	1만 5천	0	250	250
러시아 정교	0	0	1	0	0	5	0	0	5
계	2617개 4교구	115개	122개	232만 2천명 (24.3%)	3만 9천명 (0.2%)	4만 2천명 (0.25%)	1902명	750명	855명

출처: 북한인권정보센터, 「2009 북한 종교자유 백서」, p. 45. 수정·인용

최근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종교단체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종교 활동이 과거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나 인권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이 주체사상과 ‘3대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종교 활동 및 신도들에 대해 억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종교는 체제를 위협하는 독과 같은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당국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기본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북한의 인권실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ESCR)'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생존권 침해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면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외부 사회에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공개적으로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1995년이다. 2000년대 들어 식량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식량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세습독재체제 구축,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식량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 간부 계층, 국가보위성 일꾼,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식량이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경우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시달려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중후반에 많은 주민이 아사하는 등 주민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인해 배급제도는 사실상 폐기되고, 국영 상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에 의해 생활비(임금) 또한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시장에서의 식품가격이 40~50배나 상승함으로써 생활비만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2009년 11월 말에 단행된 화폐개혁은 시장활동으로 축적한 부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식량 생산량이 다소 증가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540만 톤 생산으로 식량사정은 호전되었지만 분배 대상과 방법 등 분배체계의 왜곡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분배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상태다. 북한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등 식량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게도 생존

권 보장을 위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 직업선택의 권리 침해

북한 헌법에는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은 당사자의 의사보다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직장배치 선발 기준에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군의 자녀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며, 성분이 나쁜 학생들은 대학입학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이러한 ‘무리배치’는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보여 주는 좋은 근거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 및 탄광과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집단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희망이나 소질 및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출신성분이 좋은 간부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배치받기 전에 개인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직장에 나가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주민은 노동단련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제도상으로 하루 결근 또는 3일 지각에 하루치 식량을 공제하여 왔지만 배급이 중단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반면 자신의 농사에 전념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무단 결근하는 자는 노동단련형을 받는다. 물론 굶주림으로 결근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뇌물로 해결하기도 한다.

(3) 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북한체제에 의한 주민의 사회적 권리 침해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서 드러난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부 선택받은 계층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 주민 대부분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질병에 걸려도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해도 경제난으로 의약품 공급이 제한

되어 의약품은 스스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병원은 간부 전용 병원과 일반 병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 병원의 경우에도 간부과와 일반과로 구분하여 진찰하도록 차별화 되어 있다.

문화생활 영역에서도 출판의 자유가 억제되고 외부문물을 유통시켰거나 직접 보았을 경우, 그리고 선호하였을 경우 정치적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드라마에 대한 주민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북한체제의 공개처형 징계도 강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의 인권이 체제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북한체제의 인권문제 대응

(1) 기본 입장

북한은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⁹²⁾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우리식 인권’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의 상대성, 국가주권 원칙에 따른 배타성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⁹³⁾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 시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당-대중이 일심 단결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인민이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권의 배타성을 내세우면서 인권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북한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하

9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평양), 『조선말대사전』, 1992.

93)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2, pp.49-53.

며 주권이 없다면 인권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은 인권개선을 위한 서방 국가들의 인도적 개입을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국제사회와 우리의 요구에 대한 대응

유엔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인권위원회(UNHCR)와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왔다. 특히 2004년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인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개소하였다.

[표 7-5]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주요 활동

보고관	주요활동
문타폰 (2014~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3차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상황보고서 제출(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 * ① 개발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 ②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③ 권리 및 자유의 불안정성 ④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⑤ 여성·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평등 대우 ⑥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분야별 검토 • 제10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보고(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비참하고 절망적 상태”
다루스만 (2010~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치 운영(2013년) •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촉구(2014년)
퀸타나 (2016~)	-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체제안보 관점과 현실적 필요성 등 두 가지 기준을 적절히 활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체제안보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대해 ‘인권공세’ 및 ‘인권소동’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불과하며,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의 일환’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엔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방북 요구를 지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난하면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국제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관심을 일부분 수용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규약의 이행 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국가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벗어나야 할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홍보하는 선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외부의 인권 압력에 부응하여 법을 개선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대응해 왔다. 1998년에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 개정 헌법(8조)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된 법규정 자체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찾아보기 및
참고문헌

찾아보기



- 가두여성 241
- 가을 전투 189
- 가정혁명화 237
- 감량배급 157
- 감정제대 110
- 강반석혁명학원 192
- 강성국가 21, 22, 26, 32, 40, 41, 42, 68, 69, 90, 151, 169, 173
- 강성대국론 38, 68
- 개성공업지구 172, 174, 175
- 개성공업지구법 172
- 개신교 259
- 건설신문 223
- 건전한 안보관 11
- 경제개발구 140, 174, 175, 176
- 경제개발구법 174, 175
-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10, 22, 23, 50, 55, 62, 71, 104, 115, 140, 144, 145, 151, 169, 176
- 경제의 군사화 106, 107
- 경제특구 171, 172, 173, 174, 175, 176
- 계획경제 10, 14, 17, 18, 19, 21, 81, 82, 140, 142, 143, 163, 164, 166, 167, 168, 171, 172, 176, 253
- 계획경제체제 14, 17, 18, 141, 168
- 계획의 세부화·일원화 18, 142, 163
- 계획지표 143, 163, 165, 167, 171
- 고난의 행군 32, 39, 68, 70, 83, 147, 149, 215
- 고등교육법 182
- 고등교육성 183, 184
- 공개처형 249, 253, 254, 262
- 공산주의 언론 220
- 과학교육부 183
- 관리소 243, 255
- 관병일치 68, 113
- 광폭정치 211
- 교도대 105, 121, 125, 126, 203
- 교육문화텔레비존 227, 228
- 교육법 182
- 교육신문 194, 199, 201, 204, 223
- 교육위원회 65, 183, 184, 190, 194
- 구상무역 89, 155
- 9.19공동성명 95, 128
- 국제형사재판소 88, 263
- 금강산관광지구 172, 174
- 금강산관광지구법 172

L

나진·선봉 경제특구 171, 172
 남북국방장관회담 136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136, 137
 남북정상회담 136
 남조선노동당 48, 49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29
 남조선 혁명 103
 남포중앙체육학원 191
 남포혁명학원 192
 내각전원회의 42
 노동적위군 69, 105, 121, 125, 126
 노동계급화 180, 182, 205
 노동단련대 240, 243
 노동단련형 261
 노동당 15, 18, 26, 31, 32, 33, 35, 36, 38, 39, 40, 41, 42, 43, 44, 45, 47, 49, 50, 51, 52, 53, 56, 57, 58, 60, 61, 64, 67, 70, 71, 74, 75, 77, 80, 81, 83, 86, 90, 91, 97, 103, 108, 109, 114, 180, 183, 184, 185, 221, 222, 225, 226, 227, 240, 244, 245, 252, 257
 노동당 규약 15, 26, 35, 38, 39, 41, 42, 44, 45, 47, 49, 58, 103
 노동당중앙위원회 31, 32, 44, 70, 104, 108, 111, 114, 144, 182, 183, 223
 노동당 총비서 33, 45, 71

노동미사일 115, 129, 136
 노동신문 39, 41, 42, 52, 81, 104, 169, 170, 220, 222, 223, 224, 225, 227, 250
 녹화근위대 200
 농민시장 18, 163, 164
 농업근로자동맹 239, 244

C

단군문학 209
 달리기 장사 164
 당 대표자회 90
 당 세포비서 51
 당 정무국 56
 당 정치국 46, 52, 54, 55, 64, 66, 84, 105
 당 중앙군사위원회 46, 53, 54, 55, 56, 59, 69, 70, 105, 106, 107, 111
 당중앙위원회 52, 53, 54, 55, 58, 66, 67, 70, 183
 대량살상무기 116, 119, 126, 127, 131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 88, 92
 대북제재 결의 제2087호 88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 88
 대안의 사업체계 30, 170
 대외문화연락위원회 77

대적성국 교역법 85
대포동 2호 115, 129
데탕트 92
독립국가연합(CIS) 94
돈주 155, 164, 167, 168
되거리 장사 164
땀기발 204



러시아 정교 259



마르크스-레닌주의 15, 31, 32, 34, 35, 43, 50, 205,
221
만경대학생소년궁전 198, 199
만경대혁명학원 191, 192
만수대텔레비존 227, 228
매대장사 167
모기장식 개방론 171
모범교육군 칭호쟁취운동 201
무력통일 노선 134

무리배치 261
물량지표 143, 165
민족공동체 10, 11
민족보위성 107
민족화해협의회 60
민주기지 노선 44



반동 10원칙 80
반동회의 80, 98
반제국주의 76, 198
반제·반미 공동전선 98
반테러 공동성명 84
방사포 115, 117, 118, 121, 122, 136
배합전략 117
백두산 3대 장군 197, 209
베를린 합의 83
벼랑끝전술 76, 84, 87
보통교육 188, 190
보통교육법 182, 191
보통교육성 183, 184
봄 전투 189
부서제도 112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94, 95
 북·러 공동선언 94
 북·러 모스크바 선언 94
 북방한계선 135
 북조선공산당 28, 47, 48, 52
 북조선노동당 28, 48, 49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28, 224
 북·중 정상회담 90
 북청농업개발구 175
 북한이탈주민 142, 155, 156, 167, 168, 263
 북한인권 결의안 86, 88, 89, 96, 263, 264
 북한인권특별보고관 263, 264
 북한체제 10, 12, 13, 14, 15, 17, 19, 20, 21, 27, 47, 68, 90, 103, 126, 177, 180, 181, 199, 201, 231, 235, 236, 238, 239, 240, 246, 248, 249, 251, 252, 261, 262
 분조관리제 158, 170
 분초급당 위원회 58
 불교 259
 붉은기사상 38
 붉은청년근위대 105, 121, 125, 126, 203
 비대칭 전력 102, 115, 117, 119
 비동맹국 외교 79, 80, 81, 97, 98
 비동맹회의 81
 빈곤의 함정 145



4.6담화 41
 4대 경제특구 172
 4대 군사노선 56, 104, 105, 114, 115, 116, 125
 4대 제일주의 41
 4대 특구 171
 사상생활 지도 51
 사회민주당 60
 사회적 소유 17, 141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6, 32, 37, 50, 67, 231
 사회주의 계획경제 21, 81, 82, 17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82, 199
 사회주의 노동법 241
 사회주의 대가정 10, 19, 20, 238, 246
 사회주의 대가정론 20, 231, 244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166
 사회주의 우호 무역 147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206, 207, 208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17, 141, 142
 사회주의 체제 14, 22, 30, 39, 40, 58, 180, 181, 182, 183, 184, 188, 205, 262
 사회주의 헌법 15, 31, 44, 45, 46, 62, 63, 141, 142, 182
 산업연관 관계 171
 3대 세습체제 26, 32, 34, 46, 245

- 3대 재산권 142
- 3대혁명소조운동 66, 70
- 3대혁명 소조원 208
- 새날혁명학원 192
- 생물무기 131
- 생활총화 20, 51, 240, 246
- 선군경제건설노선 144
- 선군사상 15, 26, 34, 35, 36, 39, 40, 41, 42, 104, 115
- 선군정치 26, 32, 34, 37, 38, 39, 40, 41, 46, 59, 68, 104, 105, 107, 115, 206, 211, 215, 219
- 선군정치론 38, 68
- 선군혁명문학 206, 209
- 선군혁명 문학예술론 211
- 선전선동부 31, 51, 221, 226
- 선제 기습 공격 116
- 세포조직 48
- 소년단 200, 202, 203
- 소련파 29, 30, 36, 48
- 소조활동 200, 202
- 속도전 117, 126, 154, 206, 207
- 속도전 청년돌격대 126
- 속도창조운동 67
- 속전속결 전략 116, 117
- 송가 209, 215
- 수령독재체제 10, 15, 26, 33, 49, 66
- 수령론 32, 34, 37, 50, 66
- 수령 절대주의 44, 51
- 수령형상문학 209
- 수입물자교류시장 166
- 스커드 미사일 115, 117
- 스탈린 격하운동 35
- 스탈린주의 34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94
- 시장화 현상 140, 143, 145,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1, 176
- 식량 전매제 19
- 신문이론 221
- 신민주 특별행정구 172
- 신민주특별행정기본법 172
- 실리외교 75, 79, 81, 82
- 10.3합의 85
- 10.4선언 264
- 10월 8일 모범교수자 201
- 12년제 의무교육 180, 182, 185, 186, 188, 193, 194, 195, 196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98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96
- 아웅산 폭탄테러 135
- 액상지표 143
- 업간체조 202
- 연안파 29, 30, 36, 48
-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11, 135
- 연평해전 135
- 영예군인 233
- 예술소조원 225
- 오중흙 제7연대 쟁취운동 110
- 5.24 대북조치 136
- 5개년 경제개발계획 173
- 5대 혁명연극 213, 214
- 5호담당제 245
-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 34, 37
- 온성섬관광개발구 175
- 와우도수출가공구 175
- 왕재산경음악단 215
- 우리남 농축시설 88
- 우리사상 제일주의 41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169, 170
- 우리식 사회주의 21, 34, 37, 67, 69, 206, 216, 262
- 위장평화 공세 135
- 유럽연합 83, 86, 88, 96, 97, 264
- 유선방송중계소 226
- 유엔인권선언 253
- 유엔인권위원회 96, 259
- 유일독재체제 13
- 유일사상체계 15, 33, 36, 44, 71, 205, 231
- 유일영도체계 33, 36, 42, 244
- 유일지도사상 50, 54, 70, 71
- 유훈통치 32, 39, 45, 67, 70, 83
- 6.15공동선언 264
- 6.25전쟁 29, 30, 44, 79, 117, 133, 134, 185, 189, 232, 237
- 6개년 계획 52
- 6자회담 84, 85, 87, 88, 90, 91, 98, 128
- 2.13합의 85
- 2.29합의 88
- 인덕정치 211
- 인민군협주단 215
- 인민무력부 59, 108, 133, 192
- 인민무력성 59, 86, 107, 108, 109, 122
- 인민반 244, 245
- 인민반장 245, 257
-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67
- 인민위원회 28, 65, 184, 190, 224, 257
- 인민학교 184, 185
- 일당독재체제 15

1인 독재체제 26, 31, 46, 71, 253
1인 지배체제 26, 36, 38, 67, 72
입사증 142



자강일보 222
자력갱생 10, 140, 155, 158
자립경제 노선 2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143
자아비판 220, 255
자주외교 79, 81
자주포 116, 117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76, 115, 123, 130
장거리 미사일 발사 76, 88, 92, 96, 98, 115, 129, 135
장마당 18, 156, 163, 164, 165, 167
재판소 45, 64
전방위 외교 82, 83, 84, 86
전위대 조직 49
전체주의 10, 14, 19, 32, 253, 256
전·후방 동시 공격 116
정무원 45, 46, 63
정전협정 79, 80, 87, 135
정치국 상무위원 46, 52, 55, 84

정치국 상무위원회 45, 54, 55, 66
정치범수용소 240, 243, 253, 255, 256
정치사상 교육 180, 181, 197, 198, 201
정치지도원 112
제1중학교 185, 191, 198
제2차 연평해전 135
제4세대 전쟁 119
제네바 합의 83, 87, 128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6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60, 62
조·러 우호 선린 협조 조약 94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132
조선공산당 27, 28, 47, 48, 52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28, 47, 48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 27, 52
조선농업근로자동맹 60
조선말대사전 51, 262
조선문학예술총동맹 205
조선민족제일주의 206
조선민주여성동맹 60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60, 244
조선신민당 28, 48
조선신보 170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60, 77
조선중앙방송 226, 227, 228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26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226
 조선중앙연감 115, 142
 조선중앙텔레비죤 227
 조선중앙통신 144, 227, 250
 조선직업총동맹 60, 78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206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80
 조·중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80
 조직생활명정서 240, 250
 조직지도부 31, 51, 59, 66, 71
 종자론 207
 종파사건 29, 30
 종합시장 17, 19, 142, 165, 166, 167, 168
 주체농법 156, 158
 주체문예이론 206, 207, 208
 주체사상 15, 26, 31, 32, 34, 35, 36, 37, 38, 40, 41,
 42, 50, 66, 67, 69, 104, 180, 185, 207, 210, 224, 225,
 227, 259
 주체정치경제학 198
 주체철학 198
 주탄종유 155
 준군사부대 126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143, 144
 중·소 국경 분쟁 80
 중앙검찰소 61, 64
 중앙군사위원회 54, 55, 56, 69, 70, 105, 106
 중앙인민위원회 31, 32, 40, 45, 46, 6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0, 17, 19, 140
 중앙재판소 62, 64
 중앙확대집행위원회 28
 지방인민재판소 64
 직업총동맹 239, 244
 직통생 190
 집단주의 230, 231, 247, 249, 253, 262
 집단주의 원칙 19, 246, 249
 집단주의적 영웅주의 208
 집단체조 218



차판 장사 164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방선도구 173
 천도교청우당 60
 천리마운동 30, 70, 205, 206
 천안함 폭침 사건 11, 76, 93, 135, 137, 173
 천주교 259
 철도신문 222
 청년동맹 59, 60, 112, 195, 200, 203, 222, 224, 225,
 239, 244
 청년전위 222, 223, 224, 225

청산리방법 30

청산리정신 30

초급당 위원회 58

초모대상자 108

총정치국 59, 107, 108, 109

총참모부 59, 107, 108, 120

최고인민회의 29, 31, 32, 61, 62, 63, 64, 224, 25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5, 46, 62, 63, 64, 77

추모문학 209

7.1조치 18

E

태양민족문학 209

통일전선부 57, 226

통일전선전술 134

특별독재대상구역 243, 255

특별재판소 64

II

88특별여단 27

평양방송 226, 227

평양신문 222

평양외국어대학 198

평양외국어학원 191

평양음악학원 191

평양학생소년궁전 198, 199

평화협정 76, 83, 87, 88

폐연료봉 재처리 88, 129

포전담당책임제 158, 170

III

학생소년궁전 198, 199, 200

학생소년단 200

학생소년회관 200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128

한반도 종단철도(TKR) 94

함북일보 222

해주혁명학원 192

핵확산금지조약(NPT) 128

혁명사적지 200

혁명연극 213, 214

혁명적 낙관주의 182, 208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 44

혁명적 수령관 34, 36, 37, 188, 237, 246, 249

혁명적 수령론 32

혁명화 180, 205, 208, 240

협동적 소유 141, 142

형사소송법 254, 264

호위사령부 108, 126

화생무기 126, 131

화선입당 240

화전양면전략 135

화폐개혁 19, 168, 247, 260

화학무기 116, 119, 131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173, 174

희천발전소 154, 169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백서』, 각 연도

- _____, 『2000 북한개요』, 1999.
_____, 『2004 북한개요』, 2003.
_____,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비교』, 2006.
_____, 『남북한 교육 비교』, 2006.
_____,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교류 전망』, 2006
_____, 『북한의 대남전략』, 2010.
_____,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2011.
_____,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2011.
_____,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2011.
_____,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2012.
_____,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2012.
_____, 『북한 지식 사전』, 2016.
_____, 『북한의 양면성』, 2013.
_____,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2013.
_____,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2015.
_____,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5.
_____, 『북한권력기구도』, 201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각 연도

- _____, 『월간북한동향』, 각 연도
_____, 『통일정책연구』, 각 연도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각 연도
_____,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2005.
_____,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2007.
_____, 『북핵문제의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 2009.
_____, 『2009 북한개요』, 2009.
_____, 『북한주민의 삶의 질 : 실태와 인식』, 2011.

- _____,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2012.
- _____,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2012.
- _____, 『2011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2012.
-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각 연도
-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계간), 각 연도
- _____, 『2014 국제정세전망』, 2014.
- 국방부**, 『국방백서』, 격 연도
- _____, 『한반도 군비통제』, 2008.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계간), 각 연도
- _____,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군』, 2008.
- _____,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2008.
- _____, 『김정일체제의 핵전략 딜레마』, 2009.
- _____,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2011.
- 국방대학교**, 『정보시대 전쟁의 이해』, 2004.
- _____, 『2014년도 안보정세 전망』, 2014.
-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월간), 각 연도
-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각 연도
- 한국은행**,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 연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 무역협회**, 『북중무역동향』, 각 연도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년~2002년』, 2003.
- _____, 『북한총람, 2003년~2010년』, 2011.
- 연합뉴스**, 『북한연감』, 각 연도

2017
북한 이해

발행처 :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02-901-7166 팩스 02-901-7088

발행일 : 2016년 12월

디자인 : 웃고문화사 (Tel. 02-2267-3956)
인쇄 : 삼우인쇄공사 (Tel. 02-2274-9100)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매품〉